

정책보고서

통계산업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2012. 12

통계개발원

통계산업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2012. 12

연구 수행 기관 : 한국통계진흥원

책 임 연 구 원 : 김지영(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안길효(SP통계연구소 소장)

이충열(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종익(한국통계진흥원 연구원)

김영진(한국통계진흥원 연구원)

김용환(한국통계진흥원 연구원)

이동근(통계개발원)

신지성(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

본 보고서는 한국통계진흥원이 통계개발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통계산업 정의 및 분류 체계	9
제1절 통계산업의 정의 및 특성	9
제2절 통계산업의 분류 체계	14
제3장 국내 통계산업 현황	21
제1절 통계산업 업종 현황	21
제2절 관련 법령 현황 및 정책 동향	57
제4장 해외 통계산업 현황	81
제1절 해외 통계산업 일반 현황	81
제2절 해외 통계산업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109
제5장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 현황	133
제1절 국내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 현황	133
제2절 산업 지원 법령 제정의 일반 요건	156
제6장 통계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160
제1절 산업 환경 및 제도 기반의 정비·개선	160
제2절 민간 통계산업의 육성·지원	183
제3절 통계산업진흥법 제정 방향	193
<참고문헌>	197

표 목차

<표 2-1> 국내 주요 진흥법상의 산업 정의	11
<표 2-2> 산업 부문별 산업특수분류 및 진흥법령상 분류	14
<표 2-3> 산업 부문별 진흥법령상 분류 체계	15
<표 2-4> 통계산업 대분류 부문별 개념	17
<표 2-5> 통계산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18
<표 3-1> 공공 부문 통계작성기관 및 승인통계 수	22
<표 3-2> 국내 승인통계 작성현황(2012. 5. 1 현재)	23
<표 3-3>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 산출액	24
<표 3-4>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 종사자 수	24
<표 3-5>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산출액 및 종사자 수	25
<표 3-6>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상위 10대 기업 및 외국계 기업 비중	26
<표 3-7> 2010년 주요 국가별 평균 면접조사 비용	27
<표 3-8> 국내 통계생산업 전체 규모	27
<표 3-9>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34
<표 3-10> 통계청 공공 이용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현황	35
<표 3-11> 2010년~2011년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이용기관별 현황	36
<표 3-12> 2010년~2011년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이용방법별 현황	36
<표 3-13> 포털, 뉴스 제공업, 데이터베이스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현황	38
<표 3-14> 2010년 데이터베이스서비스산업 대분류별 기업 수 및 DB 수	38
<표 3-15> 2010년 경제·금융 대분류의 세분류 및 DB 수	39
<표 3-16> 경제·금융 대분류의 통계 중분류 추정계수 산정 결과	40
<표 3-17> SDB산업 산출액 및 종사자 수 추정 결과	40
<표 3-18> 2010년 생활 대분류의 세분류 및 DB 수	41
<표 3-19> 생활 대분류의 지도·지리 중분류 추정계수 산정 결과	42
<표 3-20> SGIS산업 산출액 및 종사자 수 추정 결과	43
<표 3-21> 정부 및 민간의 상권정보시스템 개요	43
<표 3-22> 정부 및 민간의 상권정보시스템 DB 구성 내용 비교	44
<표 3-23> 민간 부문 통계정보서비스업 산출액 및 종사자 수 추정 결과	44
<표 3-24> 공공 부문 통계예산 중 외주용역비 구성비	47
<표 3-25>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부문별 세출 예산액 현황	47
<표 3-26>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외주용역비, 자료처리비 규모	48
<표 3-27>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및 통계입력업 산출액	48

<표 3-28> 통계입력업 추정 산출액 규모	49
<표 3-29> 자료처리업 산출액 및 종사자 수 현황	49
<표 3-30> 통계입력업 추정 종사자 수 규모	49
<표 3-3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수 현황...	51
<표 3-32>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업의 산출액 현황	51
<표 3-33> 통계산업 부문별 산출액 및 종사자 수 규모 현황	52
<표 3-34> 통계산업 부문별 연평균 증감률	53
<표 3-35> 국내 통계산업 전체 규모 현황	53
<표 3-36> 저작권산업 분류 체계, 정의 및 주요 사업	55
<표 3-37> 저작권산업 분류 체계 및 저작권 요소	56
<표 3-38> 2007년 이후 통계법 주요 개정 내용	58
<표 3-39>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제정 내용	60
<표 3-40> 2004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62
<표 3-41>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 과제 및 내용	68
<표 3-42>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과제 및 주관 부처 현황	69
<표 3-43>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 사업 현황	72
<표 4-1> 세계 주요 국가별 통계생산업 매출액 순위	82
<표 4-2> 세계 주요 국가별 인구 1인당 통계생산업 매출액 순위	83
<표 4-3> 세계 민간 통계생산업의 발주 부문별 매출액 현황	84
<표 4-4> 세계 민간 통계생산업의 조사방법별 매출액 현황	85
<표 4-5> 미국 센서스국(Census Bureau) 이외의 연방정부 통계생산 기관 ..	86
<표 4-6> 미국 연방정부 통계 예산액 및 종사자 수 현황	87
<표 4-7>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현황	88
<표 4-8> 영국 국가통계기구 및 통계청의 경상 지출액	91
<표 4-9> 영국의 통계생산업 산출액 규모	92
<표 4-10> 영국의 조사방법별 매출액 증감 전망	93
<표 4-11> 일본의 2012년 기준 중앙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 인력 현황	95
<표 4-12> 일본 정부의 연도별 통계 예산액 현황	96
<표 4-13> 일본의 통계생산업 산출액 규모	97
<표 4-14> 일본의 민간 통계생산업 해외 수주 및 발주 현황	97
<표 4-15> 일본 민간 통계생산업의 조사방법별 매출액 현황	98
<표 4-16> 독일 연방통계청 연도별 예산액	100
<표 4-17> 독일의 공공 및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현황	101
<표 4-18> 독일 민간 통계생산업의 발주 부문별 매출액 현황	102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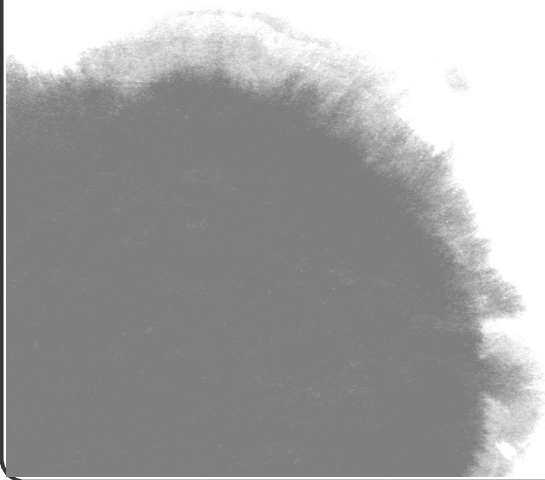
<표 4-19> 한국 및 주요 국가들의 통계생산업 구조 비교	104
<표 4-20> 한국, 미국, 일본의 중앙 통계기관 인력 현황	105
<표 5-1> 국내 산업 부문별 주요 지원 법령 현황	134
<표 5-2>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의 산업 진흥계획 수립 현황	135
<표 5-3>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의 지원기관 설립 현황	141
<표 5-4>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자격 제도 실시 현황	142
<표 5-5>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의 정보 유통 및 활용 현황	145
<표 5-6>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의 연구·개발 촉진 현황	146
<표 5-7> 산업 부문별 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제도 현황	148
<표 5-8> 산업 부문별 금융, 예산 및 세제 지원 현황	150
<표 5-9> 산업 부문별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현황	152
<표 5-10> 산업 부문별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홍보사업 현황	155
<표 5-11> 산업 지원 법령 제정의 일반 요건	157
<표 6-1> 통계산업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필요 사항	163
<표 6-2>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164
<표 6-3>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정비·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174
<표 6-4>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 방안	178
<표 6-5> 국제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180
<표 6-6> 통계 홍보사업 강화 추진 방안	182
<표 6-7> 통계산업 분류 및 중소기업 정의	184
<표 6-8> 전략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현황	185
<표 6-9> 통계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비율	186
<표 6-10> 금융·세제 지원 사업 추진 방안	186
<표 6-11>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분류	189
<표 6-12> 연구·개발 지원 사업 추진 방안	189
<표 6-13> 통계산업 부문별 구성비 및 연평균 증가율	191
<표 6-14>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추진 방안	192
<표 6-15> 통계산업진흥법 제정의 주요 내용	195

그림 목차

<그림 3-1>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이용 형태	33
<그림 3-2>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초기 화면	34
<그림 3-3>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자료 제공범위 예시	35
<그림 3-4> 공유자원포털 초기 화면	67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국내 사회 및 경제 구조가 급격하게 고도화되면서,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으로 기능하는 통계의 가치와 역할도 동반하여 높아지고 있으며, 오늘날 통계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근거자료로써 기능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 통계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도입된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는 통계자료에 근거한 증거기반의 정책 설계, 집행 및 평가가 순환적으로 수행되는 과학적인 정책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9년에 수립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통계 발전전략”의 전면 시행은 우리나라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걸쳐 통계에 대한 저변과 인식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통계 작성 및 활용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원 배분도 과거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 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 통계 작성현황에서, 2000년에 401종에 불과하던 국가 승인통계 종수가 2010년에는 874종까지 증가하였으며,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대표되는 민간 부문 통계생산 규모 및 종사자도 2000년의 1.8천억원, 3.7천명에서 2009년에는 5.0천억원, 6.6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 특히, 민간 부문의 이와 같은 통계 관련 산업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각종 기초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화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업, 통계분석업, 통계정보서비스업 등의 세부 산업 영역들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1년 이후 국제 IT 산업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의 수집·저장·관리·분석과 관련한 사업 부문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통계 생산 및 서

1) 통계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국가 승인통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계작성기관 수는 1995년 96개에서 2000년에 123개, 2010년에는 360개로 증가하였으며, 승인통계 종수는 1995년 373개에서 2000년에 401개, 2010년에는 87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의 핵심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내 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공공 부문의 기반 정비 및 민간 부문의 사업화 성장 과정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육성과 양질의 서비스 거래를 위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통계청과 한국통계진흥원은 2011년에 “변화의 시대, 통계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통계산업의 등장과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²⁾ 한편, 통계청은 2020년의 국가통계 미래상을 대비한 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범국가적인 미래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의 마련을 위해 통계산업진흥법(가칭)의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민간 통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통계 생산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한 관심은 외국 사례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선진 국가들은 자생적으로 통계 관련 산업이 조성되어 통계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민간 통계산업은 규모화 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전체 통계 생산 및 서비스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공 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통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공공정보(PSI: Public Sector Information)의 민간 활용과 관련하여 EU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3년 개정 지침에서는 EU 회원 국가의 문서 작성규격의 통일화, 데이터 수집·취합·관리를 위한 표준 양식의 제정, 공공정보 열람 비용의 상한선 제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국내 적용상의 시사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통계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무형의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미래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국가 통계작성 현황 측면에서도 요청되는데, 2010년 기준으로 통계청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민간 외주작성 비율이 58.4% 수

2) 통계산업의 핵심 세부 산업인 민간 부문 통계 생산업은 그 동안 마케팅리서치산업, 조사산업, 리서치산업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어 왔으며, 2009년에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컨설팅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세미나에서 “조사산업 및 중소기업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준인³⁾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 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통계산업의 육성·관리 사업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통계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법규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나, 선행연구 사례가 없으며, 아직은 통계산업이 생소한 부문임을 고려하여, 개념화 및 포괄범위 선정 작업과 각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통계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사전 작업으로써 통계산업에 대한 개념화 작업과 산업의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전작업으로 진행한 통계산업의 개념화 및 분류체계 정립 과정에서는 향후에 법제화가 추진될 것을 대비하여 각종 세부 산업들에 대한 40종의 관련 육성(진흥, 촉진, 지원, 발전 등)법들과 통계청에서 공시한 7종의 산업 특수분류 제정 사례⁴⁾들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통계산업의 개념화 작업을 거쳐 산업의 고유 특성을 정리하여 포괄범위 선정에 참고하고자 하였으며, 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연계표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국내 통계산업 현황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별 산업의 개황을 살펴보고, 산출액 및 종사자 기준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여건 및 기반 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유통·활용과 관련한 정책 내용 등도 검토하였다. 통계산업 현황과 관련한 해외 부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국내 통계산업 현황과 유사하게 공공 및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산업의 개황과 시장 규모를 살펴보았으며, 통계산업의 환경 및 제도 기반에 대한 정책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유럽연합 사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마이크데이터 활용,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 등의 부문에서 회원국들에 적용 중인 규정과 지침들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의 국가 승인통계 현황 결과자료

4) 2012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공시한 산업특수분류는 10종이 있으나, 해당 산업에서 관련 진흥법을 제정하고 있는 7종의 산업특수분류 사례를 참고하였다.

또한, 각종 세부 산업과 관련한 지원 법령들의 검토과정에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기관 설립, 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정보 유통 및 활용 방안, 품질 표준화 및 보증·인증 제도, 금융·예산·세제 지원,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창업·중소기업 지원, 홍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연구진행을 통해,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대안들을 도출하고, 정책 수행의 난이도, 자원 및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들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산업 활성화 방안은 환경 및 기반에 대한 정비·개선 부문과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각각의 세부 부문들이 통계산업진흥법 제정 내용에서 수렴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즉, 통계 생산·활용과 관련한 환경 및 제도 기반의 정비·개선 부문에서는 통계자료 생산 및 활용 환경 개선, 통계교육 및 홍보 강화, 통계품질 확보방안 제도화,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향후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 등의 국내 적용 방안들도 검토하였다. 민간 통계산업 육성·지원 부문에서는 통계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금융·예산·세제 지원, 통계 관련 연구·개발 촉진,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관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한편, 최종 연구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결과 적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진행 과정에는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연구 시작과 함께 통계청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Task Force)팀⁵⁾을 발족하여 단계별 진행 과정에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통계청 간부진과 관련 외부기관 및 민간 기업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연구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⁶⁾ 통계청 이외의 외부 전문가는 앞서 소개한 개별 산업의 진흥법에 대한 연구 경험과 법제화 작업 과정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 등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5) TF팀은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월드리서치, 충남대학교 등의 외부 전문가들과 통계청 각 국의 주무 과장들로 구성되었으며, 착수보고회(2012.5.), TF팀 회의(2012.6. 9.), 중간보고회(2012.8.), 최종보고회(2012.12.) 등에서 연구진행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주제 부문 및 각종 관련 자료 과정에서 다양한 검토의견들을 제공하였다.

6) 통계청 주요 간부진 20명과 관련 외부 기관 및 민간 기업 전문가 20명에 대한 면접조사는 2012년 8월에 공동연구진에 의해 실시되었다. 주요 설문 사항으로는 통계산업의 정의 및 분류 기준, 부문별 활성화 추진 방안, 활성화 추진 과정의 장애요인 및 환경 개선 사항, 추가적인 통계 서비스 개발 부문, 기타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02

통계산업 정의 및 분류체계

제2장 통계산업 정의 및 분류체계

제1절 통계산업의 정의 및 특성

1. 통계의 정의

일반적으로 통계란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통계란 집단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양적 기술을 반영하는 숫자, 즉, 사회집단 또는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통계는 특정 집단에 대한 수량적 설명자료를 말하며, 개별 개체들에 대한 수량적 정보는 통계로 볼 수 없다.

통계의 정의와 관련하여 OECD와 EU에서의 개념 규정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OECD는 통계를 “개체들의 집단에 관한 수량적 자료(numerical data relating to aggregate of individuals)”라고 정의하고 있으며⁷⁾, 유럽연합(EU)은 통계를 “특정 모집단의 집단적 현상을 묘사하는 수량적 또는 질적인 정보로서 종합적이고 대표적인 정보(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ggregated and representative information characterizing a collective phenomenon in a considered population)”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한편, 통계법상의 통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통계법 제3조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 등의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http://stats.oecd.org/glossary/search.asp>

8) European Union, Regulation (EC) No 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9 on European statistic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No L 87, 31.3.2009, p.164 -173),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87:0164:0173:EN:PDF>

이상의 통계 개념과 관련된 규정 및 사례들을 정리하면, 통계의 정의는 “자연 현상 혹은 경제·사회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들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 정보 또는 질적 정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통계산업 활성화 방안연구와 향후 법령제정이 요청되는 통계산업진흥법(가칭)에서도 통계의 정의는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통계법은 규율 대상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계작성기관인데 비해, 통계산업진흥법은 주된 규율 대상이 시장경제원리로 활동하는 민간 부문의 경제행위를 중심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통계산업의 정의

2011년 이후 통계청 및 통계 관련 학회들을 중심으로 통계산업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국내·외 문헌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통계산업은 아직까지 생소한 용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EU 등의 외국 사례에서도 현재까지는 통계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이런 이유로 통계산업의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국내 40종의 특정 산업별 진흥법령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대해 관련 기관·단체들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인 통계산업의 정의에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향후에 계획되고 있는 통계산업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법령상의 통계산업 개념 및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작업에서도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특정 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들은 약 40종이⁹⁾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산업 부문으로는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환경산업, 기상산업, 공간정보산업, 고령친화산업, 곤충산업, 말(馬)산업, 뿌리산업, 외식산업, 국제회의산업 등에 대한 진흥(육성, 촉진, 발전)법령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각종 진흥법령들은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산업의 정의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정의 규정의 형태는 ① 해당 산업의 최종 생산물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가공, 유통, 이용 및 판매하는 사업, ② 해당 산업의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

9) 특정 산업별 지원을 위한 법령들은 진흥법·육성법·촉진법·발전법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콘텐츠산업 진흥법, 쌀 가공산업 육성법, 항공우주산업 촉진법, 전시산업 발전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로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 등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개별 산업의 입법 사례들을 참고하여, 통계산업의 정의에 접근해 보면, 통계산업은 최종 생산물인 통계의 생산·가공·분석·유통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과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통계산업은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통계자료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며, 다른 자료들과 연계·가공·분석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포괄하여 대상 범위로 규정할 수 있다.

<표 2-1> 국내 주요 진흥법상의 산업 정의

법령 명칭	산업 정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콘텐츠산업 진흥법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관광 진흥법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기상산업진흥법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데이터 베이스산업 진흥법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기획·제작·관리·유통 등과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 또는 게임 상품의 제작·유통·이용 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 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
김치산업 진흥법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법령 명칭	산업 정의
말산업 육성법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주조(鑄造), 금형,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외식산업 진흥법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 파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
전시산업 발전법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과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생산하는 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약품을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 부속 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생산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사업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통계산업의 특성

통계산업의 생산 주체를 살펴보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주체별로 생산하는 산출물의 특성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공 부문에서 생산하는 통계 산출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적인 작성 목적에 맞춰 생산하고 있으며, 무상 혹은 처리비용에 대한 실비 수준에서의 대가를 통해 일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 부문에서 생산된 통계 산출물과 서비스의 제공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고급 전문 이용자로부터 일반 국민까지의 다양한 계층에서 범용으로 해당 통계자료를 활용되게 된다. 이에 반해, 민간 부문에서 생산되는 통계 산출물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사적재의 형태로 생산·거래되며, 활용 계층도 고객으로 분류되는 직접 수요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생산되는 통계산업 산출물의 공통되는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통계산업 산출물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로 활용되는 중간재의 성격을 가지며, 생산성 파악이 곤란해 산출물의 가치 측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즉, 통계산업의 생산물 및 관련 서비스는 최종 용도로써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형성, 기업경영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간재 형태로 소비되며, 기여도 측정에 난점이 있어 산출물의 가치 평가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특성은 예산 및 경기 변동에 따라 통계산업의 수요 및 공급 탄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나곤 한다.

둘째, 통계산업 산출물은 정보재의 성격을 가지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곧, 통계산업의 산출물은 일반적으로 디지털화가 용이한 수량적 정보로 생산·저장·유통되는 대표적인 정보재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산출물의 원본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복사본의 생산비용은 거의 소요되지 않으므로 자연히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게 된다. 이와 같은 산출물의 정보재 특성과 규모의 경제의 작용은 최근 국내·외 관련 산업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의 규모화 추세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정보재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대량 전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통계산업 산출물의 품질 수준에 대한 검증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통계산업 산출물은 지식기반산업의 대표적인 생산물이며, 기술집약적이고, 자원절약형의 무공해 생산물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생산물이 타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후방효과가 높은 특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 급속도로 떠오르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부문에서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의 대열에 포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넷째, 통계산업 산출물은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 저장, 가공, 유통하는 과정에서 정보자료로 전환되게 되며, 이런 정보자료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안보 및 대외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초 통계자료 및 가공된 정보자료들의 인가받지 않은 불법 유출행위는 경영·경제상의 손실과 함께 커다란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통계산업의 이와 같은 특성은 공공 부문의 통계 생산·유통 과정에서 외주제작 사업체의 참여에 따르는 적정 관리지침의 마련, 외국 기업의 국내 통계산업 진입이 초래하는 정보 유출 및 종속화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제2절 통계산업의 분류 체계

통계산업의 개념화 작업 단계와 마찬가지로 산업의 분류 체계를 설정하는 작업과 정도 관련 진흥 법령 및 산업특수분류 체계들의 구성 형태를 참조하며 작성하였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체계성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통계청 통계기준팀의 자문과정을 거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세부 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에서 해당 산업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모두 13개가 확인되었으며, 산업특수분류 체계를 구성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산업 부문은 모두 7개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물류정책기본법, 관광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의 3개 진흥 법령들은 법령과 산업특수분류 체계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업특수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진흥 법령들의 법령상 분류는 산업특수분류의 대분류 수준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봇산업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산업특수분류 체계의 구축 의무 및 이에 근거한 법령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진흥 법령상의 분류만으로 구성 중인 산업에서는 산업특수분류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 부문에 비해 법령상 상대적으로 상세한 산업 분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산업 부문별 산업특수분류 및 진흥법령상 분류

산업 부문 (중분류 수)	산업특수분류(대분류 기준)	법령상 분류
물류산업 (15개)	- 화물 운송업 - 물류장비 임대업 - 화물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물류시설 운영업 - 물류장비 제조업	- 화물 운송업 - 물류시설 운영업 - 물류 서비스업
스포츠산업 (17개)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제2조)
로봇 산업 (48개)	- 제조업용 로봇 - 개인서비스용 로봇 - 로봇 시스템 - 로봇 서비스 - 전문서비스용 로봇 - 로봇 부품 및 부분품 - 로봇 임베디드	* 지능형 로봇산업 분류체계의 구축 의무 조항(제7조)을 규정

산업 부문 (중분류 수)	산업특수분류(대분류 기준)	법령상 분류
콘텐츠산업 (51개)	- 출판산업 - 만화산업 - 애니메이션산업 - 공연산업 - 방송산업 - 광고산업 - 게임산업 - 지식정보산업 - 캐릭터산업 - 음악산업 - 영화산업 - 콘텐츠 솔루션 산업	-
관광산업 (30개)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 여행업 - 관광 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카지노업 - 유원시설업 - 관광 편의시설업
정보통신산업 *(11개 소분류)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재화 관련 도매업 - 재화 관련 임대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수리업	-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 관련 산업 - 소프트웨어 산업 - 전자거래 관련 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중 정보통신 관련 산업 - 이터닝 산업 - 정보보호 관련 산업 - 기타 정보통신 활용 산업
환경산업 (9개)	-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 환경 관련 건설업 - 환경 관련 유통업 - 환경 관련 서비스업	-

<표 2-3> 산업 부문별 진흥법령상 분류 체계

법령 명칭	분류 체계
기상산업 진흥법	- 기상예보업 - 기상감정업 - 기상건설팅업 - 기상장비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게임제공업 -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등 제조/판매업 - 방염처리업 - 소방시설업 - 위험물 운반 용기 제작/판매업 - 제조소 등 설계/시공업 - 위험물 탱크 제작·판매업

법령 명칭	분류 체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측량업 및 수로사업 -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 위치기반 서비스업 - 공간정보시스템 설치 및 활용업 - 기타 공간 정보 활용 사업	- 위성영상 기반 공간정보 활용 사업 - 공간정보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관리 및 용역업 -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 영화/비디오물 관련 산업 - 출판/인쇄/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 문화재 관련 산업 - 디지털 문화콘텐츠, 사용자 제작 문화 콘텐츠 -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수집/가공/개발/ 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관련 서비스업 - 문화상품 대상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 및 축제 등 관련 산업	- 음악/게임 관련 산업 - 방송영상물 관련 산업 -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광고/공연/ 미술품/공예품 관련 산업 - 전통 소재 및 기법 활용 상품의 생산 및 유통 산업(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이러닝 콘텐츠 및 이러닝 콘텐츠 운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 전시/유통 관련 산업 - 기타 이러닝 수행 관련 산업	- 이러닝 수행/평가/컨설팅 관련 서비스업
기능성 양잠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기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 가공 산업	-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기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부산물로 식품/ 소재 등을 생산/가공하는 산업
원양산업 발전법	- 원양어업	- 원양어업 관련 사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 음반·음악 영상물 판매업 - 노래연습장업	- 음반·음악 영상물 배급업 -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	-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 생산 사업	- 항공기·우주비행체 이용 및 응용 사업

앞서, 통계산업의 정의를 통계의 생산·가공·분석·유통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과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통계산업의 고유한 분류 체계를 구성하여 보면, 대분류 차원에서는 통계생산업, 통계분석업, 통계정보서비스업, 통계지원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분류 부문 중 통계생산업은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등의 형식으로 새로운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산업, 통계

분석업은 기초자료에 통계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정보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산업, 통계정보서비스업은 일정 양식으로 가공한 통계정보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산업, 통계지원서비스업은 통계자료 입력,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 각종 통계 관련 연구·개발·교육, 조사인력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들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4> 통계산업 대분류 부문별 개념

대분류 부문	대분류 개념
통계생산업	- 현장조사, 자료 가공, 개인 및 단체의 신청, 신고, 등록 등의 방법으로 기초 자료를 수집, 입력, 저장하고, 통계적 처리기법을 적용하여 조사통계, 가공 통계, 보고통계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
통계분석업	- 수집하거나 제공 받은 기초 자료에 통계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계정보서비스업	- 통계자료를 수집, 조합하고 일정 양식으로 가공한 통계정보를 주문에 따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계지원서비스업	- 통계자료 입력,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 각종 통계 관련 연구·개발·교육, 조사인력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한편, 이장에서 분류한 통계산업의 대분류 부문들을 다시 세분하여 구성하고, 한국 표준산업분류 체계와의 연계표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미래의 산업특수분류 체계 제정을 위한 기초 분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산업간 연관분석 및 구조분석 등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생산업의 분류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국가통계승인목록의 분류방법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통계분석업은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통계 관련 부문 분류를 참고하여 구분하였다.¹⁰⁾ 또한, 통계정보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보서비스업(J63) 분류체계를 참고하였으며, 통계지원서비스업은 통계 생산·분석·서비스 산업의 지원 부문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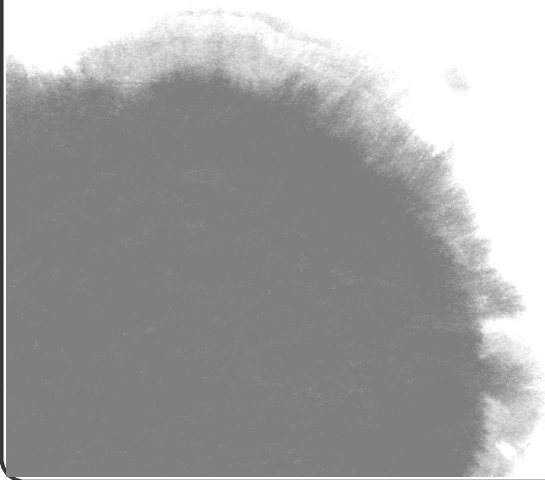
10)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의해 2002년에 처음으로 작성되었으며, 3년 주기로 개편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표준분류체계는 2008년 기준이며, 통계 부문은 수학 대분류 중 추론·계산, 모형·자료 분석, 응용통계, 확률분석 등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용통계 부문은 의학·생물, 경제·경영, 금융·보험, 사회·심리, 환경, 공업 및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5> 통계산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통계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	분류 명칭	분류번호	분류 명칭
1	통계 생산업		
11	조사통계 생산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12	가공통계 생산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13	보고통계 생산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2	통계 분석업		
21	모형 및 자료 분석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3909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	기타 통계 분석업 (추론·계산·확률 분석 등)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3909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통계정보 서비스업		
31	통계 데이터베이스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10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32	통계 지리정보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10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33	기타 통계정보 서비스업	63999	기타 정보 서비스업
4	통계 지원서비스업		
41	통계자료 입력업	63111	자료처리업
42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3	통계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44	통계 교육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85	교육서비스업
45	조사인력 공급업	7512	인력 공급업
46	기타 통계 지원서비스업	73909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3

국내 통계산업 현황



제3장 국내 통계산업 현황

제1절 통계산업 업종 현황

1. 통계생산업

통계산업 분류체계에서 통계생산업을 조사통계, 가공통계, 보고통계로 세분하였으나, 일반적인 통계생산자들은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전문화 되어 있지는 않다. 공공 부문 생산자들은 정책 수요에 따라 이들 모든 통계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생산자들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각각의 방법을 혼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산업이 활성화될 장래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는 있으나, 이들 부문들은 통계 생산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구성 및 전문성 수준과 산출물의 부가가치 생산성 등에서 차별화되므로 통계생산업의 부문별 분류로써는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통계생산업에 대한 업종 현황은 세부 업종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공공 및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

공공 부문의 통계생산은 통계법 규정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생산 및 공표가 가능하므로, 국가 승인통계를 대상으로 공공 부문의 통계생산업 규모를 추정하였다.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생산·공표하는 경우가 있으나, 2007년의 통계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강화되면서 많은 통계들이 정비되어,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의 통계생산자인 통계작성기관 수 및 국가 승인통계 수는 199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작성기관 수는 1995년의 96개에서 2012년에는 378

개로 증가하였고, 승인통계 수는 1995년의 373종에서 2012년에는 856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의 통계법 전면 개정과 함께 실시된 국가통계 정비·개선 사업과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전면 시행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지정기관 등의 모든 부문에 걸쳐 통계작성기관 및 승인통계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¹¹⁾ 2012년의 승인통계 유형별 가짓수 및 구성비는 조사통계가 351종에 41.0%, 보고통계가 444종에 51.9%, 가공통계가 61종에 7.1%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조사통계는 2005년을 정점으로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보고통계는 2005년 이후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공통계는 7%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공공 부문 통계작성기관 및 승인통계 수

(단위: 개, 종,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개	비중	개	비중	개	비중	개	비중	개	비중
통계작성기관 수	96	-	123	-	136	-	360	-	378	-
승인통계 수	373	100.0	401	100.0	474	100.0	874	100.0	856	100.0
조사통계	175	46.9	199	49.6	245	51.7	365	41.8	351	41.0
보고통계	169	45.3	165	41.1	175	36.9	453	51.8	444	51.9
가공통계	29	7.8	37	9.2	54	11.4	56	6.4	61	7.1

자료 : 통계청

한편, 2012년 5월 현재 기준으로, 공공 부문의 통계작성기관별 통계 승인 유형 및 작성방법별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법에 따라 승인받은 856종의 국가 통계는 지정통계 89종, 일반통계 767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작성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26종, 지방자치단체 377종, 민간 지정기관 153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지정기관으로는 협회·조합, 공사·공단, 연구기관, 금융기관, 기타 기관 등이 국가통계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통계작성기관 수의 증가는 시군구를 기초 통계작성기관에 포함한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인통계 수는 같은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국내 승인통계 작성현황(2012. 5. 1 현재)

(단위: 개, 종)

작성기관	작성 기관 수	작성 통계 수	승인 유형		작성 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전 체	378	856	89	767	351	444	61
정부기관	300	703	73	630	253	402	48
중앙행정기관	40	326	57	269	161	142	23
통계청	1	54	40	14	42	2	10
기타 기관	39	272	17	255	119	140	13
지방자치단체	260	377	16	361	92	260	25
지정기관	78	153(155)	16(17)	137(138)	98(99)	42(43)	13
금융기관	8	24(25)	7(8)	17	12(13)	6	6
공사/공단	22	42	2	40	17	23	2
연구기관	16	26	2	24	22	2	2
협회/조합	24	39	4	35	33	4	2
기타기관	8	22(23)	1	21(22)	14	7(8)	1

자료 : 통계청

주 : ()는 복수기관 공동통계(『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가 포함된 수치

또한, 공공 부문 통계생산자의 산출액 및 종사자 규모는 통계청이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는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¹²⁾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면 파악할 수 있는데, 산출액 자료는 공공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생산 과정에 소요된 예산액, 종사자 수는 담당 업무 중 통계 업무 비중이 50% 이상인 인력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의 연도별 결과자료에 따르면,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은 2001년에 산출액 768억원, 2000년에 종사자 수 3,620명에서, 2010년에는 산출액 4,294억원, 종사자 수 4,530명으로 나타나, 산출액은 459.1%, 종사자 수는 20.1%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¹³⁾

한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통계 행정과정을 살펴보면, 작성된 통계를 분석하고 서

12)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는 1973년부터 생산하고 있으며, 중간 연도에 실시하던 간이조사가 2009년에 폐지된 이후에는 2년 주기의 정기조사로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항목 중 예산현황 조사는 2000년까지는 전년 결산금액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나 2002년부터 당해 연도 편성금액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2000년의 통계예산 현황은 조사되지 않았다.

13) 공공 부문은 총조사 실시 연도의 해당 여부에 따라 예산액 증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되었다.

비스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동일한 기관에서 혼합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과정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의 산출물 및 종사자 수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통계분석업과 통계정보서비스업, 통계지원서비스업들이 모두 포함된 종합된 자료로써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3-3>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 산출액

(단위: 억원)

구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합 계	768	2,086	2,056	4,294
중앙행정기관	529	1,443	1,276	3,664
통계청	424	1,081	925	3,018
지방자치단체	97	186	227	250
민간 지정기관	142	457	553	380

<표 3-4>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 종사자 수

(단위: 명)

	2000년 ¹⁴⁾	2006년	2008년	2010년
중앙행정기관	2,791	3,465	3,446	3,629
통계청	1,671	2,334	3,221	3,142
지방자치단체	622	556	430	423
민간지정기관	325	486	539	478
합 계	3,773	4,507	4,415	4,530

나.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민간 부문의 통계생산자는 금융기관, 협회·단체·조합,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 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들 생산자 중 금융기관, 협회·단체·조합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통계법에 따라 생산하는 통계는 앞서 살펴본 공공 부문 통계생산

14) 2000년은 통계 담당 인력(통계 전담 인력 + 통계업무 비중 50% 이상 인력 + 통계업무 비중 50% 미만 인력)자료만 파악되어, 2006년의 통계 담당 인력 중 통계업무 비중 50% 이상인 부문별 인력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 기업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생산하여,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경영 과정의 각종 통계들은 주된 업무의 보조 업무로 간주하여 역시 제외하였다. 이런 결과로,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의 업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국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공공 부문의 민간 위탁조사 실시 주기, 각종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선거 실시 주기, 관련 산업인 광고산업의 업황 등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산업의 산출액과 종사자 규모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및 경제총조사의 연도별 결과자료¹⁵⁾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즉,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규모는 2000년에 산출액 1,798억원, 종사자 수 3,731명에서, 2010년에는 산출액 5,367억원, 종사자 수 7,372명으로 확인되어, 산출액은 198.5%, 종사자 수는 97.6%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산출액 및 종사자 수

(단위: 억원, 명)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산출액	1,798	3,273	4,392	5,367
종사자 수	3,731	4,856	6,289	7,372

한편,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의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업종 동향에서도 외국 사례와 유사하게 규모화 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의 진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곧,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매출액 중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약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기업과 합자회사 및 현지법인 설립,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진입한 외국계 기업의 비중은 약 3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업 관련 조사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연도별 자료는 총조사 및 연간 표본조사에서 수집할 수 있다(총조사 실시 연도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총조사가 실시되는 연도마다 명칭 및 포괄범위의 변경(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경제총조사)이 있었으며, 연간 표본조사인 서비스업 조사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가 2008년에 분리되면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3-6>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상위 10대 기업 및 외국계 기업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06년 ¹⁶⁾	2010년	2011년 ¹⁷⁾
전체 매출액	3,273	5,367	5,987
상위 10대 기업 비중	57.8	62.6	57.9
외국계 기업 비중	37.9	34.7	35.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이와 같은 규모화 진행과 외국계 기업 진입에 따르는 영향으로 국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외국계 기업 및 외국 기업과 업무 제휴를 맺은 대형 기업들은 조사기법 및 조사운영, 품질관리 등에서 선진 경영체계를 도입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시장에서 저가 입찰 및 가격 경쟁력 중심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상대적인 부가가치 생산성 및 기업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에 유럽마케팅조사협회인 ESOMAR¹⁸⁾가 발표한 주요 국가별 조사비용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들의 업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상위 10개 국가들의 평균 조사비용인 118.3백만원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단위 조사당 평균 면접조사 비용은 약 40.1% 수준에 불과한 47.4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작성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도 영향력을 가져오는데, 민간 통계 수요 전체 및 국가 기간 통계의 약 54.6%¹⁹⁾가 외주 위탁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6) 상위 10대 기업 및 외국계 기업 비중은 2009년 3월에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컨설팅 산업의 선진화 방안”의 주제발표 자료를 참조하였다(이홍철, (주)엔아이코리아 대표)
 17) 2011년 전체 매출액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된 자료이며, 또 2010년과 2011년의 상위 10대 기업 및 외국계 기업 매출액은 한국광고협회의 정기간행물인 광고계 동향 자료를 적용하였다. 또한, 외국계 통계생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닐슨컴퍼니코리아,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시노베이트코리아, 테일러넬슨소프레스코리아(TNS), 입소스코리아 등의 5개 기업으로 적용하였다.
 18) ESOMAR(European Society for Opinion and Marketing Research)는 유럽 지역의 마케팅조사협회로 1948년에 설립되었으나, 최근에는 세계 약 130개 국가의 약 4,900개 회원사를 보유한 세계적인 마케팅 조사협회로 성장하고 있다.
 19) 2012년 기준의 국가 승인통계 856종 중 통계청이 생산하는 54종을 제외하고, 그 외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 802종의 58.4%가 외주 위탁형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표 3-7> 2010년 주요 국가별 평균 면접조사 비용

국 가	조사 비용		국 가	조사 비용	
	(천달러)	(백만원)		(천달러)	(백만원)
스웨덴	185.9	214.9	독일	80.1	92.6
덴마크	146.1	168.9	UK	76.5	88.5
일본	134.3	155.3	이탈리아	68.4	79.1
프랑스	104.5	120.8	남아공화국	64.4	74.5
벨기에	82.2	95.0	한국	41.0	47.4
스위스	80.8	93.4	-	-	-

자료 : ESOMAR PRICES STUDY, 2010년

- 주 : 1) 유효표본 수 1,000명, 인터뷰 시간 약 12~25분 내외의 소비자 인식 및 태도 관련 개별 면접조사 기준으로 66개국 약 500여 조사기관을 조사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2010년 평균 원/달러 환율 1156.26원을 적용

다. 통계생산업 전체 규모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통계산업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산출물은 2000년의 2.6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9.7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명목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중에 약 0.04%p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종사자 수는 2000년의 6.5천명에서 2010년에는 68.7%가 증가한 11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3-8> 국내 통계생산업 전체 규모

(단위: 억원, 명, %)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합계	산출액	2,566	5,359	6,448	9,661
	종사자	6,522	8,321	9,735	11,001
	(명목) GDP	6,032,360	9,087,438	10,264,518	11,732,749
	GDP 대비 비중	0.04	0.06	0.06	0.08
공공 부문	산출액	768	2,086	2,056	4,294
	종사자	2,791	3,465	3,446	3,629
민간 부문	산출액	1,798	3,273	4,392	5,367
	종사자	3,731	4,856	6,289	7,372

주: 1) 2000년 공공부문 통계생산자의 산출액은 2001년 산출액을 적용

2. 통계분석업

통계산업 분류체계에서 통계분석업을 모형 및 자료 분석업, 기타 통계분석업으로 세분하였으나, 통계생산업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세부 산업들이 선명하게 분화되지는 않고 있으며, 통계생산업 및 통계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통계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작업으로써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및 개인들의 사례로는 개별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용통계에 대한 통계 처리 및 분석 등의 위탁 작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응용통계가 요청되는 부문은 의학·생물 통계, 경제·경영 통계, 금융·보험 통계, 사회·심리 통계, 환경통계, 공업통계, 기타 응용통계²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응용통계 영역에서의 관련 기초 통계자료에 대한 각종 분석 및 해석 작업들이 통계분석업의 주된 산출물으로써 거래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분석업의 특성은 산업 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물 및 종사자 수 파악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통계분석업의 생산물이 중간 투입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종 생산물 산업에서 통합하여 파악되고 있으며, 응용통계 부문은 아직까지 독립된 세부 산업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통계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까닭이다. 이런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통계분석업에서는 별도의 시장 규모 파악을 위한 추정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통계분석업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산업 영역에서 활발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다양하고 빠르게 생산되고 있는 정형, 비정형의 초대용량 자료²¹⁾들을 말하는데, 이들 자료의 처리·분석 과정에서 국가 운영 및 기업 경영, 미래 예측 등에 활용 가능한 많은 가치 있는 정보자원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빅데이터의 전략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²²⁾

이와 같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전략 산업화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 국가

20) 이들 응용통계 영역의 구분은 2008년 기준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21) 인터넷, 모바일 기기, 온라인 상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센서류(sensor), 인공위성 이용 원격측정 기기(GPS 등) 등의 사용과정에서 정형, 비정형의 디지털 자료가 대규모로 수집, 저장되고 있다.

22)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데이터가 자본이나 노동력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적 자본이며, 새로운 원자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이후에 범부처적인 빅데이터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외의 정책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2년에 빅데이터 연구개발 계획(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을 발표하고, 3대 전략으로 빅데이터 핵심 기술의 확보, 빅데이터의 활용 확산, 빅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선정한 바 있으며, 대통령 직속의 빅데이터 협의체(Big Data Senior Steering Group)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와 기업혁신기술부가 주도하여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에 데이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하여 공공정보 공개 및 데이터를 이용한 가치창출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개방을 위한 플랫폼(data.gov.uk)의 정비를 통해 데이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개 데이터들에 대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발표하였고, 국가 5대 중점 전략 영역에 “빅데이터 이용과 활용에 의한 사회·경제 성장”을 포함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0월에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빅데이터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2년 11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의 정책방안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방안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및 민간의 융합지식을 도출하고 경제, 사회, 질병 등에 대한 실시간 분석·대응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역량 강화 및 핵심기반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서는 ①신규 서비스의 발굴과 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추진, ②빅데이터 기술 및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 ③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실무 인력의 양성, ④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및 정보 공유체계 마련, ⑤산업 현황 및 활용실태 조

사, ⑥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 ⑦서비스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주요한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5개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에서는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스마트 강국 실현을 비전(Vision)으로 선정하고, 범부처 및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전략적 기술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4대 추진 전략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부처별 4개의 기반조성 과제와 1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빅데이터 산업화를 위한 그 밖의 국내 정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지식경제부가 감성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73억원의 예산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처리플랫폼연구센터(부산대학교) 등을 개설하여 다방면에 걸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정보 자원화를 위한 작업은 데이터마이닝이라는 분석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데, 데이터마이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분석기법들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학적 분석 방법인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주성분분석(principal analysis),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3), 24)}

이상에서와 같이 통계산업 분류체계에서 통계분석업을 별도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한 것은 현실적인 산업 규모를 고려한 분류라기보다는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예비적인 분류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다. 빅데이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한다면, 국내에서도 관련되는 정책지원 및 산업 활성화 사업들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통계분석업의 시장규모도 동반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산업의 성장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에 통계분석업의 추가적인 세분화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데이터마이닝 작업과정은 일반적으로 업무 이해(business understanding), 데이터 이해(data understanding), 데이터 준비(data preparation), 모형 구축(modeling), 평가(evaluation), 적용(deployment)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24) 통계학적 분석방법론 이외에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등의 기법들도 사용된다.

3. 통계정보서비스업

통계정보서비스업은 통계 데이터베이스서비스업, 통계 지리정보서비스업, 기타 통계 정보 서비스업으로 세분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 부문 통계정보서비스업은 무상 혹은 실비변상 형태로 제공되며, 통계생산업에서 통합하여 수행되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용 현황에 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고, 민간 부문의 통계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업황과 산출액, 종사자 수 규모 등에 대한 추정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계정보서비스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관련 산업인 데이터베이스산업 및 공간정보산업과의 중복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통계 데이터베이스서비스업은 생산, 가공, 분석 과정을 거친 통계정보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제공 형태가 통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밟은 이후에 서비스되므로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세부 산업인 데이터베이스서비스업과 부분적으로 중복된다. 또한, 통계 지리정보서비스업은 수집된 통계정보와 위치정보를 결합한 형태의 정보자료를 각종 매체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므로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된 정보서비스 제공과 중복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은 위치 정보 및 관련되는 공간적 인지·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포괄범위를 선정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된 정보서비스도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산업과 공간정보산업은 통계산업과 많은 부분에서 상호간에 연계 활용이 가능한 영역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매개로 통계정보와 공간정보가 결합된 이와 같은 융합 상품의 개발은 공급자에게는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수요자에게는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더 해당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 공공 부문 통계정보서비스업

공공 부문 통계정보서비스업은 공공 부문을 대표하여 통계청의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사례를 살펴본 이유는 국내 주요 기간 통계들의 대부분을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통계 조정·협력 업무 등을 통해 사실

상 국가 통계에 대한 총괄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제공하는 통계정보 서비스의 내용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자료까지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계청의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용자의 정보 요구 수준 및 서비스 처리 형태에 따라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곧, 이용자의 정보 요구 수준은 정제된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microdata)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와 집계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서비스 형태는 이용자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와 통계청에 위탁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를 통계청이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상품과 연결하여 보면, 마이크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MDSS(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Micro Data Service System)²⁵⁾ 또는 SGIS(통계지리정보시스템,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²⁶⁾ 이용자를 가정할 수 있으며, 집계자료를 직접 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KOSIS(국가통계포털,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²⁷⁾ 또는 e-나라지표²⁸⁾ 이용자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집계자료를 위탁 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MDSS 이용자 중 집계자료 이용자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청의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는 집계자료를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층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 이용자층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⁹⁾ 즉, 일반 이용자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기기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이 높고, 각종 통계작성기관에서 제공 중인 국가 승인통계 자료들을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현재의 자료 제공 서비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 이용자는 연관성 있는 통계자료와 행정자료가 연계된 통합형의 마이크로데이

25) KMDSS는 각종 통계조사에서 생산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인터넷에 접속·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말하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집계 단위의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26) SGIS는 수치지도 기반의 위치정보에 통계정보를 결합하여 소지역(집계구) 단위의 결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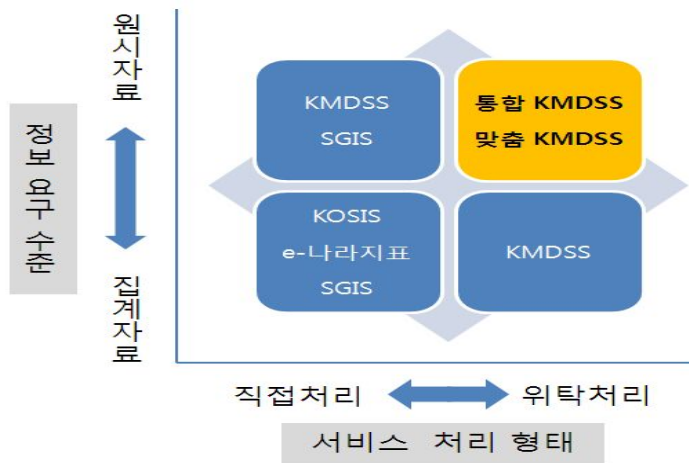
27) KOSIS는 118개 기관에서 작성하는 542종의 국가 승인통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국제기관 및 북한 관련 통계자료도 병행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28) e-나라지표는 국정 전체 분야에 걸쳐 각종 통계자료 및 시계열 추이,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여, 국정 현황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표체계의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29) 관련 외부 기관 및 민간 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2년 8월에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방법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고급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터 제공, 기초 단위구 및 가구·사업체 수준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학술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계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요금의 차등 적용, 맞춤형 마이크로데이터 및 집계자료 제공 등의 기존 서비스 체계의 개선사항과 신규 서비스의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 중 맞춤형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은 기초 단위구·가구·사업체 수준의 통합형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의 대안적인 서비스 형태인데, 통계 수요자의 특정 요구에 맞춰 관련 마이크로데이터들을 통합하여 제공하거나 집계·분석한 결과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1>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이용 형태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는 MDSS, MDAC, RAS, 쇼핑몰, 위탁처리 등 5가지 형태의 선택적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⁰⁾

이들 이용방법 중 쇼핑몰을 통한 CD-ROM 구매를 제외하면, 모두 MDSS 홈페이지(<http://mdss.kostat.go.kr>) 접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MDSS 홈페이지에서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범위,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 계산, 최신 제공 마이크로데이터 소개와 함께, MDSS, MDAC, RAS, 위탁처리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교육용을 위해 몇몇 조사의 간이형 마이크로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³¹⁾

30) MDAC(Micro Data Access Center,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는 대전(통계청 본부), 광주·부산·제주·대구(지방 통계청), 성남(한국통계진흥원), 서울(KDI) 등의 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RAS는 원격접근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를 나타낸다.

<표 3-9>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구분	주요 내용
MDSS	공공 이용 마이크로데이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추출, 분석, 가공 등의 이용
MDAC	승인이 필요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지정 장소에서 열람, 분석
RAS	승인이 필요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분석
쇼핑몰	미리 제작된 CD 또는 필요한 자료를 주문받아 CD로 제작, 판매
위탁처리	이용자의 자료요청에 따라 관련 통계표를 작성하여 제공

<그림 3-2>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초기 화면

한편, MDSS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이용 마이크로데이터는 2012년 현재, 사업체(10개)·가구(12개)·인구(5개)·농림어가(16개) 부문을 대상으로 모두 43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문별 마이크로데이터는 이용자가 조사항목별 자료제공 범위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조사 연도별로 관련되는 코드 및 파일 설계서, 조사표 등의 설명자료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1) 교육용데이터는 광업제조업조사, 가계동향조사,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3-3>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자료 제공범위 예시

HOME > MDSS소개 > 제공범위 > 추출

MDSS에서 이용가능한 통계조사별, 연도별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의 조사항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부문 | 가구부문 | 인구부문 | 농림어가부문

광업 제 조 업 조 사 | 연간자료 | 2011 | 검색

검색결과: 광업 제 조 업 조 사 > 연간자료 > 2011

설명자료

- 제공범위(광업제조업조사1982-2007).hwp
- 광업제조업조사_표준시계열설계서.xls
- 2011광업제조업 샘플파일.zip
- 2011년 기준 광업 제 조 업 조 사 표.pdf
- ms_2011_코드_및_설계서.xls
- 2011년_기준_광업제조업조사 표.PDF

순번	형태	항목	순번	형태	항목	순번	형태	항목
1	문자	조사기준년도	2	코드	행정구역(시도)	3	코드	행정구역(시군구)
4	코드	행정구역(동읍면)	5	코드	산업분류(대)	6	코드	산업분류(중)
7	코드	산업분류(소)	8	코드	산업분류(세)	9	코드	산업분류(세세)
10	문자	대표자성별	11	문자	창설년	12	문자	창설월
13	문자	조직형태	14	숫자	자산총계	15	숫자	자본금
16	숫자	자본잉여금	17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상용근로자_계	18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상용근로자_남
19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상용근로자_여	20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상용근로자_연간급여액	21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임시및일용근로자_계
22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임시및일용근로자_남	23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임시및일용근로자_여	24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임시및일용근로자_연간급여액
25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자영업자_계	26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자영업자_남	27	숫자	광업제조업부문_자영업자_여

<표 3-10> 통계청 공공 이용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현황

부문	공공 이용 마이크로데이터 현황		
사업체	- 건설업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 도소매업조사
	- 서비스업총조사	- 운수업조사	- 전국사업체조사
	- 기업활동조사	- 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가구	- 가계자산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가구소비실태조사
	- 인력실태조사	- 녹색생활조사	- 생활시간조사
	- 사교육비조사	- 지역별 고용조사	- 가계동향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 인력실태조사	- 외국인 고용조사
인구	- 사망원인통계	- 인구동향조사	- 국내인구이동통계
	- 인구주택총조사(1%, 2%, 5%)		- 사망원인보완조사
농림어가	- 농가경제조사	- 농업/어업/임업총조사	- 농산물 생산비조사
	- 농어업법인조사	- 양곡소비량조사	- 어가경제조사
	- 농업/임업/어업조사	- 어업생산동향조사	- 농업면적조사
	-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 어류양식동향조사	- 작물생산량조사

한편,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이용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기관 2,458건(25.8%), 국내 대학 2,377건(24.9%), 중앙행정기관 1,917건(20.1%), 민간 기업 1,0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마이크로데이터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정부 기관에서 학술연구, 정책개발, 관련 표본조사 실시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은 주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관련 회사와 금융기관에서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2010년~2011년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이용기관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민간 기업	기타
이용건수	9,545	1,917	2,458	2,377	1,010	1,783
(구성비)	100.0	20.1	25.8	24.9	10.6	18.7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

또한,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이용방법별 현황을 살펴보면, MDSS 7,983건(83.6%), 위탁처리 1,009건(10.6%), CD-ROM 445건(4.7%), MDAC 70건(0.7%)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MDSS 및 위탁처리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MDAC 이용 건수는 2009년(45건)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RAS가 2010년에 서비스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 3-12> 2010년~2011년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이용방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합계	위탁처리	MDAC	RAS	MDSS	CD-ROM
이용건수	9,545	1,009	70	38	7,983	445
(구성비)	100.0	10.6	0.7	0.4	83.6	4.7

주: 1) CD-ROM은 통계쇼핑몰, 한국통계진흥원, 정부간행물관매센터에서 판매

이와 같은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요금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계작성기관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민간 기관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나. 민간 부문 통계정보서비스업

민간 부문의 통계정보서비스업은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세부 영역인 데이터베이스서비스산업 및 공간정보산업의 세부 영역인 융·복합된 정보서비스산업과 중복되는 영역인데, 공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산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보다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데이터베이스서비스산업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DB서비스가 제공되는 산업 영역(통계 데이터베이스서비스업, 이하 SDB산업)과 공간정보산업의 공간정보와 통계정보가 결합된 산업 영역(통계 지리정보서비스업, 이하 SGIS산업)을 민간 부문 통계정보서비스업의 세부 사업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서비스산업과 공간정보산업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화의 진전과 함께,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 후반부터 정부차원에서 관련 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진흥법으로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2009년에 제정된 바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은 2011년에 국회에서 발의되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은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업을 사업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아왔다.

다음에서는, 통계정보서비스업의 세부 부문인 SDB산업과 SGIS산업에 대한 산출액 및 종사자 규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SDB산업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³²⁾을 경영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산출액 및 종사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의 전체 규모를 SDB산업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경영하는 부문을 별도로 추정하여 산정하였다. 추정 과정 중 산출액 및 종사자 수와 관련된 기초자료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및 서비스업조사의 연도별 결과자료를 사용하였으며, SDB산업의 비중 추정자료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도별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분석 결과보고서”에서 제공하는

3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뉴스제공업(63910)은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뉴스 리포터 및 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부문별 매출액과 DB 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계수를 작성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의 전체 산출액은 63,028억원, 종사자는 28,743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산출액은 25.6%, 종사자는 7.0%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3> 포털, 뉴스 제공업, 데이터베이스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산출액	합계	6,457	31,586	45,272	63,028
	포털 서비스업	6,457	18,406	30,415	44,202
	뉴스 제공업		1,439	1,605	2,198
	데이터베이스 제공업		11,741	13,252	16,628
종사자	합계	14,564	20,460	23,953	28,743
	포털 서비스업	14,564	9,279	13,459	16,153
	뉴스 제공업		1,618	1,476	1,737
	데이터베이스 제공업		9,563	9,018	10,853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서비스업 조사

주: 1) 포털 서비스업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 2000년은 제7차 한국표준분류체계가 적용, 2006년~2010년은 제8차 및 제9차 한국표준분류체계 적용

한편,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분석 결과보고서”에서 데이터베이스서비스산업은 9개의 대분류로 구분하며, 통계 부문은 경제·금융 대분류의 세분류에 포함하고 있다.

<표 3-14> 2010년 데이터베이스서비스산업 대분류별 기업 수 및 DB 수

(단위: 개)

구분	합계	인문/뉴스	생활	문화/예술	포털	경제/금융	경영	기타
기업 수	1,987	617	354	282	216	211	192	115
DB 수	1,957	490	263	389	150	160	167	338

자료 : 2010년도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 분석 결과보고서

<표 3-15> 2010년 경제·금융 대분류의 세분류 및 DB 수

(단위: 개,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DB 수	구성비
경제·금융	금융·증권·시황	은행, 보험, 증권, 주식, 환율, 시황정보 등	63	39.4
	재무·회계·신용	재무정보, 자본운영, 재무제표, 원가계산, 회계감사, 재산평가, 감가상각 등	21	13.1
	부동산	부동산 시세, 매매정보(부동산 경매는 '경매·입찰'로 분류)	66	41.3
	통계	시장조사, 여론조사, 인구통계, 산업통계, 정책통계, 금융통계, 물가통계 등	10	6.3

자료 : 2010년도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 분석 결과보고서

이와 같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SDB산업의 추정계수 값을 산출하였는데,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분석 결과보고서”에서 통계 중분류 부문의 매출액 자료가 공표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분류 내부의 중분류별 비중은 서비스 중인 DB 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1단계: 경제·금융 대분류 매출액 ÷ 데이터베이스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 = ①
 2단계: 통계 중분류 DB 수 ÷ 경제·금융 대분류 DB 수 = ②
 3단계: ① × ② = 추정계수

이상의 방법으로 SDB산업에 적용할 추정계수 값을 산정해 보면, 2009년 이후 통계 중분류의 추정계수 값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금융 대분류 부문에서 서비스되는 DB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통계 중분류에서 서비스되는 DB 수는 2009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영향인데, SDB산업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2009년 이후에는 신규 기업들의 진입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2000년~2010년까지의 산출액과 종사자 수에 적용한 최종적인 추정계수 값은 2009년 이후 4개 연도 추정계수 값의 단순 평균 값인 0.06을 적용하였다.³³⁾

33)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분석 결과보고서는 2009년부터 발표되고 있으므로 추정계수 값의 산정은 2012년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반면, 통계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 연도는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4개 연도의 단순 평균 값을 적용하여 계수 값을 완화하여 적용하였다.

<표 3-16> 경제·금융 대분류의 통계 중분류 추정계수 산정 결과

(단위: 억원, 개)

구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산업	경제·금융 대분류		통계 중분류	
	매출액(A)	매출액(B)	DB 수(C)	DB 수(D)	추정계수 (E=B/A*D/C)
2009년	40,638	4,685	109	10	0.011
2010년	42,242	3,091	160	10	0.005
2011년	43,218	3,242	158	10	0.005
2012년	44,847	3,266	281	10	0.003

자료 : 연도별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 분석 결과보고서

최종적으로 SDB산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수를 추정해보면, 2010년의 산출액은 378억원, 종사자 수는 173명으로 나타났으며, 증감률로는 산출액이 876.1%, 종사자 수는 97.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7> SDB산업 산출액 및 종사자 수 추정 결과

(단위: 억원, 명)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산출액	39	190	272	378
종사자	87	123	144	173

한편, SGIS산업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뉴스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산출액 및 종사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데, SDB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산업의 전체 규모도 SGIS산업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추정계수 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SGIS산업의 추정 과정은 SDB산업과 동일한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추정 과정에서 산출액 및 종사자 수와 관련된 기초자료는 SDB산업에서 활용한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및 서비스업조사의 연도별 결과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산업은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산업과 같은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독자적인 추정계수를 산정할 수는 없었으나, 데이터베이스산업과는 DB를 매개로 서비스

가 제공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생활 대분류 중 지도·지리 중분류가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참조하여 추정계수를 적용하였다. 다만, 지도·지리 중분류에서 서비스되는 전체 DB가 SGIS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계정보와 공간정보가 결합된 비중은 SDB산업에서 파악한 0.06 값을 다시 적용하여 조정된 계수 값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2010년 기준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분석 결과보고서”에서 분류하고 있는 생활 대분류 부문의 9개 중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지도·지리 중분류는 12개의 DB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세분류로는 지도, 지리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8> 2010년 생활 대분류의 세분류 및 DB 수

(단위: 개,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DB 수	구성비
생활	생활 일반	생활상식, 청소, 세탁, 직장생활, 패션, 인테리어, 가구, 요리, 미용, 이사, 주택, 전화번호부, 우편, 퀵서비스 등	146	55.5
	결혼·장례	결혼, 약혼, 예식장, 혼수, 부부, 가족, 이혼, 재혼, 장례 등	10	3.8
	여성·육아	임신, 출산, 육아, 놀이방, 주부 등 관련 정보	19	7.2
	건강·보건	건강, 병원, 질병, 수술, 응급처치, 의료사고, 다이어트, 성교육 등 관련 정보	58	22.1
	복지	사회사업, 적십자, 재해구호,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입양, 탁아소, 교아원, 노인 복지 등	1	0.4
	교통	철도, 버스, 택시, 항공, 지하철, 렌터카, 고속도로, 교통방송 등	5	1.9
	지도·지리	지도, 지리 관련 정보	12	4.6
	날씨·기상	일기예보, 날씨 정보	7	2.7
	인물	인물 DB 및 인물 관련 정보	5	1.9

자료 : 2010년도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 분석 결과보고서

다음으로, 이와 같은 관련 자료들과 함께, 생활 대분류 내부의 중분류별 서비스 중인 DB 수를 비중 값으로 적용하여 공간정보산업(GIS)의 추정계수 값을 산출하였으며, 통계정보와 공간정보가 결합된 추정계수 산출을 위해, SDB산업에서 도출된 0.06 값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SGIS산업의 추정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 1단계: 생활 대분류 매출액 ÷ 데이터베이스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 = ①
 2단계: 지도·지리 중분류 DB 수 ÷ 생활 대분류 DB 수 = ②
 3단계: ③(SDB산업 4개 연도 단순 평균 추정계수: 0.06)
 4단계: ① × ② × ③ = 추정계수

이상의 방법으로 도출된 추정계수 값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영세 생활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들이 대규모로 창설되었다가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에서 대폭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거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도·지리 중분류에서 서비스되는 DB 수도 2009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SGIS산업은 공간정보산업 중 통계정보를 콘텐츠로 사용하는 특수 영역이므로 아직까지는 산업 활성화 측면이 부진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2000년~2010년까지의 산출액과 종사자 수에 적용한 최종적인 추정계수 값은 2009년 이후 4개 연도 추정계수 값의 단순 평균 값인 0.0010을 적용하였다.³⁴⁾

<표 3-19> 생활 대분류의 지도·지리 중분류 추정계수 산정 결과

(단위: 억원, 개)

구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산업 매출액(A)	생활 대분류		지도·지리 중분류	
		매출액(B)	DB 수(C)	DB 수(D)	추정계수 (E=B/A*D/C*0.06)
2009년	40,638	5,951	125	16	0.0011
2010년	42,242	7,843	263	12	0.0005
2011년	43,218	8,264	272	11	0.0005
2012년	44,847	8,316	99	9	0.0010

자료 : 연도별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 분석 결과보고서

최종적으로 SGIS산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수를 추정해보면, 2010년의 산출액은 49억원, 종사자 수는 22명으로 나타났다.

34) SDB산업과 동일한 이유로 완화된 추정계수 값으로 적용하였다.

<표 3-20> SGIS산업 산출액 및 종사자 수 추정 결과

(단위: 억원, 명)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산출액	5	25	35	49
종사자	11	16	19	22

한편, 참고적으로 SGIS산업이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로써 상권정보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및 성공률 향상을 위해 서비스 중인 상권정보시스템은 국내에서 중소기업청이 2006년에 서비스한 이후 모두 4개 기관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³⁵⁾

이들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생산된 각종 통계자료와 인터넷 기반의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수요자가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상권형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점 이후의 예상 매출액 및 상권의 유동 인구 등을 추정한 자료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서비스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은 동종·유사 업체 현황 및 추이, 유동·거주 인구, 교통·공공 시설 및 집객시설, 1,500대 주요 상권 정보 등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밀 정보 및 상권조사보고서 등의 부가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상권그리기 및 로드뷰(Road View) 등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 3-21> 정부 및 민간의 상권정보시스템 개요

제공기관(컨텐츠) 명칭	서비스 연월	주요 제공 서비스	시스템 특징
중소기업청(상권정보 시스템)	2006.7	매출추정, 유동인구, 로드뷰/상권그리기 기능, 1,500대 주요상권,	인·허가 DB+현장실태조사를 통한 DB 신뢰도 우수
SK텔레콤(지오비전)	2011.3	매출추정, 유동인구	유동인구 강점(이동통신 정보)
NICE신용평가(비즈맵)	2011.6	매출추정, 유동인구	매출추정 강점(카드 매출정보)
현대카드(마이비즈니스)	2011.10	매출추정, 유동인구	지오비전과 데이터 공유

자료 : 주현·김숙경·홍석일 외, 「소상공인 통계 생산방안 연구」

35) 주현·김숙경·홍석일 외, 「소상공인 통계 생산방안 연구」, 통계개발원, 산업연구원, 2012.12.

<표 3-22> 정부 및 민간의 상권정보시스템 DB 구성 내용 비교

DB	상권정보시스템	지오비전	비즈맵	마이비즈니스
매출 추정	△(일부)	○	○	○
유동 인구	△(조사)	○	△	○
추정 인구	○	-	-	-
로드뷰 ³⁶⁾	○	-	-	-
최소 제공단위	포인트 블럭 ³⁷⁾	행정동	블록	행정동
상권 그리기	○	-	-	-
주요 상권	○	-	-	-
주요 특징	인·허가 DB 이용, 주요 상권정보 제공	SKT 기지국의 위치정보 기반으로 유동인구 강점	신용카드사용량을 통한 매출추정 강점	창업 및 마케팅용 다양한 콘텐츠 제공

자료 : 주현·김숙경·홍석일 외, 「소상공인 통계 생산방안 연구」

주 : 2012년 2월 기준.

끝으로, SDB산업과 SGIS산업을 합산한 민간 부문 통계정보서비스업의 규모를 정리해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산출액 427억원, 종사자 수는 173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3-23> 민간 부문 통계정보서비스업 산출액 및 종사자 수 추정 결과

(단위: 억원, 명)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산출액	44	215	307	427
종사자	87	123	144	173

36) 실제의 거리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360° 회전하면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지도 서비스 기능이다.

37) 가로, 세로 일정 간격으로 구획한 격자형의 단위 지역을 말한다.

4. 통계지원서비스업

통계지원서비스업은 통계자료 입력업,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업, 통계 연구개발업, 통계 교육업, 조사인력 공급업, 기타 통계 지원서비스업으로 세분되는데, 공공 부문에서 생산하는 산업은 통계자료 입력업, 통계 연구개발업 및 통계 교육업이 관련되고 있으며,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업, 조사인력 공급업은 순수하게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지원서비스업은 통계생산업의 최종 생산물 산출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익적인 목적의 무상 혹은 실비변상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계산업 현황 파악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또한, 민간 부문의 통계 연구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경제학 연구개발업과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서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³⁸⁾ 실질적으로 통계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은 부가적인 업무로써 통계 연구개발직업을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산업 규모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통계 교육업은 기타 교육기관 중에 통계 관련 자격증을 강습하는 민간 학원을 생각할 수 있으나, 관련 자격증이 사회조사분석사로 한정되어 있고, 응시생의 수요도 많지 않은 영향으로 아직까지 독자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역시 산업 규모 산정에서 제외하였다.³⁹⁾ 그 외,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사인력 공급업은 대부분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종사하는 민간 통계생산업 관련 기업들이 특화된 교육과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역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통계지원서비스업은 민간 부문의 통계자료 입력업,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업을 중심으로 업황 및 규모 추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들 산업 부문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통계자료 입력업은 정보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자료처리업과 연계되며,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연결된다.

38) 순수 사회·경제 통계 부문은 경제학 연구개발업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응용 통계 부문은 경제학 연구개발업과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서 포함한다.

39) 통계 부문의 유일한 국가 공인자격증인 사회조사분석사는 1999년에 신설된 이후 2011년까지 약 3.6만명이 응시하였고, 자격증 취득자는 1, 2급을 합하여 약 1.8만명에 불과하다. 그 외 민간 자격증으로는 SAS, SPSS, Minitab 등의 자격증 시험이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 통계자료 입력업

자료 처리업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산자료로 입력·전환·저장하고 저장자료의 집계·제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주요 사업 영역은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각종 통계 생산업 관련 자료의 처리, 민원인 및 고객 관련 각종 신청·등록·고지 자료의 처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 중에 통계자료 입력업에 해당되는 영역은 각종 통계생산업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처리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통계자료 입력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수 규모는 7단계에 걸친 추정작업을 거쳐 산정하였는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료처리비를 각각 산출하여 통계자료 입력업의 산출액 규모를 추정하고, 단위 자료처리비당 종사자 수 비율 자료를 적용하여 종사자 수 규모를 최종적으로 추정하였다.

- 1단계: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의 외주용역비 규모 산출 = ①
 2단계: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의 외주용역비 중 자료처리비 산출 = ②
 3단계: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산출액 - ① = ③(순수 민간 통계생산업 산출액)
 4단계: ③(순수 민간 통계생산업 산출액) 중 자료처리비 산출 = ④
 5단계: 통계자료 입력업 산출액 규모 추정 = ② + ④ = ⑤
 6단계: 자료처리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산정 = ⑥
 7단계: ⑤(통계자료 입력업 산출액) ÷ ⑥ = ⑦(통계자료 입력업 종사자 수)

작업과정 중 공공 부문의 외주용역비 비중 및 규모는 2006년, 2008년, 2012년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현황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단위 조사당 자료처리비 비중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예산 대비 자료처리비 비중자료를 적용하였다.

단계별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의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의 외주용역비 규모는 통계작성기관의 예산 자체 집행액 대비 외주용역비의 비중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2단계의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의 외주용역비 중 자료처리비 산출은 1단계 결과에 단위 조사당 자료처리비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즉, 연도별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현황자료에서 통계작성기관의 외주용역비 3년 평균 비중은 전체 통계생산

업 24.0%, 정부 부문 통계생산업 22.1%, 민간 지정기관이 32.6%로 파악되어 현장 조사 및 자료처리 기능이 빈약한 민간 지정 통계작성기관의 외주용역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별 통계조사 예산액 중 외주용역 자료처리 비용의 비중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사례를 참고하였는데, 전체 통계조사 예산액 중 6.9% 수준이 외주용역 자료처리 비용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표 3-24> 공공 부문 통계예산 중 외주용역비 구성비

(단위: %)

구분	3년 평균 ⁴¹⁾	2008년	2010년	2012년
합계	24.0	21.1	23.8	27.2
정부 부문	22.1	18.9	19.7	27.6
중앙행정기관	23.4	20.7	20.7	28.9
지방자치단체	13.3	8.8	13.2	17.8
민간 지정기관	32.6	27.2	44.7	25.9

자료 : 통계청 통계 인력 및 예산조사

주 : 2010년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예산을 제외하고 산정

47

<표 3-25>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부문별 세출 예산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인건비	활동 및 용품비	홍보비	자료처리비	기타
예산	1,808	1,221	323	126	124	14
(구성비)	100.0	67.5	17.9	7.0	6.9	0.8

자료 : 통계청 세출 예산 각목명세서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공공 부문의 외주용역비와 통계자료 입력업의 산출액 규모를 추정해 보면, 외주용역비는 2000년의 163억원에서 2010년에는 54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자료 입력업의 산출액은 2000년의 11억원에서 2010년에는 16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문자 인식기술을 포함한 ICR(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자료처리 방식을 처음으로 외주용역 형태로 도입하였으며, 뒤를 이어 실시한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에서도 동일 방식의 자료처리 방식을 적용하였다.

41)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등 기초자료가 2008년, 2010년인 경우에는 직접 해당 연도의 외주용역비 비중을 적용하였으나, 기초자료가 2000년, 2006년인 경우에는 자료 부족으로 3년 평균 외주용역비 비중을 적용하였다.

<표 3-26>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외주용역비, 자료처리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산출액	합계	768	2086	2056	4,294
	정부 부문	626	1629	1503	3,914
	민간지정기관	142	457	553	380
외주용역비	합계	163	454	434	546
	정부 부문	117	305	284	500
	민간지정기관	46	149	150	170
외주용역비 중 자료처리비		11	31	30	162

주 : 2010년 외주용역비 및 자료처리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예산액 124억원을 포함

3단계의 순수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산출액은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산출액 중 1 단계에서 파악된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의 외주용역비를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순수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의 산출액에 단위 조사당 자료처리비 비중을 적용하여 순수 민간 부문 통계입력업의 산출액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5단계는 공공 부문과 순수 민간 부문의 자료처리비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통계입력업의 산출액 규모를 추정하였다. 곧, 민간 부문 통계입력업의 산출액 규모는 2000년의 113억원에서 2010년에는 33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합산한 전체 통계입력업의 산출액은 2000년의 124억원에서 2010년에는 495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및 통계입력업 산출액

(단위: 억원)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민간 통계생산업 산출액(A)	1798	3273	4392	5367
공공 부문 외주용역비(B)	163	454	434	546
민간 통계생산업 순수 산출액(A-B)	1635	2819	3958	4821
민간 부문 통계입력업 산출액	113	195	273	333

<표 3-28> 통계입력업 추정 산출액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합계	124	226	303	495
공공 부문 민간 외주용역	11	31	30	162
순수 민간 부문	113	195	273	333

6단계 이후에서 파악한 통계 입력업의 종사자 수 규모는 경제총조사 및 서비스조사에서 파악된 자료처리업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자료로 통계 입력업의 산출액 규모를 나누어서 최종적인 통계 입력업의 종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총조사 및 서비스업조사 결과자료에서 파악한 자료처리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산출액 및 종사자 수의 증감이 반복되어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회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9> 자료처리업 산출액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산출액	2,322	9,103	2,858	4,642
종사자 수	2,512	3,704	1,949	3,591
산출액/종사자 수	0.92	2.46	1.47	1.29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서비스업 조사

주: 1) 2000년은 제7차 한국표준분류체계가 적용되어, 자료처리업과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이 통합되었으나 2006년, 2008년, 2010년의 3개 연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세분

<표 3-30> 통계입력업 추정 종사자 수 규모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합계	135	92	206	288
공공 부문 민간 외주용역	54	41	101	138
순수 민간 부문	80	51	105	150

나.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업

통계 패키지(package) 및 솔루션(solution)은⁴²⁾ 사용자가 수집한 기초 자료를 대상으로 전산처리 및 통계학적 정리·분석을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사용자는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간단히 조작하여 원하는 형태로의 자료 가공 및 분석 결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통계 패키지는 SAS, SPSS, Minitab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통계 패키지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STATA, S-plus, R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부분집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응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각종 사무·회계, 기업관리 및 제품 내장용 응용 소프트웨어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업 규모 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추정작업이 별도로 요청된다.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업의 산업 규모 추정은 전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수를 기반으로 하고, 연도별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업의 국내 시장 규모와 관련 자료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다만, 통계 솔루션 부문은 아직까지 뚜렷한 산업 부문 및 시장 규모의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BI(Business Intelligence)⁴³⁾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통계 패키지 개발·공급업 사업자의 비즈니스 분석용 소프트웨어 매출액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먼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청의 연도별 경제총조사 및 서비스업조사 결과자료에서 2010년에는 산출액 42,812억 원, 종사자 수 68,991명으로 조사되어, 2006년 이후 연평균 산출액은 0.8%, 종사자 수는 5.7%, 사업체 수는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액 증가율이 정체 상태인 반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은 아이디어 상품을 제작하는 영세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의 창업이 많았던 영향으로 판단된다.

42) 패키지와 솔루션은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솔루션을 더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계산업 분류체계에서 사용한 솔루션의 개념은 한정된 부문에서의 통계처리 기능을 지원하거나, 각종 응용 통계 부문에 특화되어 개발된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43) BI(Business Intelligence)는 기업이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며, 경영상의 다양한 위험을 자동적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이를 근거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 및 기술을 말한다.

<표 3-3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산출액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00년 ⁴⁴⁾	2006년	2008년	2010년
사업체 수	1,877	2,376	2,239	2,557
산출액	29,118	41,522	32,413	42,812
종사자 수	14,740	55,223	47,053	68,991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서비스업 조사

주: 1) 2000년은 제7차 한국표준분류체계가 적용되어,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으로 통합되었으나 2006년, 2008년, 2010년의 3개 연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

다음으로, 통계 패키지 개발·공급업 사업자의 현황은 주요 사업자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 현황을 중심으로 추정하였는데,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산출액은 972억원, 통계 소프트웨어 산출액 787억원, BI 솔루션 산출액 185억원, 종사자 수 18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비교해 보면,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1인당 산출액은 전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0.6억원에 비해 약 9배(5.4억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 생산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2>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업의 산출액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10년	
산출액	소계	84	290	354	585	972
	통계 SW	71	236	292	486	787
	BI SW	13	54	62	99	185
종사자 수	27	71	82	121	180	

자료 : 컴퓨터월드 "2006년 IT산업 시장조사"(2005년~2007년 산출액), 한국IDC "한국 BI 소프트웨어 시장 분석 및 전망 (2012~2016, 2011년 리뷰)"를 참고하여 추정

44) 2000년은 응용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이 통합되어 분류되었으나, 2006년, 2008년, 2010년은 세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5. 국내 통계산업 종합 현황

국내 통계산업에 대한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고, 산출액 및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산출액은 통계생산업 9,661억원 (82.8%), 통계 지원서비스업 1,467억원(13.3%), 통계정보 서비스업 427억원(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는 통계생산업 11천명(95.6%), 통계 지원서비스업 0.3천명(2.9%), 통계정보 서비스업 0.2천명(1.5%)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3-33> 통계산업 부문별 산출액 및 종사자 수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통계 생산업	소계	산출액	2,566	5,359	6,448	9,661
		종사자 수	6,522	8,321	9,735	11,001
	공공 부문	산출액	768	2,086	2,056	4,294
		종사자 수	2,791	3,465	3,446	3,629
	외주 용역	집행액	163	454	434	546
	민간 부문	산출액	1,798	3,273	4,392	5,367
종사자 수		3,731	4,856	6,289	7,372	
통계정보 서비스업	민간 부문	산출액	44	215	307	427
		종사자 수	87	123	144	173
통계지원 서비스업	민간 부문	산출액	208	580	888	1,467
		종사자 수	107	133	226	330

주: 1) 2000년 공공 부문 통계생산자의 산출액은 2001년 산출액을 적용

한편, 통계산업 부문별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산출액은 통계정보 서비스업 25.5%, 통계 지원서비스업 21.6%,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는 통계 지원서비스업 11.9%, 통계정보 서비스업 7.1%,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7.0% 순으로 파악되어, 통계정보 서비스업 및 통계지원 서비스업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4> 통계산업 부문별 연평균 증감률

(단위: %)

구분	통계생산업			통계정보 서비스업	통계지원 서비스업
	소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산출액	14.3	20.0	11.6	25.5	21.6
종사자 수	5.4	18.8	7.0	7.1	11.9

끝으로, 전체 통계산업 규모와 명목 국내총생산액 및 전체 산업 종사자 수와 비교해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산출액은 국내총생산액의 0.09% 수준인 11,00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는 전체 산업 종사자 수의 0.07% 수준인 11,504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공 부문은 2010년의 2개 총조사 실시에 따르는 특수(2,002억원)를 제외하면, 2006년 이후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5> 국내 통계산업 전체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명, %)

구분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합계	산출액(A)	2,655	5,700	7,209	11,009
	종사자 수(B)	6,716	8,577	10,105	11,504
	명목 GDP(C)	6,032,360	9,087,438	10,264,518	11,732,749
	전체 산업 종사자 수(D)	13,604,274	15,435,766	16,288,280	17,647,028
	산출액 비중(A/C)	0.04	0.06	0.07	0.09
	종사자 수 비중(B/D)	0.05	0.06	0.06	0.07
공공 부문	산출액	605	1,632	1,622	3,748
	종사자 수	2,791	3,465	3,446	3,629
민간 부문	산출액(E)	2,050	4,068	5,587	7,261
	종사자 수(F)	3,925	5,112	6,659	7,875
	산출액 비중(E/C)	0.03	0.04	0.05	0.06
	종사자 수 비중(F/D)	0.03	0.03	0.04	0.04

주: 1)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연도별 자료

6. 산업 규모 추정의 한계 및 개선방향

제1절의 통계산업 업종 현황에서는 통계생산을 비롯하여 통계산업 분류체계에서 구분한 세부 산업별로 간략한 업황을 살펴보고, 산출액 및 종사자 수 등에 대한 규모 현황을 추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명목 국내총생산액 및 전체 산업의 종사자 수와 비교하여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통계산업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선행연구 사례가 전혀 없고, 부문별로 관련되는 기초 통계자료가 빈약하여 추정작업의 정확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응용통계 부문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통계분석업의 경우에는 세부 산업 자체에 대한 추정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각 세부 산업의 기타로 분류한 부문도 추정작업에서는 제외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추정작업을 실시한 세부 산업에서도 추정계수 등의 적용과정에서 신뢰성이 낮은 근거자료들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특정 업종에서 2개 종류 이상의 세부 산업 활동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최종 생산물 중심으로 통합하여 추정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통계산업 규모 추정작업은 국내 통계산업의 대상 영역들을 처음으로 개관해본 수준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향후의 후속 연구에서 보다 정교하게 구성된 추정작업들로 보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또한, 통계산업은 산출물이 최종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기보다는 정부 및 기업 등에서 중간 투입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산업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의학·생물 통계, 금융·보험 통계 등의 각종 응용통계 부문에서 필수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통계산업의 경제적인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작권산업도 무형의 저작권이 최종 생산물이 아닌 중간 투입물로서 생산되어, 관련되는 여러 산업 부문에서 소비되고 있으므로 통계산업과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는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저작권산업(copyright industry) 분류체계를 적용

하여, 저작 활동에 의존하는 수준에 따라 4개 형태의 세부 저작권산업 영역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세부 영역별로 생산액, 부가가치액, 종사자 수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산업의 세부 영역은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대단히 다양한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들 영역에 대한 규모 추정작업에는 “저작권 요소”라는 경제적 기여도 평가를 위한 가중 값의 우선적인 선정이 필요하게 된다.

<표 3-36> 저작권산업 분류 체계, 정의 및 주요 사업

저작권산업 분류	정의	주요 사업
핵심 저작권산업 (Core Copyright Industries)	작품 및 기타 보호 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출판 및 문학, 음악·연극·오페라, 영화 및 비디오, 라디오 및 TV 방송, 사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시각예술 및 그래픽아트, 광고서비스, 저작권 신탁 관리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Interdependent Copyright Industries)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TV, 라디오, VCR, C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전자계입기 및 기타 기기, 컴퓨터 및 관련기기, 음향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 산업
부분 저작권산업 (Partial Copyright Industries)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어패럴, 직물, 신발, 보석, 귀금속, 기타 공예품, 가구, 가정용품, 자기, 유리, 벽지, 카펫, 장난감, 게임용품,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 박물관
저작권 지원산업 (Non-Dedicated Industries)	그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권 및 관련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며, 그 활동이 핵심 저작권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 도소매업, 일반 운송업, 전화 및 인터넷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

저작권산업의 저작권 요소는 저작권과 관련된 산업 영역들에서 저작권의 고유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산업 규모 추정과정에서 가중 값으로 적용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핵심 저작권 및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은 저작권 요소를 “1”로 평가하는 반면, 부분 저작권산업은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하고 있다.⁴⁵⁾

45) 2010년 기준으로 부분 저작권 산업에 관련된 18,231개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세부 영역별로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저작권지원산업은 핵심 저작권·상호의존 저작권·부분 저작권 산업의 산출액을 운송 및 도소매를 제외한 국내 총생산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저작권 요소 측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총무·관리 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중에 창조활동을 수행하는 인원 수를 조사하고 집계하여 세부 영역별 저작권 요소 값으로 선정하였다.

<표 3-37> 저작권산업 분류체계 및 저작권 요소

대분류	중분류	저작권 요소
핵심 저작권산업	출판, 문학, 음악, 공연 등 전체 중분류	1.0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TV, 라디오, 기록매체, 종이 등 전체 중분류	1.0
부분 저작권산업	어패럴, 직물, 신발	0.115
	보석, 귀금속	0.214
	기타 공예품	0.214
	가구	0.099
	가정용 자기, 유리제품	0.089
	벽지, 카펫	0.215
	장난감, 게임용품	0.150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	0.723
	인테리어 디자인	0.723
	박물관	0.108
저작권 지원산업	일반 도소매업, 일반 운송업, 전화와 인터넷	0.0896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내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

국내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응용통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저작권 요소의 개념을 적용하여 산업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향후의 통계산업에 대한 산출액 및 종사자 수 등의 규모 추정작업에서 도입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응용통계 부문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구축하여 표본설계하고, 세부 영역별 담당 업무 중 창조적인 통계 업무 비중이 50% 이상인 인력을 조사한다면 “통계 요소 값”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관련 법령 현황 및 정책 동향

1. 관련 법령 현황

통계산업과 관련되는 법령은 국가 통계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통계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인 및 공공 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통계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되는 각종 법령 및 행정규칙들로 구성되고 있다.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보급·이용, 통계작성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통계 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과 같이, 국가 통계의 전반적인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통·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그 외, 통계 및 정보 보호·공개와 관련된 각종 법령으로는 전자정부법, 국가 정보화 기본법, 공공정보 제공지침,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통계자료 제공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개인정보 단체소송 규칙, 법원·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등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 등이 있으며, 기타 각종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이용에 관한 다수의 규칙들과 공공정보의 공동 활용 및 재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몇몇 개별 법령들이 제정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령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통계산업과 관련하여서는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법령들은 이들 법령들의 제도화 및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들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3개 법령들이 통계산업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외 법령들은 부가적인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약술하여 기술하였다.

가. 통계법

통계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8차례의 일부 개정과 2007년의 전면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7년의 통계법 전면 개정은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 정확성, 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주요 개정 사항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품질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통계작성 승인제도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통계의 정확성과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의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제공 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이후의 개정 사항으로는 국가통계위원회 설치 및 통계의 날 제정(2009년), 성인지 통계 및 통계교육 강화(2010년) 등이 주요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2007년 이후 통계법 주요 개정 내용

연도	주요 개정 내용	
2007년	- 통계품질 진단제도 도입 - 통계작성 승인제도 취소 근거 마련 - 학술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신청제도 마련	- 민간 통계작성기관 지정 취소제도 도입 - 통계작성 목적의 공공기관 보유자료 제공 - 통계법 위반행위의 시정 요구 근거 마련
2009년	- 국가통계위원회 설치 - 표준화된 통계 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 도입	- 통계의 날 제정
2010년	- 성별 통계 작성 및 보급 강화 - 통계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통계교육 실시 및 참여 강화

이와 같은 통계법 규정 중에 통계산업과 관련되는 주요 부분은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 및 통계정보 서비스업, 통계지원 서비스업 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인데, 통계생산업과 관련하여 통계작성 승인·협의·권고 제도, 표준분류의 작성·고시,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요청, 자료제출 명령 및 실지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정보 서비스업 및 통계지원 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는 통계의 공표·보급·발간, 통계자료의 제공·이용, 통계 응답자 의무 및 보호,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국가통계 작성에 종사하는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규율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부문의 통계

산업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 민간 통계산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는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통계법 제30조의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은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통계자료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협의를 거친 통계의 표본설계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1조의 통계자료 이용에 관한 규정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의 통계자료는 타당성 평가를 거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3조의 통계 응답자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에서는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통계자료 제공규정은 더욱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즉, 공표 이외 자료 중에 ①마이크로데이터 및 미공표 집계자료는 개별자료가 식별되지 않도록 제공하며, ②명부자료는 통계작성기관의 승인통계 작성목적인 경우에만 제공하고, ③전산지도 자료는 기초단위구, 집계구 및 조사구 경계 등의 자체 생산한 지도정보에 제한해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써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가능성,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 및 정도, 과거의 자료제공 규정 위반경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인통계 조사의 항목별 자료제공 범위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⁴⁶⁾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자료 제공심의회를⁴⁶⁾ 통계청 내부 위원 17명으로 선임하여 통계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다. 자료제공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수수료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고시된 통계자료 제공 대행기관, 자료교환 기관 및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공익성을 인정한 기관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자료 제공 대행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6)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19조 제1항에서 심의회는 의장 1명, 15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상임 위원 15명 전원을 통계청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만, 제3항에서 통계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1991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된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을 보완하여 1995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바 있으나, 법령이 공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2011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개인정보 단체소송 규칙, 법원·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등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 등을 제정한 바 있다.

새롭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으며, 개인정보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EU 및 미국 등의 선진 국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39>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보호 범위	-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의 업무상 개인정보 운용·처리 행위를 규율 - 전자처리 문서 이외에 수기 문서까지 포함하여 규율
보호위원회	-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보호 기준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를 규정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단계별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기준 설정
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원칙적인 처리 금지
영상처리기기	- 영상처리기기 설치 제한 근거의 마련(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 제한)
영향 평가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및 의무적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 제도 도입
통지 및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통지, 신고, 피해 최소화 조치 규정
권리 보장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부여
조정 제도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단체 소송	-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도 도입
침해사실 신고	- 침해받은 자의 신고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설치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중에 통계산업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면, 제15조 및 제17조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 규정 또는 불가피한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47), 48), 49)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서비스업 및 신용정보업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별 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 및 제공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 47)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48)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9)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2차례의 일부 개정과 2004년의 전면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4년의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전자적 형태의 정보 공개와 공개 목록의 작성 및 비치, 정책 정보의 정기적인 공개 의무 등을 공공기관에 새롭게 부과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의 선정 및 개인정보의 비공개 요건을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의 경우로 제한하였고, 기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구와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표 3-40> 2004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개 방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
정책 정보	- 정책 정보의 범위·시기·방법 등의 사전 선정 및 정기적인 공개 의무 부과
공개 목록	- 보유·관리하는 정보 목록의 작성 및 비치, 공개 의무 부과
비공개 대상	- 비공개 정보의 법령 근거 명시, 개인정보 비공개 요건 강화(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공개 절차	-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10일로 단축, 비공개 결정 사유 명시
공정성 확보	- 외부 전문가 참여형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위원의 절반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
정책 및 제도	- 정보공개 관련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대통령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보고서	- 연간 정보공개 운영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 부과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규정 중에 통계산업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규율 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원칙과 제5조에서 국민의 정보공개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목록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⁵⁰⁾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으로 청구서 및 구술에 의한 방

50)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과 함께, 2010년에 전면 개정된 전자정부법도 주목되고 있는데, 개정된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범위를 행정기관 이외에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정부법의 규정 중에 통계산업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규율 대상인 행정정보는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에서는 행정기관 보유 정보의 공동이용 및 동일 내용에 대한 추가 수집을 금지하고 있고, 공동이용 기관으로는 행정기관과 인가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제37조에서는

-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센터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정보공개법 및 전자정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정보 제공지침,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및 기타 각종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관한 다수의 규칙들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재사용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으로는 기상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발명진흥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 관련 정책 동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산업은 아직까지 정립 과정에 있는 산업 영역이므로 직접적인 정부정책의 대상으로 부각된 사례는 없었으며, 정책형성 과정에서 관련 산업 부문인 조사산업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던 사례는 2009년에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토론회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세부 부문별 토론회의 일부로서 조사산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⁵¹⁾ 토론회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급성장 중인 조사산업의 위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열악한 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지원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외국계 대형 기업의 시장 선점과 국내 기업의 영세성에 따르는 경쟁력 약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정책 방안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금의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서비스 품질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인증제도 도입,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제안되었던 바 있다.

한편, 통계청 차원에서의 통계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 미래 발전전략의 추진방향에서 통계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의지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2011년에 실시한 국가통계 미래발전 전략 관련 연구용역에서 민간 통계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으로써 민간 리서치 업체에 대한 지원, 민간 리서치 업체 및 조사원에 대한 인증제, 통계 감리제도 도입 및 통계

51)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2009년 3월에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부 등 8개 기관 합동으로 2009년 5월에 최종 발표한 “경제난극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통계산업(조사산업)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진흥법의 법제화 작업을 제안하고 있으며, 진흥법의 구성 내용으로써 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표준화 추진,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세제지원, 발전기금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통계 미래발전 전략 연구의 이와 같은 각종 지원방안들은 2012년 이후에 실시될 후속작업에서 승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통계청과 한국통계진흥원은 2011년에 “변화의 시대, 통계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통계산업의 등장과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통계산업의 국내·외 사례 소개, 통계 산업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 정보보호 및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공간정보 활성화 방향, 통계산업진흥법 제정 등이 비중 있게 토의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통계산업을 직접적으로 전제한 정책과제들은 아직까지 정책형성 단계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계산업 성장 및 활성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서 이용되는 공공정보의 관리·이용과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부처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덧붙여 통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단체들의 동향들도 알아보았다.

가. 통계청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통계청은 2011년부터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범용통계시스템인 나라통계시스템의 개발·적용 및 마이크로데이터의 통합관리 ISP사업⁵²⁾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정책 관리, 모집단 공동 활용 및 통계 생산, 메타자료시스템 등을 통합 관리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작성기관이 개별적으로 통계조사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르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통계조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기관의 통계생산 활동을 지원하며, 통계작성의 전체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통계생산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나라통계시스템은 2011년에 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43종의 승인통계 작

52)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의미하며, 기업의 수행 목적과 부합하는 조직, 프로세스, 기술의 최적화된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기업 정보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제안된 개념이다. 이와 같은 ISP는 기업의 방향과 정보 기술의 방향을 통합하여 조직의 비전과 정보 관리를 지원하며, 다양한 단위 조직 사이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성과정에 적용되었으며, 2012년부터 3개 연도에 걸쳐서는 444종의 승인통계로의 확대·적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해외수출까지를 구상하고 있다.⁵³⁾

한편,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ISP사업은 2011년에 실시한 통계작성기관 보유 마이크로데이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마이크로데이터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추진하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 활용 및 공공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는 보존·관리·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관리 부주의 등으로 자료 유실 및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높았으며, 담당 인력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대외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 ISP사업은 2013년까지 기반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2015년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확충 및 서비스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들 작업을 통해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마이크로데이터를 보유·관리 및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인력 및 예산의 절감과 체계적인 마이크로데이터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연계 등을 통해 2차적인 가공 통계의 개발과 중복조사의 최소화 효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나. 행정안전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 3월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종합계획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의 품질 제고 및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하여 2010년 10월에 고시한 바 있다.

한편, 서비스 지향적 국가자원 개방 및 공동 활용기반 구축 사업이 2010년 7월부

53) 나라통계시스템 개발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2011년에 실시된 1단계 기반 구축작업에는 59억원이 소요되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될 2단계 확대 및 고도화 작업에는 18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이후의 서비스 확산 단계에서는 국내 적용을 약 500여종까지 확대하고 해외수출을 예측하고 있으며, 약 6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 진행되어 2011년 7월에 공유자원포털(data.go.kr)을 통해 공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공유자원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모바일용 앱 등 신규 서비스로 재창출이 가능한 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합 제공 사이트를 말하며 국민 모두가 영리·비영리 목적에 상관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⁵⁴⁾ 공유자원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버스 실시간 운행·공공 취업·식품 안전·기상·보육시설·문화재·학술자료 원문·생활 법령·공연 및 전시 정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텍스트·이미지·동영상으로 약 7천건의⁵⁵⁾ 공유정보가 개방형 응용프로그래밍(Open API)⁵⁶⁾방식으로 서비스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고전 및 전통 문양 등의 약 7만건을 디지털화하여 추가로 개방한 바 있다.⁵⁷⁾

<그림 3-4> 공유자원포털 초기 화면



- 54) 전자정부법 제51조 제2항은 중앙 사무 관장기관의 장은 고유 서비스의 효율적인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 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55) 데이터 유형별 제공정보는 이미지 2,292건, 동영상 505건, 텍스트 1,312건, 멀티미디어 43건, 소리 194건 기타 2,680건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 프로그램 775건, 소재 정보 1,895건이 포함되었다.
- 56) 개방형 응용프로그래밍 방식(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나 애플리케이션을 네트워크를 통해 타 정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술을 말한다.
- 57) 추가 개방자료는 계원필경 등 한국문집총간 973건, 삼봉집 등 고전번역총서 177건, 연화문수막새외왕 등 한국전통문양 69,606건으로 구성되었다.

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011년 10월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방안”⁵⁸⁾을 발표하였으며, 빅데이터 시대의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정의 혁신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 선정, 빅데이터 활용 추진단 구성 등을 선정하였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범정부적 데이터 연계·분석 체계 구축, 정부·민간 데이터 융합 추진 등의 7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표 3-41>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 과제 및 내용

추진 과제	과제별 주요 내용
범정부적 데이터 연계·분석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확대하여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연계·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 예측 기반의 국정운영 혁신을 위한 국가 전반의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마련
정부·민간 데이터 융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및 공공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체계 및 기술 확립 - 산·학 등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연계·수집할 수 있도록 저장소 구축·운영 - 공공 데이터의 단계적 개방으로 민간의 가치 창출 및 기업 활동을 지원 - 민간 기업의 공공 데이터 접근에 따른 “데이터 이용 허락” 규약을 신설하여 데이터 활용의 공익성을 확보
공공 데이터 진단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MDM(Master Data Management) 체계를 구축(MD: 다수의 시스템에서 활용되어 기준이 되는 표준 참조 데이터) - 범부처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품질관리 기준 및 체계 마련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가적 빅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 - 공공 부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활용 촉진방안 및 성과관리 체계 확립
분석 인력 양성 및 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개인정보 익명성 보장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기본 원칙을 체계화 -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유통을 위한 강화된 보안대책 수립 - 데이터의 개방·공유·활용에 따른 공공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운영·분석 기술 개발

자료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 방안, 2011.10.

58)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방안에서 정책환경은 과학 및 IT 패러다임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던 웹1.0에서 참여와 소통으로 집단 지성을 창출하는 웹 2.0을 지나 데이터 분석으로 융합지식을 창출하는 웹 3.0시대로 전환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12년 11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에서는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스마트 강국 실현을 비전(Vision)으로 선정하였으며, 4대 추진 전략으로서 ①범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제로 추진, ②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확산, ③전략적 기술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④수평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부처별 기반조성 과제도 선정하였는데, 4개 기반조성 과제로서 빅데이터 공유 활용 인프라 구축, 기술·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정비 등을 선정하고, 12개의 세부 과제를 구분하고 있다.⁵⁹⁾

<표 3-42>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과제 및 주관 부처 현황

과제	세부 과제	주관 부처
빅데이터 공유 활용 인프라 구축	행정·공공기관 활용 플랫폼 구축	행안부, 각 부처
	공공 데이터 개방	행안부, 각 부처
	민간대상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방통위, 지경부
기술·연구 개발	빅데이터 기술연구개발 로드맵 마련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국과위
	빅데이터 기반기술 연구개발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국과위
	빅데이터 응용서비스 지원	방통위, 지경부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기반기술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교과부, 지경부, 방통위, 국과위
	빅데이터 응용서비스 인력 양성	교과부, 지경부, 방통위, 국과위, 행안부
법·제도 정비	데이터 관리와 기본 법령 제정 추진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행안부, 방통위
	공공분야 빅데이터 활용 추진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빅데이터 역기능 방지대책 및 활용문화 확산	행안부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8개 기관 합동,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59)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제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양성, 학·연 협력의 빅데이터 전문대학원 설치·운영, 빅데이터 전문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가 자격증인 「Chartered Big data Analyst」 제도(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공인자격을 신설·부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제도) 도입,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의 실기시험 과목에 “데이터 분석” 부문의 추가 등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주요 단체

앞서, 통계산업과 관련되는 정부 부처들의 주요한 정책 동향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같은 정책 동향들과 함께, 정부 부처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어 관련 부문의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중사하고 있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최근 동향들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과정에서 참고한 국내 약 40종의 진흥법안 중에 약 15개 법안에서 진흥원 형태의 기관들을 선정하고 있으나 이들 2개 진흥원의 사례를 검토한 이유는 기상산업진흥법이 최근에 제정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진흥법은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제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산업은 통계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국민의 정보이용 활성화 및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1993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지원,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 검정,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및 표준화 연구, 데이터베이스산업 동향분석,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작업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 수행 사업 중에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지원사업은 유통시스템인 DB스토어(www.dbstore.or.kr)를 통해 부문별 우수 데이터베이스의 기업 간 및 기업과 정부 간의 전자 상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요 기업은 구입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규 사업모델 및 상품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다양한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각종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담당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격검정제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품질관리·표준화 및 모델링·개발 언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배출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사업은 범국가적인 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부설기관인 데이터품질관리인증센터가 데이터,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 부문으로 구분한 품질인증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연구사업은 데이터베이스의 유통 활성화 및 정보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산업 동향 분석사업은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산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국가의 정책수립 및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시장 규모 및 동향에 관한 조사·분석,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조사, 해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장 연구, 체감 경기 및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데이터베이스 백서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진흥법안 제정을 위해 관련 연구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에 국회에 발의된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기적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②데이터베이스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 ③데이터베이스 제작, 활용 등을 위한 각종 산업 표준화 활동 지원, ④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기준 및 검사방안, 품질에 대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 ⑤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사업 수행, 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 수요 대책 마련, ⑦데이터베이스 사업계약의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가 기준 고시, ⑧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의 기술인력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의 신고, ⑨소재 데이터 보호방안 마련, ⑩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설립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나)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기상청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산업진흥 지원, 기상정보 및 위성자료 제공, 기상관측장비 구매 및 장비관리, 기상측기 검정 대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 수행 사업 중에 산업진흥 지원사업은 정책지원 및 조사·연구, 기업지원, 홍보, 국제협력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정책지원 및 조사·연구 사업은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을 지원하고,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 및 기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및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지원 사업은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건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구분하여

세부 산업 부문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기업인협의회 운영⁶⁰⁾, 금융지원협약보증제도⁶¹⁾ 등으로 기상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 산업별 지원 사업으로는 기상정보 제공 및 품질관리, 기상기업 등록제 및 기상장비 성능 인증제도 운영,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기사 등 자격제도 운영, 기상장비 국산화 및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홍보사업으로는 각종 세미나 및 포럼 등을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상산업 홍보관 운영, 기상문화 확산을 위한 시상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협력 사업으로는 선진 기상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추진, 기상청 및 KOICA 등과 협력을 통해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수출 추진, ODA사업⁶²⁾을 통해 개발도상국가 기상 및 기업 업무 수행기반의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상정보 지원 서버를 통해 기상정보 및 위성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기상관측장비의 구매 및 장비관리 사업과 기상측기의 검정 대행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표 3-43>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 사업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기상예보업	- 기상자료 실시간 전송 - 기상자료 분류체계 마련 - 기상기업 등록제도 운영	- 기상자료 누락 확인 및 품질 관리 - 편의성 증진을 위한 가공자료 제공 - 기상예보사 자격제도 운영
기상감정업	- 기상감정기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 기상 감정기사, 기상감정사 인력풀 운영
기상컨설팅업	- 기상기업 정보제공 및 기상정보 수요 기업과의 연계 지원	
기상장비업	- 기상장비 국산화 개발 지원 - 장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 기상장비 성능 인증제도 도입 - 해외 수출 및 시장 개척 지원

60) 기상기업인협의회는 기상산업 관련 정책 홍보 및 산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상 예보 및 컨설팅 협의회,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협의회, 지상 기상장비 협의회, 특수 기상장비 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61) 금융지원협약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게 보증하는 제도를 말하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보증신청 기상기업에 대한 예비검토, 보증기관 추천, 지원실적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보증대상이 되는 기업은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써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해당된다. ①기상사업자로 등록된 기업, ②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상시 종업원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인 기업, ④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⑤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62)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제공하는 원조를 말하며,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3. 관련 법령·정책 평가 및 시사점

지금까지 통계산업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계 부처의 정책 동향들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으나, 이들에 대한 통계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의 평가 작업 및 향후의 관련 법령 제·개정과 정책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들에 대한 평가작업과 함께 통계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검토하였다.

가. 관련 법령

통계법은 2007년의 전면 개정과 후속된 일부 개정 작업들을 통해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응답 부담을 경감하며, 통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대폭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통계법은 기본적으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작성기관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및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통계법 제3조에서 법적용을 받는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수량적 정보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 통계자료의 제공은 통계작성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31조에서 통계자료의 이용은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통계자료 제공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명부자료는 승인통계 작성목적인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통계법의 이와 같은 규정들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통계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자료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되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통계법이 비록 통계작성기관을 중심으로 규율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통계와 관련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제정이 추진될 통계산업진흥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통계정보의 활용 확대 조항을 규정한다면 상호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한편,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 조항은 현행 통계법 체계에서도 지나친 규제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총칙의 제2조에서 통계는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이용범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정보공개법과 전자정부법의 개정 사항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들을 고려한다면, 비밀보장을 전제한 통계자료의 이용 목적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여 선진 국가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법제화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통계산업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하며, 수집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 등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정보처리자의 입증책임이 부과된 손해배상청구,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한 내용들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장 및 규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들은 현행 통계법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행 통계법은 정보주체를 응답 의무자로서만 간주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여하고 있는 개별 권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응답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정보주체의 개별 권리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조항 및 예외 처리 등에 대한 조항은 명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 통계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계산업진흥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과의 관계 설정 및 합리적인 조정 방안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⁶³⁾

마지막으로, 2004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정보 공개 목록의 작성·비치, 정책 정보의 정기적인 공개, 개인정보의 비공개 요건의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63)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되고 있다.

한편, 통계산업의 관점에서 정보공개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공개 개인정보의 요건을 포괄적인 의미 해석이 가능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비공개 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의 공개대상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도 공공기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관련 규정들은 의미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기관의 보수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입법 취지와는 상관없이 확대 해석되어 대부분의 경우에 자료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자료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도 통계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도 정보목록 작성·비치 의무는 최소한의 기준 설정은 필요하며, 비공개 개인정보의 대상 요건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공개 대상 전환 요건 등은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수요자가 예측 가능하게 변경될 것이 요청된다.

나. 관련 정책

통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용통계시스템인 나라통계시스템의 확대 적용과 마이크로데이터의 통합 관리 ISP사업의 추진은 중요한 국가자산인 통계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표준화 및 공동 활용으로 예산 및 인력의 절감을 가져오며, 2차적인 가공통계의 개발과 중복조사의 방지 및 응답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예상되므로 국가통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나라통계시스템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사업은 민간 통계산업 종사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표준화 방식으로 생산하여 통합형으로 서비스되는 마이크로데이터는 민간 통계산업의 기반으로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연계·가공되어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계자료 이외의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각종 행정자료들과 민간에서 생산되

고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들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가통계에 국한된 표준화 및 자료 통합 관리를 넘어 범국가적인 정보자원 통합관리 체계에서의 운영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공유자원포털에서 무상으로 제공 중인 국가 정보자원의 공개 서비스는 2012년까지의 기반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 이후에는 국가 통계정보, 국내 관광정보, 농축산물 가격정보, 생활 기상정보 등을 대상으로 신규 공유자원의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정보자원의 추가적인 공개 서비스는 향후에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모바일 서비스산업, 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공간정보산업 등의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산업의 관점에서 국가 정보자원의 공개 서비스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이자 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통계분석업 및 통계정보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통계청 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이 대상인 국가 정보자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정부투자기관과 국가 기간 산업 부문의 주요 민간 기업들의 제공 가능한 정보까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확대·발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및 주요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정책은 범정부적인 데이터 연계·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데이터의 융합을 추진하며, 관련되는 법·제도의 개선과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나아가 개인정보 보장체계까지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웹 3.0시대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의 변화상에 맞춰 국가정책을 적절하게 방향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계산업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방향의 전개는 데이터 생산·관리·서비스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통계산업이 국가 주력 산업으로 등장하고, 통계산업 종사자의 전문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계분석업 부문에서 전문 통계기업 및 고급 자격증을 보유한 대규모 통계 전문가의 출현 및 활동을 예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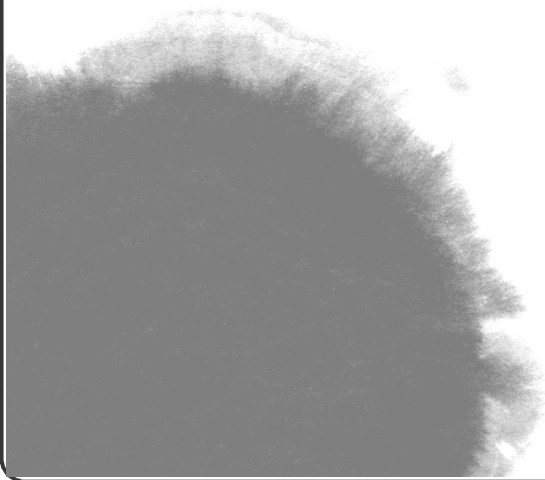
한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례에서는 이들 기관들이

상급 기관의 충분한 제도적·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해당 부문의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세부 영역들에 걸친 지원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살펴볼 때, 통계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 과정에서도 진흥기관의 설치 및 각종 지원 사업들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흥기관을 통한 사업 영역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 검정제도 운영, 품질관리 및 품질 인증제도 운영, 표준화 연구 및 생산·제공 기준 마련, 기업인협의회 및 금융지원보증제도 운영, 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기술 지원, 홍보관 등 각종 홍보사업 시행, 국제협력체계 추진, 수출 및 개발도상국 지원 등의 사례를 통계산업 관련 진흥기관 설립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향후에 추진될 통계산업진흥법에서 진흥기관의 설립 및 조직·기능에 관한 내용과 함께, 사업 내용에서 권한의 폭 넓은 위임도 요청되고 할 것이다.

04

해외 통계산업 현황



제4장 해외 통계산업 현황

제1절 해외 통계산업 일반 현황

통계산업에 대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나, 통계산업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아직은 특정 산업 부문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며, 통계와 관련된 산업을 위해 정부기관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결국, 해외 통계산업 현황은 주요 국가들의 공공 및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었으며, 현황 파악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국내 통계생산업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⁶⁴⁾

이와 같은 국가별 사례 연구에서는 각국의 통계제도 현황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후속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가별 통계제도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것은 분권형 및 집권형 등으로 구성되는 국가별 통계제도가 통계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어느 국가에서나 공공 부문의 주요 통계생산업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국가의 현황자료를 검토하기 이전에 세계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업체를 대표하고 있는 ESOMAR(유럽마케팅조사협회, European Society for Opinion and Marketing Research)의 연간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세계 민간 조사업체의 시장 규모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후속하여 주요 국가별 통계제도 및 통계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⁶⁵⁾ ESOMAR 자료는 2009년-2010년의 연간 매출액 순위와 인구 1인당 매출액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상위 15위까지의 개별 국가 현황 자료도 함께 살펴보았다.

64) 국가 통계작성기관이 민간 조사업체에게 통계생산 과정을 위탁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출액의 중복 계산 문제는 해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65) ESOMAR에서 발표한 국가별 매출액 자료 등은 개별 국가의 시장조사협회, 주요 시장조사 회사, 개별 국가의 ESOMAR 가입 회사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자료이므로, 개별 국가의 산업 부문 통계조사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1. 해외 민간 통계생산업 일반 현황

2010년의 세계 민간 통계생산업 시장 규모는 312.4억달러로 파악되어, 2009년의 289.5억달러에 비해서는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전 세계 매출액과 비교하여 국가별 매출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미국(31.7%), 영국(10.2%), 독일(9.2%), 프랑스(8.1%), 일본(6.1%)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5개 국가의 구성은 2009년과 동일한 국가들로 파악되었고,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매출액과 대비한 구성비는 85.6%로 나타나 2009년의 85.3%에 비해 0.3%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순위는 2009년에 이어 1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유율 수준은 1.1%로 파악되었다.

<표 4-1> 세계 주요 국가별 통계생산업 매출액 순위

순위	2009년			2010년		
	국가	금액 (미국 백만달러)	구성비 (%)	국가	금액 (미국 백만달러)	구성비 (%)
-	세계 전체	28,945	100.0	세계 전체	31,239	100.0
1	미국	8,557	29.6	미국	9,915	31.7
2	영국	3,248	11.2	영국	3,185	10.2
3	독일	2,897	10.0	독일	2,889	9.2
4	프랑스	2,688	9.3	프랑스	2,533	8.1
5	일본	1,769	6.1	일본	1,916	6.1
6	중국	918	3.2	중국	1,114	3.6
7	이탈리아	757	2.6	브라질	815	2.6
8	스페인	657	2.3	이탈리아	771	2.5
9	캐나다	631	2.2	스페인	736	2.4
10	브라질	587	2.0	캐나다	699	2.2
11	호주	576	2.0	호주	657	2.1
12	멕시코	370	1.3	멕시코	429	1.4
13	네덜란드	365	1.3	스웨덴	381	1.2
14	스웨덴	363	1.3	네덜란드	359	1.1
15	한국	295	1.0	한국	338	1.1

자료: ESOMAR, Industry Report 2010, 2011

한편, 민간 통계산업의 상대적인 시장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국가별 인구 1인당 통계생산업의 매출액 순위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영국 51.2달러, 스웨덴 40.9달러, 프랑스 40.2달러, 독일 35.4달러, 미국 32.0달러, 일본 15.0달러, 싱가포르 14.2달러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6.8달러 수준으로 2009년의 6.0달러에 비해서는 0.8달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2> 세계 주요 국가별 인구 1인당 통계생산업 매출액 순위

순위	2009년		2010년	
	국가	금액(미국달러)	국가	금액(미국달러)
1	영국	52.6	영국	51.2
2	프랑스	42.9	스웨덴	40.9
3	스웨덴	39.4	프랑스	40.2
4	독일	35.3	독일	35.4
5	노르웨이	29.2	미국	32.0
6	덴마크	28.3	노르웨이	30.1
7	미국	27.8	호주	29.6
8	스위스	27.6	덴마크	28.0
9	호주	26.3	스위스	25.1
10	핀란드	24.3	핀란드	22.2
11	네덜란드	22.2	네덜란드	21.6
12	아일랜드	21.3	캐나다	20.5
13	벨기에	19.1	오스트리아	20.2
14	오스트리아	18.8	아일랜드	19.3
15	캐나다	18.7	뉴질랜드	19.3
16	뉴질랜드	17.2	벨기에	18.4
17	룩셈부르크	14.4	스페인	16.0
18	스페인	14.3	일본	15.0
19	일본	13.9	룩셈부르크	14.2
20	싱가포르	13.2	싱가포르	14.2

자료: ESOMAR, Industry Report 2010, 2011

세계 민간 통계생산업의 발주 부문별 현황은 2011년 기준으로 제조업 39%, 신문·방송·출판 등의 대중매체업 17%,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 행정 9%, 통신업 6% 등의 분포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주요 국가의 발주 부문별 구성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일은 대중매체업 및 통신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 부문은 한국이 공공 행정, 일본은 광고업, 미국은 대중매체업, 영국은 통신업, 프랑스는 도·소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 부문 중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국가는 한국, 영국, 독일로 나타났다.

<표 4-3> 세계 민간 통계생산업의 발주 부문별 매출액 현황

구분	전세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제조업	39%	55%	37%	40%	43%	48%	15%
광고업	3%	3%	18%	2%	0%	2%	3%
대중매체업	17%	4%	10%	29%	10%	4%	20%
통신업	6%	5%	0%	2%	14%	4%	20%
도·소매업	5%	3%	2%	6%	4%	8%	5%
금융·증권업	5%	6%	1%	3%	8%	6%	5%
공공 행정	9%	15%	6%	9%	13%	6%	10%
연구개발업	3%	2%	10%	1%	0%	5%	2%
기타	10%	6%	11%	7%	8%	15%	15%

자료: ESOMAR, Industry Report 2012

한편, 세계 민간 통계생산업의 조사방법별 현황은 2011년 기준으로 정량조사가 76%, 정성조사가 18%, 기타 조사 6%로 파악되었다. 정량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가 22%로 가장 높고, 전화조사 13%, 방문 면접조사 11%로 나타났으며, 정성조사는 집단 면접조사가 13%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방문 면접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은 전화조사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는 정성조사 비중이 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본은 온라인 조사의 비중이 40%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4> 세계 민간 통계생산업의 조사방법별 매출액 현황

구분	전세계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정량 조사 소계	76%	77%	83%	85%	61%	85%	85%
방문 면접조사	11%	0%	17%	15%	7%	5%	13%
우편조사	3%	2%	7%	3%	2%	5%	10%
전화조사	13%	8%	12%	30%	22%	27%	1%
온라인 조사	22%	21%	28%	22%	29%	35%	40%
기타 정량 조사	27%	44%	19%	15%	1%	13%	21%
정성 조사 소계	18%	23%	10%	13%	32%	13%	15%
집단 면접조사	13%	22%	0%	8%	19%	9%	9%
심층 면접조사	2%	0%	0%	3%	11%	3%	4%
온라인 정성 조사	1%	1%	0%	2%	1%	1%	1%
기타 정성 조사	2%	0%	10%	0%	1%	0%	1%
기타 조사	6%	0%	7%	2%	7%	2%	0%

자료: ESOMAR, Industry Report 2012

2. 미국

가. 통계제도 및 특징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통계시스템에서도 분권형 제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요한 국가 통계들은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센서스국(Census Bureau)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계 부문은 국가농업통계서비스부, 국가보건통계본부 등의 14개 정부 기관에서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센서스국에서는 주로 대규모 조사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외 연방정부의 위탁에 의한 통계대행 업무와 각종 분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센서스국 이외의 정부기관은 자체 조사조직이 빈약하여 센서스국이나 민간 조사업체를 통해 관련 조사를 위탁생산하는 사례가 많다. 한편, 분권형 통계시스템에서 통계 관련 조정·정책·예산 등에 관한 법적 권한은 대통령실 직속기관인 예산관리국(OMB: Office Management and Budget)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관리국은 통계활동에 대한 예산 심의 및 기타의 방법을

이용한 총괄 조정, 통계 프로그램의 개선계획 수립, 각종 분류·기준·지침 작성,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국제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방 정부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통계 자료의 수집 및 작성을 위하여 주 정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연방법에 부여한 권한을 근거로 강제하는 경우, 개별 주 정부와의 계약에 의한 경우 등으로 사안별로 차별화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표 4-5> 미국 센서스국(Census Bureau) 이외의 연방정부 통계생산 기관

한글 명칭	영문 명칭
국가농업통계서비스부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al Service(NASS)
국가보건통계본부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NCHS)
주거 및 도시 발전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교통통계국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BTS)
범죄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BJS)
국가교육통계본부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
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에너지정보부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환경부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EPA)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IRS)
건강관리 연구 및 품질국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oard(FRB)
경제분석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나. 통계산업 현황

먼저, 연방 정부 기준으로 연도별 통계 예산액 규모 및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조사 실시 전후 연도와 그 외 연도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액은 OMB에서 총조사를 제외한 예산액 규모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⁶⁶⁾ 2012년 기준으로 연방 통계 예산은 64.8억달러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

66) OMB는 매년 “STATISTIC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을 발표하고 있다.

비해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자 수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총조사 연도를 즈음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연방 통계 인력은 19.3천명으로 나타나, 2007년에 비해 4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국의 통계 인력은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의 전체 통계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보다 11.8%p 증가한 66.7%로 나타났다.

<표 4-6> 미국 연방정부 통계 예산액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백만달러,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액	5,348	5,989	9,282	12,937	6,866	6,977
총조사 제외	5,348	5,989	5,593	6,314	6,224	6,479
종사자 수	13,112	14,286	14,927	32,209	33,423	19,294
센서스국	7,192	8,315	8,698	26,192	27,384	12,869

한편,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북미산업분류(NAICS)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분류의 하위 부문인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⁶⁷⁾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자료는 ESOMAR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볼 수 있다.

ESOMAR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민간 조사업계의 매출액 규모는 연간 약 90억~100억달러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시장 규모는 국가별 순위에서 세계 1위 수준에 해당하며, 점유율로는 약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매출액은 2009년에 비해 15.9%가 증가한 약 99.2억달러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Nielson Rating, Kantar Group, IMS Health, Ipsos, Synovate, Arbitron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통합한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은 약 192억달러, 2010년에는 약 215억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 부문 산출액의 상대적 비율은 2009년에 93.6%, 2010년에 151.2%로 파악되었으나, 2009년~2010년에 걸친 총조사 예산액을 제외하

67)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54(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분류에서 541910(Marketing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로 분류되고 있다.

면, 각각 56.4%, 7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액(GDP)과 비교한 통계생산업의 비율은 0.11%~0.15%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표 4-7>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현황

(백만달러, %)

구분	합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공공/민간 비율(%)	명목 GDP 대비 비율
2007년	15,176	5,348	9,828	54.4	0.11
2008년	15,841	5,989	9,852	60.8	0.11
2009년	19,197	9,282	8,557	93.6	0.14
총조사 제외		5,593	8,557	56.4	
2010년	21,494	12,937	9,915	151.2	0.15
총조사 제외		6,314	9,915	73.8	

한편, 미국의 민간 통계산업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통계학회인 ASA(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는 2010년부터 공인 전문통계인(Accredited professional statistician)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통계 인력의 양성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통계 관련 지식, 교육 수준, 경력,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하며, 5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시장조사나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집단 명부자료가 요청되는데,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판매하는 대형 기업들도 발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Claritas, Infogroup, ADVO 등인데, 이들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되고 처리된 정보자료들을 판매하고 있다.⁶⁸⁾

셋째, 센서스국은 10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간격을 완화하고,

68) 민간 자료제공 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 및 가중치 산정 자료를 판매한다. 이들 자료제공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는 전화번호부, 각종 공공기록, 전기·수도·전화 사용자료, 우편 주문자료 등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대표기업인 Infogroup은 약 15.5백만개의 기업체와 211백만명의 소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미국지역사회조사(ACS: American Community Survey)를 실시하고 있으며,⁶⁹⁾ 이를 통해 각종 표본조사에서 적용되는 가중치 산정자료의 정확성도 함께 제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사회조사의 실시는 민간 자료제공 업체에는 수입원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왔다.

넷째,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요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제품의 대부분이 미국 업체에서 개발하여 상품화되고 있다.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Minitab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통계 패키지는 민간 통계산업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7.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⁰⁾

다섯째, 공공 및 민간 통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통계 담당자는 수리통계와 응용통계 부분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 수리통계 담당자(mathematical statistician)는 수리통계학과 혹은 수학과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채용하며, 응용통계 담당자(survey statistician)는 수리통계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등에서 수리통계학이나 응용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⁷¹⁾

3. 영국

가. 통계제도 및 특징

영국의 국가통계제도는 국가통계기구(UK Statistics Authority),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정부통계기구(GSS: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권형 통계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69) 미국 지역사회조사의 실시 주기는 1년, 3년, 5년으로 구분되는데, 65천명 이상 시군구는 1년, 20천명 이상 시군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나머지 시군구는 5년 주기로 실시한다. 2012년의 조사항목은 나이, 성별, 인종, 가족관계, 수입 및 소득, 건강보험, 교육, 참전 경력, 장애, 근무 장소 및 방법, 거주지, 생활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70) 2010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SAS가 24.3억달러, SPSS는 2.9억달러, Minitab은 1.0억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SPSS는 2009년에 IBM에 인수되었다. 한편, 예전에 존재했던 BMDP(Bio-Medical Data Package)는 1995년에 SPSS에 인수된 바 있다.

71) OMB의 연도별 자료는 이와 같은 통계작성기관별 통계인력 구성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를 들면, 2012년 기준으로 센서스국은 12,8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 7,550명, 전일제 비정규직 5,319명, 수리·응용 통계인 2,38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UKSA는 기존의 통계위원회(Statistics Commission)를 대체하여 2008년에 독립 부처로서 설립되었는데,⁷²⁾ 주요 기능은 통계청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와 모든 공식 통계의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개선·평가 등의 업무를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 업무 결과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ONS는 국가 중앙 통계기관으로서 국민계정 및 국제수지를 비롯하여 사회, 경제 부문의 각종 중요 국가통계들에 대한 생산 및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GSS 구성 기관들에 대한 업무 조정 및 협력, 통계 정책 및 기준 등의 설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SS는 분권형 통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통계기구로서 30여개의 부처, 기관에 지정된 통계책임관(Statistical Head of Profession)들을 통합하는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GSS는 각종 부처의 통계업무에 대한 조정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책임관으로 구성된 정책·운영위원회 및 9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GSS는 약 1,400명의 통계전문가와 7,0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 통계전문가들은 개개 부서에서 고용되지만, 모든 정부 부서로의 이동이 가능하여 조직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영국의 통계제도에서 ONS의 책임자인 통계청장은 정부통계기구(GSS)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도 보유하며, UKSA 이사진 중에 상임임원의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나. 통계산업 현황

먼저, UKSA가 발표한 통계청과 UKSA의 연도별 통계 예산액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와 2012년은 정상적인 예산 규모가 대체로 172백만 파운드에서 200백만 파운드 내·외로 나타났으나, 2010년과 2011년은 300백만 파운드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액 규모의 특이한 증감 현상은 2011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본조사 실시 및 사후 연도의 관련되는 후속 작업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⁷³⁾

72) 2007년에 제정된 "The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에 의해 통계위원회(Statistics Commission)가 폐지되고 UK Statistics Authority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UKSA는 6명의 비상임 위원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8> 영국 국가통계기구 및 통계청의 경상 지출액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상지출액	172	208	207	320	346	184
증가율	-10.7	21.1	-0.5	54.5	7.9	-46.7

자료: UK Statistical Authority, Annual Report, 각호

한편,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규모는 영국시장조사협회(MRS: Market Research Society)의 매출액 자료를 적용하였는데,⁷⁴⁾ 2011년 기준으로 21.7억파운드의 매출액을 나타내어 2010년과 비교하면 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민간 통계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규모화 경향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에 속하는 기업들이 전체 민간 통계생산업 산출액의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대 기업으로 넓혀 본 경우에는 전체 민간 통계생산업 산출액의 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통합한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25.2억파운드로 파악되어, 2010년의 23.8억파운드와 비교하여 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 부문 산출액의 상대적 비율은 2011년에 15.9%, 2010년에는 15.6%로 파악되어, 민간 부문의 산출액이 공공 부문보다 7배~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과 비교한 통계생산업의 비율은 0.16%~0.17%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73) 영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3월 31일에 종료되며,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가 3월말에 실시되었으므로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되는 예산은 총조사가 수행되는 연도의 전년과 당해 연도에 걸쳐 집행되었다.

74) 영국시장조사협회(MRS: Market Research Society)에 등록된 조사 관련 기업은 2012년 기준으로 Full Service Agencies 299개, Consultants 70개, Fieldwork and Tabulation 51개, Data Preparation and Analysis 20개, Viewing Facilities 58개, Online 15개 등 전체 513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MRS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조사와 관련한 지침서들(Guidelines)을 개발하여 회원사에게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MRS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한 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기업 대 기업 조사지침서(Guideline for Business to Business Research), 미스터리 쇼핑 조사지침서(Guideline for Mystery Shopping Research), 정성조사 지침서(Guideline for Qualitative Research), 조사표 설계 지침서(Guideline for Questionnaire Design), 어린이 및 유아 조사 지침서(Guideline for Research Children and Young People), 피고용인 조사지침서(Guideline for Research with Employees) 등이 제시되고 있다.

<표 4-9> 영국의 통계생산업 산출액 규모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합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공공/민간 비율(%)	명목 GDP 대비 비율
2006년	2,185	193	1,992	9.7	0.16
2007년	2,210	172	2,038	8.4	0.16
2008년	2,372	208	2,164	9.6	0.17
2009년	2,283	207	2,076	10.0	0.16
2010년	2,380	320	2,060	15.6	0.16
2011년	2,517	346	2,171	15.9	0.17

자료: Market Research Society website

한편, 영국의 민간 통계산업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산업이 발전한 영국의 민간 통계산업은 경기동향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조사업계의 매출액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0년까지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기업이 시장조사 업무를 경영의 필수 부문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 침체기에는 관련 부문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영국의 조사업계는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영국은 세계 70여개 국가의 조사기업들이 참여하는 Market Research Society 등의 세계적인 조사기업협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간 Research 등을 발간하여 세계 각국의 조사업계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나 워크숍 등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조사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재 국가의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해외진출 기업인 TNS는 영국 업계에서 매출 순위가 1위이며, 세계 90개 국가에 자회사 혹은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 순위가 2위인 Ipsos Mori도 세계 80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외, 조사기업들의 75% 이상이 국제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업무의 약 25% 정도가 국제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⁷⁵⁾

75) TNS는 2009년에 Kantar 그룹에 합병되어 13개의 계열사 중의 하나로서 유지되고 있으며, TNS의 대륙군별 지사 및 자회사는 중동 및 아프리카 24개, 아시아 및 태평양 16개, 유럽 37개, 남미 11개, 북미 2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IQCS(Interviewer Quality Control Scheme, 조사품질관리체계)등과 같이 현장조사와 관련한 표준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에 발표한 IQCS 자료인 “시장조사 자료수집을 위한 최소 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조사원이 준수할 각종 사항들과 이들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 및 행동, 조사원 및 관리자의 채용 및 교육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76)

셋째, 영국에서 시장조사를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온라인 조사방법 및 표적집단(focus group) 조사가 주도적으로 떠오를 전망이며, 전통적인 조사방법인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방법은 주간 부채가구의 증가, 개인 사생활 중시 성향,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획득 비용 등으로 점차적인 쇠퇴가 예측되었다.77)

<표 4-10> 영국의 조사방법별 매출액 증감 전망

(단위: %)

매출액 증가 전망	매출액 감소 전망
- 패널 활용 온라인 조사(48%)	- 국내 전화조사(-23%)
- 고객 데이터베이스 활용 온라인 조사(43%)	- 정량 면접조사(-22%)
- 온라인 커뮤니티·소셜 네트워크 조사(35%)	- 국제 전화조사(-14%)
- 온라인 표적집단 조사(35%)	- 심층 면접조사(-11%)
- 표적집단 조사(28%)	- 심층 전화조사(-10%)

자료: RSM, UK Market Research State of the Industry, 2010

넷째, 영국 조사업계는 정량조사보다는 정성조사 부문에서 보다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각종 조사·분석 기법의 적용이 수월한 정량조사가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각종 패널 및 표적집단 조사 등에서 전문가 면담 및 개방형 설문들로 구성된 정성조사 방법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성조사에서의 높은 경쟁력은 영국 조사업체의 세계화 경영과정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가별로 다른 문화 전통이 나타나는 국제조사 업무에서는 단순한 선다형 설문조사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6) IQCS는 1978년에 설립된 영국의 조사산업 표준화를 위한 기구로서, 2011년 현재 39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정한 표준화 원칙의 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제공한다. Council of Management, Interviewer Quality Control Scheme: Minimum service standards for market research data collection, 2009.

77) 영국의 조사회사인 RSM사가 2010년에 조사업계 종사자 279명과 관련 고객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조사업계 동향과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4. 일본

가. 통계제도 및 특징

일본의 통계제도는 분권형 체계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앙 통계작성기관으로는 총무성 통계국, 후생노동성 통계정보부, 농림수산업성 통계부,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조사통계부 등의 9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앙 통계작성기관 중 농림수산업성 및 경제산업성은 지방 농정국 및 경제산업국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 통계작성기관으로는 도도부현 시구정촌의 통계 주관 부서, 교육위원회, 보건·복지통계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중앙 통계작성기관이 위임한 현장조사 수탁업무 및 자체 지역통계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07년에 개정된 통계법은 국가통계 생산의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부 소속으로 통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공적통계의 체계적인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조사·심의하여 내각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⁷⁸⁾ 통계위원회와 함께 국가통계의 종합적인 조정업무는 총무성 통계통괄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통계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의 기획·입안·추진 및 통계조사의 심의·승인·조정 업무, 산업분류 등의 통계기준 설정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 통계작성기관이 생산 중인 주요 통계 및 관련되는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통계 인력은 농림수산업성(698명), 총무성(554명), 경제산업성(274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 통계조직을 갖추고 있는 정부 부처는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재무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생산 통계의 담당 부처를 살펴보면, 국민계정 관련 통계는 내각부, 인구주택총조사는 총무성, 인구동태조사는 후생노동성,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수산업성, 상업 및 공업 통계조사는 경제산업성, 법인기업통계조사는 재무성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8) 통계위원회는 개정 통계법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산하의 심의기구로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통계법은 위원회가 공적통계의 체계적인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국민경제계산의 작성기준 설정, 국가 기간 통계의 지정·승인 등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제1차 공적통계의 체계적인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은 내각의 결정에 따라平成 21년(2009년)에 발표된 바 있다.

<표 4-11> 일본의 2012년 기준 중앙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 인력 현황

(단위: 명)

통계작성기관		주요 생산 통계	통계 인력		
정부 부처	담당 실·국		합계	본부	지방
전체		-	2,015	1,439	576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	국민경제계산	89	89	-
총무성	통계국	국세조사	554	554	-
법무성	사법법제부	등기통계	8	8	-
재무성	종합정책연구소	법인기업통계조사	71	22	49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학교기본조사	20	20	-
후생노동성	통계정보부	인구동태조사	247	247	-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림어업총조사	698	231	467
경제산업성	조사통계부	상업·공업통계조사	274	214	60
국토교통성	정보정책본부	건축착공통계조사	54	54	-

이상에서 중앙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생산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3개 정부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 기관들이 독자적인 조사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통계조직이 중앙 통계작성기관의 공동 조사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은 자체적인 통계를 작성하면서, 관련되는 중앙 통계작성기관이 예산 재배정과 함께 위임한 통계조사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생산 중인 주요 통계로는 지역 국민계정, 경기 지표, 고용 관련 통계 등이 있으며, 그 외 정부 부처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통계조사 중 지역에 필요한 경우에는 표본설계 과정에서 표본 규모를 조정하여 지역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나. 통계산업 현황

통계산업의 공공 부문을 나타내는 통계 관련 예산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국가 전체의 예산액은 268.7억엔, 중앙 부처 예산액은 262.5억엔, 지방자치단체 예산액은 6.2억엔으로 파악되어, 중앙 부처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의 97.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현황은 중앙 부처 예산액 중 지방자치단

체에 재배정되는 금액이 제외된 것으로써, 매년 중앙 부처 예산액 중 약 40% 정도가 지방정부의 통계인력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배정되고 있다.⁷⁹⁾ 한편, 연도별 정부 예산액 중 2010년은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어, 다른 연도에 비해 증감액 규모가 두드러지게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일본 정부의 연도별 통계 예산액 현황

(단위: 백만엔)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32,893	30,056	34,945	38,035	88,844	31,008	26,870
중앙 부처	32,012	29,230	34,200	37,330	88,208	30,440	26,248
지방자치단체	881	826	745	705	636	568	622

자료: Statistics Bureau of Japan (SBJ), Fiscal 2012 Budget for the Statistics Bureau and the Director-General for Policy Planning (Statistical Standards) Approved, News Bulletin April 26, 2012

한편,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규모는 일본시장조사협회의 매출액 자료에서 파악이 가능한데, 2011년에 1,731억엔을 나타내어 2010년과 비교하면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⁸⁰⁾ 또한, 이들 민간 통계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대형화 추세도 높아지고 있는데, 전체 민간 통계생산업 산출액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의 61.5%에서 2011년에는 72.2%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통합한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규모는 2011년에 2,041억엔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 부문 산출액의 상대적 비율은 17.2%~22.7% 수준으로 파악되어, 민간 부문의 산출액이 공공 부문보다 평균적으로 6배~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과 비교한 통계생산업의 비율은 0.04%~0.05% 수준으로 파악되었다.⁸¹⁾

79) 2012년에 발표한 일본 중앙 부처 통계 관련 예산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액은 약 240억엔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 통계인력에 대한 지원금액은 약 104억엔으로 나타났다.

80) 일본시장조사협회는 약 140여개 회원사로 구성되며, 매년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시장조사산업의 매출액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과정은 조사표에 회답한 회원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회원사 매출액을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전국 매출액을 추정한다. 협회 회원사가 전국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81) 2007년 이후 연도별 “공공/민간 비율” 및 “명목 GDP 대비 비율”에서 2010년은 공공 부문의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영향으로 나머지 연도와는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3> 일본의 통계생산업 산출액 규모

(단위: 억엔, %)

구분	합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공공/민간 비율	명목 GDP 대비 비율
2007년	2,051	301	1,750	17.2	0.04
2008년	2,115	349	1,766	19.8	0.04
2009년	2,052	380	1,672	22.7	0.04
2010년	2,587	888	1,699	52.3	0.05
2011년	2,041	310	1,731	17.9	0.04

자료 : 統計省, 国の統計事業予算(平成24年度統計事業に係る歳出予算の概要), <http://www.stat.go.jp/index/seido/3.htm>
 日本マーケティング・リサーチ協會, 経営業務実態調査, 각호, <http://www.jmra-net.or.jp/aboutus/index.html>

한편, 일본의 민간 통계산업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민간 통계산업은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조사와 관련한 해외 기업과의 수주 및 발주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경상 금액 기준으로 해외 수주액은 약 36억엔에 불과하여 2006년 66.8억엔의 54.2%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해외 발주액은 2011년에 약 21억엔으로 나타나 2007년의 73.7억엔에 비해 2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수·발주액이 시장조사산업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 해외 수주액 2.6%, 해외 발주액 1.5%로 각각 나타났다.⁸²⁾

<표 4-14> 일본의 민간 통계생산업 해외 수주 및 발주 현황

(단위: 개, 백만엔,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해외 수주	기업 수	32	34	31	32	39	43
	수주액	6,676	5,089	3,997	3,316	4,447	3,621
	구성비	4.6	3.5	2.9	2.5	3.3	2.6
해외 발주	기업 수	20	27	19	22	26	25
	발주액	5,298	7,368	1,764	1,317	1,598	2,097
	구성비	3.6	5.1	1.3	1.0	1.2	1.5

자료 : 日本マーケティング・リサーチ協會, 経営業務実態調査, 각호, <http://www.jmra-net.or.jp/aboutus/index.html>

82) 해외 수·발주액과 비교한 시장조사산업 전체 규모는 일본시장조사협회에서 연간으로 발표한 경영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자료이며, 추정자료가 아닌 조사표에 회답한 회원사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하였다.

둘째, 민간 통계생산업의 시장조사 조사방법은 계속조사 및 일반조사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일반조사 중 온라인 조사 및 관찰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방문조사 및 우편조사 비중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조사가 전체 조사방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부터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5> 일본 민간 통계생산업의 조사방법별 매출액 현황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속(패널) 조사	31.0	29.0	31.0	35.6	37.2	34.6	34.2
일반 조사	63.3	65.8	63.9	56.8	55.4	59.8	58.8
온라인 조사	17.4	19.1	20.5	19.9	19.9	23.9	23.7
방문 조사	12.1	11.8	9.2	7.6	6.7	8.9	7.7
우편 조사	8.4	9.1	8.5	5.7	5.9	6.5	5.7
관찰 조사	0.8	1.2	0.9	0.5	2.8	2.9	2.5
기타	5.7	5.2	5.1	7.6	7.4	5.6	7.0

자료: 日本マーケティング・リサーチ協會, 経營業務実態調査, 각호, <http://www.jmra-net.or.jp/aboutus/index.html>

셋째, 민간 통계산업의 2011년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에 대한 발주처 현황으로는 제조업 38%, 광고회사 18%, 신문·방송·출판사 10%, 공공기관 6%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구성비는 2006년 이후 4%~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⁸³⁾

83) 日本マーケティング・リサーチ協會, 経營業務実態調査, 각호, <http://www.jmra-net.or.jp/aboutus/index.html>

5. 독일

가. 통계제도 및 특징

독일의 통계제도는 통계법에 따라 집권형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통계기관인 연방통계청(FSO: Federal Statistical Office)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집권형 통계작성 체계에 따라, 연방통계청은 국민계정, 환경, 무역, 교통·통신, 관광, 물가, 임금 등의 약 350종에 이르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⁸⁴⁾ 각 정부 부처에서 신규 통계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방통계청에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통계 활동은 연방 통계법 및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데, 통계 작성을 위한 기획 및 조정 업무는 연방통계청이 담당하고, 실제 조사 업무는 주정부 소속의 지방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방통계청은 독일 헌법 규정에 따라, 연방통계청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 인사 및 예산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연방통계청은 비스바덴(Wiesbaden)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연말 기준으로 약 2,65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Bonn)과 베를린(Berlin)에는 의회 및 각 부처의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연방통계청장은 연방정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선거관리위원장 직도 겸임한다. 각 주정부 소속에는 16개의 지방통계청 및 100개의 지방사무소가 있으며, 이들 지방통계청은 약 5천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주정부의 직원 수는 주의 면적 및 인구수에 따라 150명에서 1,200명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독립기관을 통한 집권형 통계작성 체계는 통계생산의 중복을 방지하고, 중립성 및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개별 통계에 관한 전문성 및 이해 당사자간의 협력 등에는 취약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통계위원회와 협력회의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⁸⁵⁾

84) 연방통계청은 국민계정, 환경, 무역, 교통·통신, 관광, 물가, 임금, 재정, 조세, 교육, 문화, 사법, 보건, 주택조사, 선거, 부동산 시장 등 350종에 이르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다만, 독일 연방은행과 노동부는 금융·국제수지 및 노동시장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들 통계들은 행정통계로서 작성되고 있으며, 시의성 있는 통계생산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85) 통계위원회에는 각 부처, 회계원, 중앙은행, 지방통계사무소장, 자료보호위원회, 주요 협회, 상공인 대표, 고용자협회, 무역협회, 농민 대표, 경제과학 연구소, 고등교육연구소 등이 참석하며 연 1회 개최된다. 한편 통계사무소장회의는 연방통계청 및 지방통계사무소 대표로 구성되며 연 2회(봄, 가을) 개최된다.

나. 통계산업 현황

독일의 공공 부문 통계산업의 산출물 수준을 나타내는 FSO의 연도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의 예산액은 2006년에 비해 18.1% 증가한 것에 불과하며, 농업총 조사와 인구총조사 준비 및 본조사가 실시된 2010년을 전후한 연도에만 소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총조사가 실시되는 연도에도 다른 국가와는 달리 예산액의 증감이 크지 않는 것은 총조사가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과거 총조사에 비해 1/3 정도의 비용만이 소요되는 영향으로 파악된다.

2011년의 FSO 예산액은 158.2백만유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 비해서는 11.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산액의 구성 내역은 75%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18%가 경상 경비로 지출되며, 7%는 각종 시설투자에 사용되고 있다.

<표 4-16> 독일 연방통계청 연도별 예산액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상지출액	133.9	145.1	160.1	174.7	177.7	158.2
증가율	-9.3	8.4	10.3	9.1	1.7	-11.0

자료: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Annual Report, 각호

한편,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규모는 독일 조사협회인 ADM(Arbeitskreis Deutscher Markt und Sozialforschungsinstitute e.V.)의 자료를 사용하였다.⁸⁶⁾

독일 시장조사산업의 매출액은 2011년 기준으로 19.1억유로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영향으로 감소한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꾸준한 매출 증가세의 영향으로 2011년에는 세계 시장조사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 순위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올라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⁸⁷⁾

86) 독일 시장조사협회인 ADM은 약 45개의 회원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들 회원사는 전체 독일 시장조사산업 매출액의 약 80%를 대표하고 있다. ADM의 주요 기능으로는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 회원사 지원 및 권익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자체 규약(조사원칙, 행동강령, 과학적인 품질 기준 등)의 제정·발전 및 이행 관리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87) ESOMAR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는 영국이 2위 자리를 유지하였으나, 영국 경제의 부진과 정부 부문의 발주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는 독일이 2위 자리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통합한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규모는 2011년에 20.7억유로로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 부문 산출액의 상대적 비율은 8.6%~10.3% 수준으로 파악되어, 민간 부문의 산출액이 공공 부문보다 9배~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과 비교한 통계생산업의 비율은 0.08%~ 0.09%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표 4-17> 독일의 공공 및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 현황

(백만유로, %)

구분	합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공공/민간 비율	명목 GDP 대비 비율
2007년	1,830	145.1	1,685	8.6	0.08
2008년	1,939	160.1	1,779	9.0	0.08
2009년	1,877	174.7	1,702	10.3	0.08
2010년	1,931	177.7	1,753	10.1	0.08
2011년	2,067	158.2	1,909	8.3	0.09

한편, 독일의 민간 통계산업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민간 부문의 통계생산업 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대규모 총조사의 규모 축소 등으로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의 성장률이 낮아진 영향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 통계생산업이 국가사업 수행에 관계없이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독일은 세계 시장조사산업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하는 GFK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 GFK 그룹은 2012년 현재 약 12,000명의 직원이 100개 국가에 걸쳐 진출하여 해외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⁸⁸⁾

88) Honomichl Globe Top 25, Published in the 3 August 2011 issue of Marketing News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세계 5대 시장조사 기업의 수입액 및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입액(US 백만달러)	2009년 대비 성장률
NIelsen COMPANY(미국)	4,958	6.5
KANTAR GROUP(영국)	3,184	3.9
IMS Health Inc.(미국)	2,212	0.3
GFK GROUP(독일)	1,716	7.3
Ipsos(프랑스)	1,513	8.3

셋째, 민간 통계생산업의 발주 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소비재 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인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약 및 의학 부문이 8%, 미디어 출판 및 정보·통신 부문이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비중은 2005년 이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 부문은 매년 2~4%의 범위에서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4-18> 독일 민간 통계생산업의 발주 부문별 매출액 현황⁸⁹⁾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소비재 산업	57%	58%	58%	59%	55%	68%
자본재 산업	2%	1%	2%	2%	2%	1%
제약·의학	12%	14%	14%	14%	14%	8%
정보·통신	4%	6%	7%	7%	8%	6%
운송·물류	1%	2%	1%	1%	1%	1%
금융·보험·도소매	4%	3%	4%	4%	3%	2%
공공 부문	2%	1%	2%	2%	2%	4%
미디어 출판	10%	9%	8%	7%	7%	6%
기타 연구	6%	4%	2%	3%	7%	3%
광고·경영컨설팅	2%	2%	2%	2%	1%	2%

자료: ADM, Jahresbericht, 각호

넷째, 민간 통계생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조사방법별 매출액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전화조사 41%, 방문 면접조사 34%, 우편조사 22%, 온라인조사 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온라인조사 36%, 전화조사 34%, 방문 면접조사 24%, 우편조사 6% 순으로 변경되어, 시장조사산업에서 조사방법상의 대폭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89) ADM, Jahresbericht(연보) 중 2009년은 발간되지 않았다.

6. 해외 통계산업 일반 현황의 시사점

국내 통계산업 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 사례에서도 통계산업을 직접적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산업 영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세계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유럽마케팅협회인 ESOMAR의 자료를 중심으로 세계 통계생산업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국가들의 통계생산업 현황은 해당 국가의 국내 자료를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ESOMAR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생산업은 세계적인 성장 산업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개별 국가 자료에서 해당 국내의 총조사 및 주요 선거 실시 등의 영향으로 연도별 자료는 부분적인 등락이 나타나고 있으나, 세계 전체 통계생산업은 2009년과 비교하여 7.9%에 달하는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 통계생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통계생산업 규모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15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액 순위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 통계생산업은 국내 전체 산업동향 및 규모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민간 통계산업의 시장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 1인당 통계생산업의 매출액 순위는 세계 20위 국가인 싱가포르의 47.9%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 통계산업의 활성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1년 기준 민간 통계생산업의 발주 부문별 매출액 현황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55%, 공공 행정이 15%로 나타나, 세계 평균 보다 이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들의 발주 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해당 국가들의 국내 산업 특성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으며, 민간 통계생산업의 공공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계 민간 통계생산업의 조사방법별 매출액 현황은 정량조사가 76%, 정성조사가 18%로 나타났으며, 정량조사 중 온라인 조사방법 비율이 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조사방법인 방문 면접조사는 11%, 우편조사는 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추세는 주요 국가들 현황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온라인 조사는 일본이 40%를 넘어섰으며, 캐나다, 영국, 호주

는 30%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방문 면접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국내 통계생산업 현황을 민간 부문 대비 공공 부문 비율과 전체 산업의 명목 GDP 대비 통계생산업 산출액 비율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 비율이 2008년에 46.8%, 2010년에 80.0%에 달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공공 부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계생산업의 산출액 비율은 2008년에 0.07%, 2010년에 0.09%로 나타났으나, 민간 부문은 2008년에 0.04%, 2010년에 0.05%에 그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의 영향력이 높으며,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의 성장 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한국 및 주요 국가들의 통계생산업 구조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공공/민간	46.8	80.0	60.8	151.2	9.6	15.6	19.8	52.3	9.0	10.1
GDP 비율	0.07	0.09	0.11	0.15	0.17	0.16	0.04	0.05	0.08	0.08
공공	0.03	0.04	0.04	0.08	0.01	0.02	0.01	0.02	0.01	0.01
민간	0.04	0.05	0.07	0.07	0.16	0.14	0.03	0.03	0.07	0.07

주 1: GDP 비율은 전체 산업의 명목 GDP와 비교한 통계산업의 산출액 비율을 말한다.

2: 공공 부문은 한국과 일본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반면, 미국, 영국, 독일은 제외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주요 국가들의 통계생산업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간 통계산업 성장과 무관하게 공공 부문 통계산업의 확장도 함께 요청된다. 즉, 통계산업 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민간 통계생산업 및 지원서비스업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도 최근까지 공공 부문 통계산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통계작성 조직 및 인력의 전체적인 확대 성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인데, 그 중 시급한 부분은 통계청 이외 통계작성기관들의

전문성 강화 및 자체 통계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가 될 것이다. 같은 분권형 통계작성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 현황과의 비교,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승인통계 856종 중 통계청 이외 통계작성기관에서 802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 통계작성기관들에 대한 통계생산 자원이 지나치게 소홀히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0> 한국, 미국, 일본의 중앙 통계기관 인력 현황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통계청	기타 기관	센서스국	기타 기관	통계국	기타 기관
중사 인력 (구성비)	3,142 (86.6)	487 (13.4)	12,869 (66.7)	6,425 (33.3)	554 (27.5)	885 (72.5)

주 : 한국은 2010년 기준, 미국 및 일본은 2012년 기준으로 작성

둘째, 국제 경영이 가능한 대형 조사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위한 지원이 요청된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⁹⁰⁾ 민간 통계생산업의 세계적인 규모화 및 국제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국제 경영이 가능한 대형 조사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위한 지원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통계산업은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시장이며, 주요 국가들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통계산업은 국제 경영이 용이하면서,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생산성도 더 높일 수 있는 산업이므로 국제 경영을 추구하는 대형 국내 조사기업의 출현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내 통계산업 시장에서 외국계 조사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35%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자원 및 산업의 국산화를

90) ESOMAR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세계 10대 대형 조사기업은 미국 6개, 영국 1개, 프랑스 1개, 독일 1개, 일본 1개로 구성되고 있다.

순위	국가	회사 명칭	순위	국가	회사 명칭
1위	미국	NIELSEN COMPANY	6위	미국	IMS HEALTH INC.
2위	영국	KANTAR GROUP	7위	미국	WESTSTAT INC.
3위	프랑스	IPSOS S.A.	8위	일본	INTAGE INC.
4위	독일	GFK	9위	미국	ARBITRON INC.
5위	미국	SYMPHONYIRI GROUP	10위	미국	THE NPD GROUP INC.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통계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미국 통계학회인 ASA, 영국 시장조사협회인 MRS, 산업 표준화 기구인 IQCS, 일본 시장조사협회인 JMRA, 독일 조사협회인 ADM 등은 통계산업의 품질 수준 확보, 관련 기업의 권익 보호, 행동강령 제정, 불공정거래 규제, 산업 현황 보고서 발간, 국제회의 유치 등으로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는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한국정치조사협회(KOPRA: Korea Political Research Association), 한국조사연구학회(KASR: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가 설립되어 있으나, 조직 규모가 영세한 상황이며, 주요 수행 활동들도 정체 상태로 머물고 있어, 주요 국가들 사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91),92),93)}

넷째,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업의 국산화 작업에도 관심이 요청된다.

통계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통계 패키지들인 SAS, SPSS, Minitab 등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에 license(사용 허가권)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30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들 통계 패키지들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 연간 사용 허가권에 대한 대가로써 약 800억원이 지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섯째, 통계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취업이 연결되는 인력 정책이 요청된다.

미국의 사례에서 통계 전문 인력은 수리통계 및 응용통계 부문으로 구분하여 산업 필수 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센서스국 등의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 등에서 이들에 대한 용이한 취업을 보장하고 있어, 전문 인력들의 수요 및 공급 규모가 지속적인

91) 한국조사협회는 1992년에 창립되어, 2012년까지 41개 관련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정기회를 통한 업계 동향자료 수집 및 정보교환, 공동 서버(Server) 및 DB 개발·운영,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조사기법 전파, 조사인 재교육, ESOMAR 및 JMRA 등과의 교류, 윤리강령 제정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http://www.ikora.or.kr>.

92) 한국정치조사협회는 2011년에 창립되어, 2012년까지 12개 관련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각종 여론조사와 관련된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조사방법 개선, 관련 법규 및 제도적 환경 개선을 통한 회원사 권익 보호, 산학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http://www.kopra.or.kr>.

93) 한국조사연구학회는 1999년에 회원 204명으로 창립되었으며, 조사윤리 강령 및 연구윤리 규정 제정, 학술지 간행, 조사연구 이론 개발 및 보급, 외국 학회와의 교류, 한국 갬럽상(학술 논문 및 박사학위 논문) 시상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http://www.kasr.org>.

로 성장하는 인력시장을 형성하고 있다.⁹⁴⁾

이에 비해 국내 사정은 통계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은 형편이며, 양성된 인력들에 대한 취업보장 수단도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성장 산업으로 대두하고 있는 통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학·연이 연계되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까지 연결되는 구조의 인력양성 정책의 뒷받침이 요청된다.

여섯째, 미국의 지역사회조사와 같은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 및 제공이 필요하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간격을 완화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사회조사(ACS)는 부가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실시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가중치 산정자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총조사의 시의성 논란과 모집단의 노후화 및 그로 인한 가중치 산정문제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간 통계생산업 및 통계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적용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총조사의 조사 주기가 미국보다는 짧은 5년 주기로 실시되고는 있으나, 인구 이동이 잦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고 지역통계를 감안한다면, ACS 형태의 보완적인 조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민간 통계생산업의 모집단 명부자료 확보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미국 사례에서 Claritas, Infogroup 등의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에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모집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 표본조사 사업체를 대상으로 명부자료를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현황에서 공공 부문의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을 통해 명부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국가 승인통계가 아닌 민간 부문의 각종 표본조사는 KT(주) 등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무작위 전화조사(RDD: Random Digit Dialing)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94) 미국 중앙 통계기관의 통계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정규 인력 이외에 통계 전문인력(Statisticians)들이 센서스국 및 기타 중앙 통계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구분	2010년(명)	2011년(명)	2012년(명)
합계	32,209	33,423	19,294
Statisticians	3,494	3,497	3,612
센서스국	26,192	27,384	12,869
Statisticians	2,299	2,288	2,382
기타 중앙통계기관	6,017	6,039	6,425
Statisticians	1,195	1,209	1,230

자료 : Statistic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2012.

되고 있다. 최근의 1인 단독가구 증가, 휴대전화 이용자의 급증, 개인정보 보호의식 확산 등에 따르는 전화번호부 DB의 급격한 대표성의 하락⁹⁵⁾,⁹⁶⁾ 등을 고려하여 민간 통계생산업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모집단 명부자료 확보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덟째, 민간 부문 통계생산업의 품질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영국의 품질 표준화 기구인 IQCS, 독일의 시장조사협회인 ADM 등은 민간 통계생산업의 품질 수준 제고를 위해 각종 관련 지침서를 제정하여 소속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공공 부문에서 생산되는 통계들은 적절한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에 정기 통계품질진단체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자체 품질진단체도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민간 통계생산업 부문은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을 통한 조사윤리강령의 제정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아직까지 품질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부정확하고 신뢰도가 낮은 민간 생산 통계가 별다른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루바삐 민간 통계생산업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덟째, 온라인 조사 및 정성조사 수요에 대한 대처가 요청된다.

영국 조사업계 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래 통계수요는 온라인 조사와 정성조사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에서도 패널, 고객 데이터베이스,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 가입자 등과 같이 특정 부문의 관심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와 표적집단 조사·심층 면접 조사 등의 정성조사가 유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성조사는 전통적으로 주류를 이뤄왔던 정량조사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만큼, 조사 기획·진행·분석 등을 담당하게 될 정성조사 진행자의 교육, 양성 등과 함께, 관련 조사기법들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향후에는 보다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95) 한국조사협회에 따르면, 2010년까지 KT 전화번호 등재율은 전체 약 1,100만 가입 가구 중 약 55.2% 수준이며, 전화 미가입 가구까지 포함하면 실제적인 대표성은 42%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96) 한국조사협회는 2009년 10월 이전에는 KTIS(주)(케이티스, 舊한국인포서비스)의 전화번호부 DB를 구입하여 모집단 자료로 사용하였으나, 2009년 11월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향으로 RDD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갱신되지 않은 과거 전화번호부 DB 자료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제2절 해외 통계산업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앞서, 국내 통계산업과 관련되는 법령은 국가 통계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통계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인 및 공공 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해외 통계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통계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제1절의 주요 국가별 통계산업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주요 통계제도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OECD, EU 및 주요 국가들의 개인 및 공공 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정책 현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덧붙여 통계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 사례들에 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해외 통계산업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 및 정책 현황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는 OECD 및 EU의 관련 지침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주요 국가들의 적용 사례는 특징적인 내용만 간략히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1980년에 OECD의 8개 원칙이 처음으로 권고되었으며, 이에 후속하여 EU가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 정보의 이용에 관한 연구 및 법령·지침 등의 제정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그 동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규정들이 EU 권역에서는 지역 국제법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EU와의 교역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역외 국가들도 이들 지침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역외 국가들의 국내법 개정작업에서도 EU지침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 개인정보 보호지침

가. OECD 권고안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간에 통용되는 지침을 제정하고자 했던 시도는 1980년에 OECD 이사회의 권고안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지침서로 명명된 OECD 권고안⁹⁷⁾ 비록 구

97) 1980년에 발표된 OECD 권고안은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는 있었으나, 권고안에서 밝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8개 원칙 등은 이후에 제정된 EU 지침 및 개별 국가들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⁹⁸⁾

OECD 이사회에서 밝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8개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수집 제한의 원칙)은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수집되어야 한다.

둘째, Data Quality Principle(자료 품질의 원칙)은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과 부합하여야 하며,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완전하고 최신의 상태로 갱신되어야 한다.

셋째,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목적 특정의 원칙)은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 목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용 과정에서는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넷째, Use Limitation Principle(사용 제한의 원칙)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될 수 없다.

다섯째,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안전 보호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망실, 불법적인 접근·사용·수정·공개 위험 등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Openness Principle(공개성의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발, 운영, 정책 수립은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의 소재 및 특징, 주요 이용 목적 등은 정보처리자의 신상과 함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개인 참가의 원칙)은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적절한 시간·범위·방법·형식으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 이의 제기 및 정정·삭제·수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여덟째, Accountability Principle(책임의 원칙)은 정보처리자는 7개 원칙들이 적절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of Personal Data”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98) 1980년 OECD 8대 원칙은 곧잘 7대 원칙으로도 불리우는데, 8대 원칙 중 마지막인 정보처리자의 책임의 원칙을 제외한 경우를 일컫는다.

나. EU 지침

EU는 OECD 지침서를 기초로 1981년에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⁹⁹⁾ 체결하였으며, 회원국들로 하여금 관련 국내법의 제정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개별 회원국들이 제정한 이와 같은 국내법 내용들은 상호간에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역내 국가간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방해하고 관련되는 법적인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EU는 1995년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지침,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를 발표하여 회원국들이 3년 안에 국내법을 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¹⁰⁰⁾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미흡한 나라에 대해서는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장거리 통신 부문에 대한 지침으로서 “개인정보 처리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지침, Directive 97/66/EC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를 추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일반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1995년 EU 지침을 중심으로 내용적인 특징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법의 모든 형태를 규율한다. 즉, 1981년 협약이 자동화 처리에만 주목한데 반해, 1995년 지침은 자동화 처리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둘째, 개인정보는 자연인(정보주체)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말하며, 자료간의 연계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셋째, 정보처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기록, 구성, 저장, 변환, 응용, 복구, 참조, 이용, 조합, 삭제, 파괴 등의 활동으로 규정한다.

넷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수단 및 목적을 결정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 공공기관, 조합, 기타 단체 등이 모두 해당된다.

99)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U Council, 1981.

100)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Regulation 형식과 비교하여, 1995년 Directive의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간의 상호주의를 적용한 제재방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령에 준하는 성격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보보호 지침은 EU 역내에서 설립된 정보처리자, EU 역내에 있는 장치 및 자료를 이용하는 정보처리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며, EU 역외에서 인터넷 웹 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처리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는 투명성, 적법성, 균형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처리될 수 있다.¹⁰¹⁾ 투명성은 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정보처리자의 신원, 정보처리 목적, 정보 수령인, 정보제공의 의무성 및 임의성, 제공거부 경우의 가능한 결과, 정보 열람권 및 정정요구권의 존재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적법성은 개인정보 수집이 특정되고, 명백하며, 정당한 목적을 위해 수집되고, 당해 목적과 모순되는 방법에 의하여 재처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균형성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재처리 활동이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고, 관련되며,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보유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되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의 보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말한다.¹⁰²⁾

일곱째, 회원국은 지침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의 적용을 위해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행정조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기구는 정보 열람 및 자료 수집과 관련된 수사권,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경우의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 사법기관에 해당 사건을 소추할 권한 등을 보유한다. 정보주체가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감독기구 혹은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여덟째,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은 해당 국가가 적절한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1995년 EU지침은 제정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및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정보 환경변화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작업은

101) 투명성의 조건은 다시 세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즉,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③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⑤공익이나 정보처리자 및 제3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요청되는 경우, ⑥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처리자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2) 그 외 균형성을 갖추기 위해, 수집 정보는 필요 목적 이상으로 개인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형식으로 보유되고, 역사적·통계적·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장기 보관될 개인정보는 보다 강화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민족, 인종, 정치성향, 종교,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건강, 성생활 등)는 보다 추가적인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지침의 비구속적인 성격을 수정하여 구속력을 갖춘 Regulation 형태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Regulation 초안이 2012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발표되었으며, 2014년에 정식 채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장거리 통신 부문에 적용되던 1997년 EU지침도 정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02년에 “전자통신 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58/EC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으로 대체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2년 EU지침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에게도 적용되며, 위치정보·전자메일·부가가치서비스 등의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다루고 있으며, 전자서비스 제공자의 안전 의무 등에 관한 내용들을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⁰³⁾

다. 주요 국가들의 동향

개인정보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각국이 OECD 권고안 및 EU 지침을 수용하는 방법 및 수준은 개별 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 상황에서 맞이하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과시즘 및 공산주의 국가의 대두를 경험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정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통제없이 처리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OECD 및 EU의 개인정보 관련 지침을 국내법 체계에서 폭 넓게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자본주의 정신 및 정부의 무간섭주의 원칙을 우선하고 있는 미국 등의 일부 국가들은 일반법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개별 입법을 통한 보호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례들도 확인된다.

103) 2002년의 전자통신 부문 개인정보 처리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2009년의 Directive 2009/136/EC는 Directive 2002/58/EC와 “전자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권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22/EC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s communications network and services”의 부분 개정 사항에 관한 합동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지침 중 2002년 지침에 대한 개정 내용은 “EU Cookie Directive”라고도 불리우며, 인터넷 관련 공급자가 인터넷 사용자의 Cookie(사용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방문기록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저장, 활용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공급자가 과거에는 사용자의 잠재적인 동의(Implied Consent)를 나타내던 Opt-Out(사후의 명시적인 거절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명시적인 동의(Explicit Consent)를 나타내는 Opt-in(사전 동의)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특징적인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은 공공·금융·통신·교육·의료·비디오 감시·근로자·이동·운전자 부문 등으로 다양한 개별 입법을 갖추고 있는 반면, 일반법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갖추지 않고 있다. 한편, 1995년 EU 지침이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2000년에 미국 상무성이 EU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세이퍼 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이란 특수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세이퍼 하버 원칙은 미국의 단체, 기업 등이 EU 국가들과 교역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7개의 원칙을 말하며, 고지(Notice), 선택(Choice), 자료 이전(Onward Transfer), 안전(Security), 정보 무결성(Data Integration), 접근(Access), 이행(Enforcement)의 원칙으로 구성되고 있다.¹⁰⁴⁾ 이와 같은 세이퍼 하버 원칙에의 참여 여부는 기업 및 단체 등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나,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는 원칙 준수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여야 하고, 매년 상무성에 자체 보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호주는 OECD 권고안에 맞춰 1988년에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을 제정한 바 있으며, 11개의 IPPs(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2000년에 민간 부문까지 폭 넓게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10개의 NPPs(National Privacy Principles) 규정을 통해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2012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재개정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되었는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IPPs와 NPPs를¹⁰⁵⁾ 통합하여 13개의 APPs(Australian

104) 세이퍼 하버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고지(Notice)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유형, 문제 제기 또는 권리 행사 방법 등을 고지
- ②선택(Choice)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및 수집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는 옵트 아웃(Opt out)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하며,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옵트 인(Opt in) 방식의 선택권을 부여
- ③자료이전(Onward Transfer) : 위탁처리 등과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선택권을 부여
- ④안전(Security) : 개인정보의 손실, 오용, 권한없는 접근·변경·파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
- ⑤정보 무결성(Data Integration) :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확보
- ⑥접근(Access) : 정보주체의 접근권 및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삭제 요구권을 부여
- ⑦이행(Enforcement) : 원칙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및 분쟁 해결 절차, 제재수단 등을 확보

105) IPPs는 ①Manner and purpose of collection, ②Collecting information directly from individuals,

Privacy Principles)를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기구(Privacy Commissioner)의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이 대폭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끝으로, 일본은 OECD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1988년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와 관련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고, 1989년에 “민간 부문의 전자계산기 처리와 관련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이들 법률들이 행정기관에만 적용되거나, 벌칙 규정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민간 부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개인정보 보호제도로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이런 사정들과 1995년 EU지침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2003년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부투자기관 부문의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들 제·개정 법률들 중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보호되는 개인정보 범위에는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컴퓨터 저장장치와 함께 목차 및 색인 등으로 정리된 종이 서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의 범위에는 취급 중인 개인 정보가 5천명을 초과하는 영리·비영리 법인과 개인 기업자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의 위반행위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 부서의 인정을 받아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처리 및 정보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정 개인정보 보호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의 의무, 제3자 제공의 제한, 정보주체의 공개·정정·이용 정지·삭제 청구권 등은 1995년 EU지침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년간의 유예 기간 이후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③Collecting information generally, ④Storage and security, ⑤~⑦Access and amendment, ⑧~⑩ Information use, ⑪disclosure 원칙으로 구성되며, NPPs는 ①Collection, ②Use and disclosure, ③~④ Information quality and security, ⑤Openness, ⑥Access and correction, ⑦Identifiers, ⑧Anonymity, ⑨Transborder data flows, ⑩Sensitive information 원칙으로 구성된다.

2. 공공기관 정보공개 지침

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 참여를 제고하며, 정부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정당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부패 가능성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와 관련되는 법령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¹⁰⁶⁾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 정보공개법(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EU 및 OECD 등의 국제기구는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보공개 관련 법령들에 대한 공통지침을 제정하여 공공정보(PSI: Public Sector Information)¹⁰⁷⁾의 국제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EU 집행위원회는 1989년에 “정보시장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간의 상승효과 제고를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synerg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information market”을 최초로 제정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추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OECD는 2008년에 “공공정보의 접근 및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권고안,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enhanced access and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발표하였다.

106) 각국 정보공개법의 근대적인 시초는 1766년에 제정된 스웨덴의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 Freedom of the Press Act”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적인 형태의 정보공개법은 1966년의 미국에서 제정된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후 세계 약 90여개 국가에서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en.wikipedia.org>.

107) 공공정보(PS: Public Sector Information)와 재활용(Reuse)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산하 기구인 LAPSI(Legal Aspects of Public Sector Information)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PSI(acronym for Public Sector Information) can be defined as the wide range of information that public sector bodies collect, produce, reproduce and disseminate in many areas of activity while accomplishing their institutional tasks. PSI may include (among others) social, economic, geographical, cadastral, weather, tourist, and business information. Particularly, PSI acquires a specific legal meaning within the European Union, since it has been provided with a minimum set of rules contained in the Directive 2003/98/EC(often referred to as the PSI Directive).

②According to the PSI Directive definition, re-use is “the use by persons or legal entities of documents held by public sector bodies, for commercial or non-commercial purposes other than the initial purpose within the public task for which the documents were produced. Exchange of documents between public sector bodies purely in pursuit of their public tasks does not constitute re-use”(article 2.4).

아래에서는, 국제기구인 EU 및 OECD에서 발표한 관련되는 지침 및 최근 동향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정보자유법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가. EU 지침

먼저, 1989년에 발표된 “정보시장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간의 상승효과 제고를 위한 지침”을 살펴보면, 지침서는 공공 부문이 기초 정보 생산, 전자 정보 서비스 공급, 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함께 법적 책임과 관련한 규정도 추가하고 있다. 세부 부문별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정보 생산 부문의 지침은 ①수집된 공공정보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적법한 이익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민간 및 정보산업에서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공공정보의 제한은 국가 안보·외교 관계·재판·개인의 사생활·상업 및 산업 부문 비밀, 법률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②개별 국가는 공공정보의 이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공공정보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내용 점검이 요청된다. ④공공정보는 민간이용이 가능함을 공표하여야 하고, 자료 수집·이용과 관련한 절차는 명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용 협상 절차 및 요금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⑤공공정보는 고객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⑥민간 데이터베이스 공급자와의 계약이 경쟁원칙을 왜곡시킬 수 있으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둘째, 전자 정보 서비스 부문의 지침은 ①민간의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서비스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공공 부문이 전자 정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쟁원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유럽연합 권역내의 기업들은 소속 국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서비스 지원 부문의 지침은 ①경쟁의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재정지원은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거나 사전적인 연구·개발이 목적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③공공 보조는 영리성이 없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유지·개발을 위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 ④정보시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을 결합한 형태의 모험기업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전자 정보 서비스 이용자는 국적과 관련하여 차별되어서는 않는다.

넷째, 법적 책임과 관련한 지침은 ①공공정보의 민간 이용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법률을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정보는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2003년에 발표된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2003년 지침은 유럽연합 권역에서의 공동된 법률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침의 2대 핵심적인 요소는 투명성과 공정 경쟁의 확보를 들고 있다. 또한, 지침은 시민의 정보 접근 측면보다는 경제적 이용 측면에 보다 주력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공공정보 재활용을 가능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침 제정의 목적은 회원국들이 공공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과 재활용을 규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공공정보는 다음의 6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①공공기관의 공적업무 영역을 벗어난 정보, ②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정보, ③국가 안전보장·국방·공적 안전, 통계·상업적인 비밀과 관련한 정보, ④공영 방송사에서 보유한 정보, ⑤교육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보, ⑥문화시설(박물관, 도서관, 문서고,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영화관 등)에서 보유한 정보

셋째, 지침은 작성 수단(수기 혹은 전자적으로 처리된 정보, 음향·영상 기록 정보 등)에 상관없는 모든 공공정보를 대상으로 한다.¹⁰⁸⁾

다섯째, 공공 기관은 민간의 공공정보 재활용 요청을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청 수령 이후에 20일의 기간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제공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위한 이용 조건 및 표준 요금 등은 가능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사전 공표되어야 한다.

108) 그 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 및 국제 저작권 보호 지침과 양립될 수 있는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공공정보 이용에 따르는 비용은 해당 정보의 생산, 재생산, 보급 등과 관련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공공정보가 민간에서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수요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적으로 구성될 수 없다.
여덟째, 공공정보의 이용 방법은 모든 잠재적인 수요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다.

아홉째, 회원국들은 2005년을 기한으로 지침의 국내법 수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2003년 EU지침은 1989년 지침서를 이어 받아, EU 권역에서 공공정보 재활용을 위한 통일성 있는 법규 제정의 세부 지침을 정립하였으며, 재활용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벽들을 제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공정보 재활용을 방해하는 여러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액의 이용 요금 부과, 확대된 정보 공유에 대한 반발, 공공 및 민간 부문간의 경쟁, 실제 이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부족,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 촉진정책의 실패 등이 단적인 사례들로 꼽힌다.

이런 상황의 타개를 위해 EU는 2003년 지침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청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1년에 개정안에 대한 제안서를 각 회원국에 전달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회원국간 법규 차이로 발생하는 활용상의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재활용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정보의 차별없는 이용을 위해 공공정보가 작성된 기관의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접근권을 허용한다.

셋째, 지침의 적용범위는 문화시설 중 독립된 형태의 도서관, 박물관, 문서고까지 확대한다.

넷째, 회원국간의 상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정보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용 요금은 생산 및 재생산 등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의 범위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원국은 지침 적용 준수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형의 감독기구를 설립하여야 하며, 회원국간 감독기구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¹⁰⁹⁾

109)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12.12.2011, European Commission

나. OECD 지침

공공정보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OECD 정보·컴퓨터·통신 위원회(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는 2008년에 “공공정보의 접근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권고안,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enhanced access and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OECD 권고안은 전체 13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부문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개(Openness): 공공정보 이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개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재활용을 위한 접근성 및 투명성(Access & transparent conditions of re-use): 공공정보의 배타적인 이용 및 불필요한 제한을 방지하여, 차별 없고 경쟁적인 접근 구조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자산 목록(Asset lists):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목록자료의 구성이 필요하다.

④품질(Quality): 공공정보의 생산, 수집 등과 관계되는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제공 정보의 높은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완전(Integrity): 공공정보의 권한 없는 접근 등을 방지하는 정보 관리를 통해 제공 정보의 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신기술 및 장기 보존(New Technologies & long-term preservation): 공공정보의 접근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신 기술 및 연구결과의 활용, 정보 저장 및 보존 능력 등을 향상시켜야 한다.

⑦저작권(Copyright): 공공정보의 재활용 과정에는 지적 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⑧요금(Pricing): 공공정보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의 요금체계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⑨경쟁(Competition): 공공정보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경쟁체제로 인증된다.

⑩구제절차(Redress mechanism): 불만 및 시정 절차는 적절하고 분명하게 마련되

어야 한다.

①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국제적 활용(International access and use): 국제간 공공정보의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우수 사례(Best practices): 이용자 교육, 재활용 촉진 방법, 요금 부과, 저작권 처리 등과 관련하여 우수 사례는 널리 공유하고 상호 교환에 힘써야 한다.

다. 주요 국가들의 동향

먼저, 미국은 현대적인 형태의 정보자유법을 1966년에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1974년의 1차 개정작업 이후 2010년까지 크고 작은 7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정보자유법은 이와 같은 개정과정에서 햇빛 정부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및 전자정보자유법(E-FOIA: Electr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등을 분화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개정과정을 통해 적용범위의 확대 및 축소 등을 둘러싼 많은 시행착오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76년에 제정된 햇빛 정부법은 연방정부 산하 합의제 기관의 정책 결정과정 및 심의 과정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자유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시민들의 공공정보 접근권을 대폭적으로 강화시켰다. 또한, 1996년에 제정된 전자정보자유법은 전자적으로 처리된 정보가 정보자유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연방정부 산하 기관들이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시민들이 이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¹¹⁰⁾

다음으로, 호주 사례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공공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으나, 정부 부문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청에 따라, 1982년에 FOIA가 제정되었으며, 호주 민주정치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¹¹¹⁾ 또한,

110)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정부 교체기에 적용범위의 확장 및 축소 과정을 몇 차례 거쳤는데, 적용범위가 축소된 사례로는 1982년의 레이건 정부에 의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2001년의 조지 워커 부시 정부에 의한 이전 대통령 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대통령 집행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정보자유법 적용을 제한하였다.

111) "Freedom of information and democracy in Australia and Beyond", Australia Journal of Longman, Sydney, Vol.43, No4, pp667-684.

2010년의 FOIA 개정작업은 주로 정보공개 신청 비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정보 공개를 위한 단계별 상세한 구분 및 비용체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 공개절차를 정보 검색·의사 결정·전자적 생산·복사·재생·검토·전송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청인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나 요청받은 공공기관이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²⁾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공공정보 공개제도의 출발이 비교적 늦은 2000년에 FOIA가 제정되었으며, 비공개가 가능한 예외 조항들을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들 예외 조항은 절대적 예외 조항과 제한적 예외 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한적 예외 조항은 공공기관이 공개 및 비공개에 따르는 공익을 평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정의되며, 제한적 예외 조항은 다시 유형에 기초(Class-based)한 예외 조항과 위해성에 기초(Harm-based)한 예외 조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국 FOIA에서 규정한 절대적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정보로는 ①대체 가능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 ②안전 및 치안과 관련된 정보, ③법원 기록과 관련한 정보, ④의회특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⑤하원 및 왕실이 보유한 정보, ⑥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는 정보, ⑦정보 제공 기관 및 개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⑧공개가 법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¹¹³⁾ 등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FOIA에 해당하는 정보접근법은 1985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숱한 개정작업을 거쳤으나 여전히 정보공개 제한 규정이 폭 넓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제한 규정은 정부 책임·개인정보·제3자 정보·정부 활동·입법 방해·접근 거절 등에 관한 정보 부문으로 구성되며,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정보공개 제한 규정들을 기술하고 있다. ¹¹⁴⁾

112) "Summary of charges and legislative provisions", FOIA guidelines Part4, Office of the Australia Information Commissioner(OAIC). 호주의 공공정보 공개청구와 관련된 요금은 정보 검색단계부터 전송단계까지의 비용을 시간 당 요금 혹은 실비 변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113) 유형에 기초한 예외 조항은 ①향후 출판예정인 정보, ②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③조사 및 소송과 관련된 정보, ④정부 정책 형성, 내각 의사록, ⑤왕실 구성원간 의사소통 정보, ⑥전문 법률적 특권과 관계되는 정보, ⑦무역상 비밀 정보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해성에 기초한 예외 조항은 ①국방에 관한 정보, ②외교에 관한 정보, ③영국정부와 다른 행정부간 관계에 관한 정보, ④국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정보, ⑤법률 집행에 관한 정보, ⑥회계기능에 관한 정보, ⑦자유로운 정보교환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⑧개인의 물리적, 지적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보, ⑨상업적 이익에 관한 정보로 구분하고 있다.

114) "Justice Laws Web-site", Department of Justice, Government of Canada.

라.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각종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공 이용 파일(PUF: Public Use File)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민간에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 접근방법도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접근, CD-ROM 제공, 조사자료 이용장소 제공 등으로 민간의 자료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익명처리 등의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하여 제공되는 PUF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자료 등 가구 및 인구 부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가별로 부르는 호칭 및 제공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곧, PUF에 대해 미국은 PUMS (Public Use Micro data Sample), 캐나다는 PUMFs(Public Use Microdata Files), 호주는 CURF(Confidentialised Unit Record File), 영국은 SAR(Sample of Anonymised Record) 등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자료 제공범위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은 1%, 5%, 캐나다는 3%, 호주는 1%, 5%, 영국은 인구와 가구를 구분하여 인구는 2%, 3%, 가구는 1%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전문 이용자를 위해 제공 중인 조사자료 이용장소 제공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RDC는 1994년에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센서스국 본부 RDC를 포함하여 전국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표본자료를 포함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에의 접근이 허용된다. 또한, RDC는 센서스국 이외에 국가보건통계본부(NCH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건강관리 연구 및 품질국(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과 제휴한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으며, RDC 이용은 연구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인 자료제공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RDC는 이용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통계 생산 체계에 대한 홍보 역할을 수행하며, 통계조사 자료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추가적인 자료수집 없이 새롭게 대두되는 중요 정책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등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RDC는 캐나다에서도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 2012년까지 연방정부 RDC를 비롯하여 전국에 15개소가 설치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집권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RDC에서 제공되는 마이

크로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인구·원주민·민족, 교육·훈련, 건강, 담배소비, 가구·음식 소비, 일반 사회, 노동, 이민자 패널, 노동·건강, 학위, 영유아 패널, 사회참여, 국제 학생 평가 등에 관한 조사 자료들을 RDC에서 제공하고 있다.¹¹⁵⁾ 한편, 건강 및 보건 부문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공익성이 전제되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사망·암·출생·사산 등의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¹¹⁶⁾

호주에서도 전문 연구자를 위해 RDC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자료연구실(ABSDL: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Site Data Laboratory)을 8개 주·준주의 호주 통계청 지방사무실에 설치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자료는 전문가형 CURF가 제공되고 있다.¹¹⁷⁾ ABSDL에서는 세분된 마이크로데이터를 대상으로 SAS, SPSS, Stata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프로그래밍 작업이 가능하며, 자료간의 병합작업도 허용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캐나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집권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ABSDL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며 인구·주택, 기업, 유아 교육·보호, 범죄·안전, 장애·고령·보호, 교육·훈련·정보기술, 근로 수입·시간, 가구 특성·이전, 고용 계약·은퇴·연금, 일반사회, 가구 수입·소비·분배, 자원봉사·여성 안전 등을 포함한 많은 조사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마이크로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주목할 사항은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청과 대학의 자료이용에 관한 협정”과 캐나다의 DLI(Data Liberation Initiative)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으며,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CDS: Customised Data Services) 제도도 참고할만 하다.

먼저, 호주의 자료이용 협정에 관해 살펴보면, 약 30여개의 대학이 매년 통계청과 자료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연구 및 강의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CURF 자료, ABSDL 설비, 뉴질랜드 CURF 자료, 총조사 및 각종 조사의 통계표 편제 프로그램(TableBuilder),¹¹⁸⁾ Luxembourg Income Study¹¹⁹⁾ 자료

115) <http://www.statcan.gc.ca/rdc-cdr> (캐나다 통계청, RDC 프로그램 소개)

116) <http://www.statcan.gc.ca/health-sante/>(캐나다 통계청, 연계 자료 이용 프로그램 소개)에 따르면, 연계 레코드는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 레코드를 결합하여 형성한 레코드로 정의하고 있다.

117) 호주는 CURF를 Basic·Expanded·Specialist CURF로 구분하고 있으며, Specialist가 가장 상세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118) 통계표 편제 프로그램인 TableBuilder는 호주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DLI(Data Liberation Initiative) 프로그램은 호주의 자료이용 협정과 기능상의 유사성은 있으나 보다 확대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료 개방 발의”로 해석되는 DLI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참여한 대학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소속 학생과 교직원들이 제한 없이 통계청 조사자료와 GIS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자료제공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활동의 촉진, 조사자료의 부가가치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DLI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 수행과 함께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과정에서는 자료제공 방식의 개선, 제공되는 통계자료의 확대, 자료제공 담당자들에 대한 훈련, 국내 통계자료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료이용센터(RDC) 발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LI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은 발족 당시인 1997년의 50개 대학에서 2011년에는 75개 대학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⁰⁾

끝으로, 호주는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CDS: Customised Data Services)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CDS는 호주 통계청(ABS)의 국가정보위탁서비스(National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 부서가 신청인의 의뢰를 받아 고객 맞춤형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처리되고 있다.¹²¹⁾

CDS의 주요 이용지는 온라인 자료제공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로써, ①상세 정보 수요자, ②총조사 과거 시계열 자료 수요자, ③표준 형식을 벗어난 자료 수요자, ④특수 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가와 1대1 자문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등이 있으며, 기타 ⑤온라인 무상 서비스 및 TableBuilder 이용이 미숙하고 시간절약을 원하는 수요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CDS의 제공 서비스는 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①ABS 전문가에 의해 생산되고 인증된 자료, ②과거 총조사 시계열 자료 및 분석자료, ③지리정보 자료,¹²²⁾ ④특정 인구계층에 대한 자료, ⑤비표준 형식의 맞춤형 자료 등의 서비스가

표 구성을 위한 변수 선택, 표두 및 표측 선택 등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형식으로 저장하여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19) Luxembourg Income Study(LIS)는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로 통칭되며, 미국, 영국 등 세계 36개 국가의 소득, 지출 및 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20) "The Canadian Data Liberation Initiative", IHSN Working Paper No 006, November 2011

121)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는 호주의 “Commonwealth Cost Recovery Guidelines and ABS Pricing Policy”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122) 지리정보 자료는 ASGC(Australian Standard Geographical Classification), ASGS(Australian Statistical Geography Standard) 및 기타 지리 분류에 따라 생산된 자료가 제공되며, 개별 Mesh Block(기초단위 구조서, 30~60개 거처를 묶어서 선정된다)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제공되며, 기타 ⑥이용자의 통계 기법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CDS에서 이용이 제약되는 경우는 ①지리정보 기초단위구인 Mesh Block 단위 혹은 맞춤형 Mesh Block 결합 단위 자료, ②출생 일자 등의 순수한 자료처리 목적으로만 수집된 총조사 항목 자료, ③수요 자료의 표본 수가 지나치게 적어 제공이 부적절한 자료 등을 예시하고 있다.¹²³⁾

3. 해외 통계산업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시사점

해외 통계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현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기관 정보 공개 제도의 국제적인 흐름과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참고할 만한 특징적인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OECD 권고안의 8개 원칙들은 국내에서 2012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 정보 주체의 권리(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조항에서 해당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으며, EU의 Directive 95/46/EC 지침(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지침)의 주요 특징적인 사항들은 2012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개인정보파일·공공기관에 관한 정의(제2조), 국제협력(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개인정보 수집 제한(제16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7조) 조항에서 해당 지침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와 미국간의 원활한 국가 교역을 위해 성립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Principle) 7개 원칙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 정보 주체의 권리(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7조) 조항에서 해당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으며, EU의 Directive 2002/58/EC 지침(전자통신 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지침)의 주요 특징적인 사항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02년 이후 개정작업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²⁴⁾

123) <http://www.abs.gov.au/websitedbs/censushome.nsf/>(호주 통계청, Customised Data Services 소개)

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87년의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의 전부개정 작업과 함께 현재의 법률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에

다음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와 관련한 EU 지침의 국내 적용은 많은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통계산업의 관점에서 살펴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규정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정보목록 작성·비치 기준, 보유 기간이 경과된 비공개 정보의 공개대상 전환 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선정 기준 등을 공공기관의 자율에 위임하고 있으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 정보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활용성을 많은 부문에서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들 외에도 현행 정보공개법은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성에만 치중하고 있어, EU의 1989년 지침(정보시장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간의 상승효과 제고를 위한 지침)과 2003년 지침(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 OECD의 2008년 권고안(공공정보의 접근성 강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권고안)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민간 부문에 의한 상업적 재활용 촉진 및 공정 경쟁 유지, 관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EU 및 OECD 지침에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밝히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향후의 정보공개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 개정작업은 법의 정신에 해당하는 목적 조항에서 상업적 이용 등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및 공정 경쟁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세부 부문에서는 ①공공정보의 민간 및 정보산업에서의 자유로운 이용 허가 및 장려, ②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의 주기적인 내용 점검, ③민간 데이터베이스 공급자와의 공정 계약, ④공공정보 기반의 민간 정보서비스 개발 촉진 및 지원, ⑤정보서비스 제공의 공공 및 민간간의 경쟁 원칙, ⑥민간 이용 및 전자적 처리를 고려한 공공정보 생산방법, ⑦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⑧독립형 감독기구 설치, ⑨공공정보 공개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⑩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간의 협력관계, ⑪공공정보의 국제적 활용 촉진 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한편,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2010년 이후의 정부 정책방향은 EU 및 OECD 지침과 권고안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통계청의

는 2003년 개정작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2회의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행정안전부의 공유자원포털 확대 운영,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및 주요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정책 등은 현행 법령 규정과는 다른 시각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과 정책의 불균형 상황은 일시적이며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범정부적인 정책 및 법령의 일관성, 체계성의 확보, 신뢰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서도 공공정보의 공개에 관한 관련 법령들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마이크로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에서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검토가 요청된다.

첫째, 자료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주요 국가의 RDC와 유사한 형태의 MDAC(Micro Data Access Center,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제공되는 통계자료가 통계청이 생산하는 조사자료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같은 분권형 통계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의 사례와 같이 통계작성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MDAC 제공 자료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향후에는 획기적인 수준의 자료제공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공 이용 자료(PUF: Public Use File)의 대중적인 접근과 활용이 요청된다.

PUF 자료는 공공 부문, 교육 및 연구 부문, 통계산업 등의 산업 부문 등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는 공공정보의 일부이며, 통계자료의 민간 활용으로 통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저변을 넓힐 수도 있으므로, 무상 제공 서비스를 통한 대중적인 접근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주요 국가 사례에서 실비변상 형태의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도 있으며,¹²⁵⁾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의 주장도 있으나, 추가적인 작업과정이 요청되지 않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

125) 미국, 네덜란드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은 실비 차원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생산한 총조사 자료의 공공 이용 파일도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김경미, 이의규, 정미옥, 통계개발원, 2007년.

한 PUF 제공방식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호주 사례와 같이 공공 이용 파일을 일반용, 확장용, 전문가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이크로데이터 주요 수요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자료제공도 필요하다.

호주 통계청과 대학간의 자료이용 협정, 캐나다 통계청의 DLI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주요 수요기관과의 일괄 계약에 의해 자료 이용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요청되는데, 이를 통해 통계자료의 민간 이용자층을 넓힐 수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고, 조사자료의 부가가치가 증대되며, 정책 발의·형성 과정의 기초자료 제공 등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넷째,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CDS: Customised Data Services)의 도입이 요청된다. 물론 국내의 MDSS시스템이 위탁처리 방법의 자료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제공 중인 마이크로데이터의 단순 가공처리가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호주에서 제공하는 CDS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온라인 자료제공 범위를 넘어서는 상세 정보, 1대1 자문이 요청되는 특수 수요 정보, 장기 시계열 정보, 비표준 형식의 처리 정보, 지리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CDS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호주 CDS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통계기법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도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05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 현황

제5장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 현황

제1절 국내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 현황

앞서 진행한 제2장 통계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선정 작업은 주로 국내 주요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들의 현황을 참고하여 접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적용한 것은 통계산업과 관련한 선행연구 사례가 전혀 없다는 현실적인 요청도 있었으나, 관련 지원 법령의 내용들이 해당 부문의 많은 연구 사업들을 거쳐서 다듬어진 정수(精髓)를 담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인 통계산업 활성화 방안 및 진흥법안 제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핵심 사안들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2012년 현재 국내의 산업 부문별 주요 진흥 법령들이 포함하고 있는 각종 제도 및 지원 사업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통계산업 관점에서의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에서 산업 부문별 지원을 위해 제정되어 시행 중인 관련 법령들은 약 40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법령들은 명칭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진흥·촉진·지원·육성·발전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 부문별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¹²⁶⁾

이와 같은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들을 대상으로 ①산업의 정의, ②산업의 분류 체계, ③산업 진흥계획 수립, ④진흥 지원기관의 설립, ⑤전문 인력 양성 사업 및 자격 제도, ⑥정보 유통 및 활용 촉진, ⑦연구·개발 촉진, ⑧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 제도, ⑨금융·예산 및 세제 지원, ⑩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⑪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홍보 사업 등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관련 제도 및 지원 사업의 현황들을 비교하고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만, ①산업의 정의, ②산업의 분류 체계 부문에 관

126) 물류정책기본법, 인삼산업법은 예외적으로 포함하였는데, 별도의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이 없으며, 이들 법령 내용에 물류산업 및 인삼산업에 관한 지원방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내용들은 제2장 통계산업 정의 및 분류 체계에서 별도로 언급하였으므로 제외하고, ③진흥 계획 수립 부문부터 ⑪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홍보 사업 부문까지를 대상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들 지원 법령들은 공통적으로 대상 산업의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공공 부문은 산업의 포괄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표 5-1> 국내 산업 부문별 주요 지원 법령 현황

국내 산업 부문별 주요 지원 법령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법	- 식품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관광 진흥법	- 외식산업 진흥법
-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 원양산업 발전법
- 게임산업 진흥법	- 유통산업 발전법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법	- 음악산업 진흥법
- 기상산업 진흥법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법
- 김치산업 진흥법	- 인삼산업법
-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¹²⁷⁾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말산업 육성법	- 전시(展示)산업 발전법
-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법
- 물류정책 기본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법
- 산업디자인 진흥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소금산업 진흥법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소방산업 진흥법	-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 산업 진흥 계획 수립

관광진흥법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법령들은 해당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5년 주기 기본계획 혹은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물류정책 기본법과 선박 관리산업 발전법은 5년 주기,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은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정보 통신산업 진흥법,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게임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 산업디자인 진흥법, 고령 친화산업 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식품산업 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 음악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전시산업 발전법,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법, 인삼산업법, 항공 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등의 17개 법령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작성 주기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산업 부문별 기본계획들이 주로 포함하고 있는 사항은 산업 환경 변화 및 전망, 정책 방향·목표·전략, 통계 및 정보화 구축, 수급 전망, 표준화·공동화·효율화 방안, 인력 양성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 방안, 국제 교류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흥 시설 설치, 재원 확보 및 자금 지원, 관련 학술 진흥,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 분담, 공정 경쟁 촉진,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익 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자금 공급 활성화, 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이용 촉진·홍보 및 유통 현대화·활성화 지원,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관련 산업간 연계 강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의 산업 진흥계획 수립 현황

지원 법령	산업 진흥계획 수립 현황
산업디자인 진흥법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정책 방향,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필요 자금지원 등을 규정

127)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은 2011년 6월에 김을동 의원을 비롯한 17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의원발의되어 제정이 추진 중인 법률안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지원 법령	산업 진흥계획 수립 현황
물류정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물류정책 목표와 전략·단계별 추진계획, 물류 정보화사업,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 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 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선정, 연계 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 물류 표준화·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 방안, 물류 보안,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기술 개발, 국제물류 촉진·지원 등을 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진흥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진흥 기본방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산업진흥시설 지정,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 활성화, 국제회의 및 대회 등 유치, 경쟁력 강화, 재원 확보,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 국가간 스포츠산업 협력, 프로 스포츠 육성·지원 등을 규정
지능형 로봇산업 개발 및 보급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개발 및 관련 학술 진흥·기반 조성, 기반시설 구축, 지능형 로봇 윤리현장 실행,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 등을 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주기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산업 기반 조성,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산업 간 융합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방향, 재원 확보 및 배분, 제도 개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연차별 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진흥 시책 기본 방향, 부문별 진흥 시책, 기술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 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자금 공급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환경기술개발계획 및 연도별 육성계획을 수립·시행 -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육성목표·정책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 육성 관련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연구 지원,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등을 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국제회의 유치와 촉진,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 국제회의 필요인력 양성, 국제회의 시설 설치 및 확충 등을 규정

지원 법령	산업 진흥계획 수립 현황
기상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산업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성과 확산, 지원과 투자 확대, 필요 전문인력 양성, 선진화 및 국제화 촉진 등을 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연차별 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정책의 기본방향, 부문별 진흥시책, 산업 기반조성, 지방 공간정보산업 육성,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촉진, 사업자 육성, 전문인력 양성,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이용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을 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기본계획 및 문화산업 분야별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게임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방향,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산업 기반조성 및 균형 발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위법 제작·유통 게임물 지도·단속,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진흥 시책 기본방향, 부문별 육성시책, 산업 기반조성, 창업 지원 등 사업자 육성, 전문인력 양성,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규정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책 기본방향,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개인·기업·지역·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도입 촉진 및 확산,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인력 국외 진출 및 국제화, 기술 및 산업간 융합 촉진,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전문인력 양성, 양서 출판 장려·지원, 국내·외 우수 저작물 번역 지원,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 현대화, 전자출판 육성·지원, 국제 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만화산업 육성·지원, 서점 및 제본업 지원 등을 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 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산업의 기반조성, 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을 규정

지원 법령	산업 진흥계획 수립 현황
소방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소방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산업 진흥시책 기본방향, 부문별 육성시책, 산업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소방장비 개발·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규정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산업 현황과 전망, 지원방향 및 목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곤충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곤충 생태 관련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 방안 등을 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현황 및 전망, 산업 지원방향 및 목표,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중장기 투자계획,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 육성 방안,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규정
김치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산업 진흥 기본방향,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품질 표준화 및 품질향상,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 전문인력 육성, 농어업 연계 강화,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세계화를 위한 홍보 등을 규정
말산업 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 말 이용 촉진, 산업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필요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 방역 및 보건관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 등을 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주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진흥 시책의 기본 방향, 부문별 진흥 시책, 산업 첨단화·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전환 촉진, 인력 양성 및 공급, 뿌리기업 창업 및 성장 촉진, 뿌리기술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핵심 뿌리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규정
식품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진흥 기본방향,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 외식산업 육성, 전통식품 개발·보급 및 세계화,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정보화,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식품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국가 식품 클러스터 등을 규정

지원 법령	산업 진흥계획 수립 현황
소금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의 현황 및 전망, 산업 진흥 및 품질관리 관련 기본방향 및 목표,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 사업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전문인력 육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생산자단체 육성·감독·관리, 염전 소유자와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 및 생산자와 가공업체·식품업체의 상생협력, 수급 및 적정가격,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 효율화,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 염전 및 주변환경 관리, 품질향상,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 등을 규정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 쌀가공산업과 농업간의 연계강화,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 등을 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진흥정책 기본 방향, 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활용, 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자 지원 등을 규정
외식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진흥 시책 기본방향, 부문별 육성 시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및 보급, 외식사업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 관련 통계·정보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 발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산업 진흥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등을 규정
원양산업 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해외 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 개발, 연안국 및 국제 수산기구와의 국제협력 등을 규정
유통산업 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발전 기본방향,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산업 현황 및 평가, 지역별·종류별 발전방안,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전문 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 전망, 중소 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기업 및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방안 등을 규정

지원 법령	산업 진흥계획 수립 현황
음악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법령·제도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수출 촉진 및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및 보급, 유통 전문화 및 유통 구조 개선, 창업 지원 등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위법 제작·판매·배포·이용 음반 등의 지도·단속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 감시 활동 지원 등을 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전문인력 양성, 인쇄시설 현대화,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인쇄물 및 인쇄 기자재에 관한 연구, 인쇄 협동화 사업, 인쇄물 품질향상 등을 규정
전시산업 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 - 발전 기본 방향, 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시설 수급, 국제 수준 무역전시회 육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전시산업 기반구축 등을 규정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등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진흥 기본방향, 기술개발·보급, 품질향상, 전문인력 육성,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을 규정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육성정책 기본방향·목표·전략·단계별 추진계획, 전문인력 수급·양성,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 해외시장 개척 등을 규정
인삼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류 및 인삼 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 촉진, 유통 개선, 가격 안정 및 품질 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계약산업 육성 및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계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인력 자원 개발 및 효율적 활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신약 등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외국계 제약 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 지원 등을 규정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개발 목표·방향·추진체계 및 전략·추진계획,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 자원 조달 및 투자 계획, 전문인력 양성,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규정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산업 진흥 시책 기본 방향, 데이터베이스 제작·활용, 품질 향상 및 표준화, 보안 관리,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및 유통 활성화, 콘텐츠 활용 촉진,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사업자 지원 등을 규정

2. 진흥 지원기관 설립

산업 지원을 위한 법령에서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지원기관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15개 법령이 해당되었으며, 이들 법령들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12개 진흥 지원기관들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 지원기관 중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한국소방기술원 등은 진흥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적인 업무 및 기능 측면에서는 다른 진흥 지원기관과 동일하게 역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 등에서 공동의 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에서 공동의 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표 5-3>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의 지원기관 설립 현황

지원 법령	진흥 지원기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상산업 진흥법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진흥법	한국콘텐츠진흥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디자인 진흥법	한국디자인진흥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소방산업진흥법	한국소방기술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 제도

계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에서 전문인력 양성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지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양성 사업들을 살펴보면, 교육 및 연수 제도 시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양성기관 지정, 산·학·연 협조 체계 구축,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공, 정규 교육기관의 관련 교육 지원, 인력 수요 실태 파악, 중·장기 수급 균형 및 전망 수립, 인력 육성방안 마련, 취업·재취업·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및 선진기법의 개발·보급, 우수 전문인력 확보, 인력 교류 및 관련 업계 취업 확대, 자격증 양성교육 시행, 관련 학계의 연구 기반 및 교육 역량 강화 등의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전문 자격제도로는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관리사, 관광진흥법의 문화관광해설사, 기상산업진흥법의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 말산업 육성법의 조련사·장제사·재활 승마 지도사, 인삼산업법의 검사원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표 5-4>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자격 제도 실시 현황

지원 법령	전문 인력 양성사업 및 자격 제도
물류정책 기본법	-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연수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물류관리사 자격제도 실시
스포츠산업 진흥법	-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능형 로봇산업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로봇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지능형 로봇 전문연구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 학교,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실시
관광 진흥법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관련 교육과정 개설·운영 -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제도 실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지원 및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각급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정보통신 산업 관련 교육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산업·기술, 녹색경영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지원 법령	전문 인력 양성사업 및 자격 제도
기상산업 진흥법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필요 전문 인력 양성 -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자격제도 실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실시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 전문인력 수요 실태 파악,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 각급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산업 관련 교육 지원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실시
게임산업 진흥법	- 전문인력 수급 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산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실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및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실시
산업디자인 진흥법	- 산·학 협동과 전문인력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소방산업 진흥법	- 연구소·대학 등의 필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법	- 관련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훈련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 전문인력 교육·훈련 실시,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법	-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 육성방안을 마련
김치산업 진흥법	-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
말산업 육성법	-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조련사, 장제사, 재활 승마 지도사 자격제도 실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필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소금산업 진흥법	-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
식품산업 진흥법	-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직접 또는 위탁 실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 실시

지원 법령	전문 인력 양성사업 및 자격 제도
외식산업 진흥법	-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및 선진기법의 개발·보급
원양산업 발전법	- 원양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5년 주기의 원양산업 발전종합계획에서 마련
유통산업 발전법	-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 유통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취업·재취업, 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및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보급
음악산업 진흥법	- 인력수급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산·학·관 협력기능 강화 -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 기회 확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전시산업 발전법	- 주관기관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법	- 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술과 조화되는 식문화 보급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육성
인삼산업법	- 검사원 자격제도 실시

4. 정보 유통 및 활용 촉진

물류정책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20개 지원 법령에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보 유통 및 활용 촉진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지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정보 유통 및 활용 사업들을 살펴보면, 정보망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합정보센터 설치·운영, 공공정보 이용·제공 및 보급,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기술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및 보급, 관련 산업 정보의 작성·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 정보 지원기관 지정, 유통 활성화 및 정보화 촉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제공 등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사업 중 특징적인 부분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상정보, 공간정보, 교육정보 등은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음악산업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은 관련 통계 기준 정립 및 수집·분석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5-5>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의 정보 유통 및 활용 현황

지원 법령	정보 유통 및 활용 사업
물류정책 기본법	- 물류정보화 촉진, 단위물류 정보망 구축, 종합물류 정보망 구축 - 국가 물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합 정보센터 설치 운영
콘텐츠산업 진흥법	- 공공정보의 활용 촉진,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 기술 관련 정보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및 보급 방안 마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의 환경정보 작성·공개
기상산업 진흥법	- 기상청장의 기상정보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요청 - 기상청장의 기상정보 제공 의무, 기상정보 지원기관 지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국가 공간 정보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민간 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 데이터베이스 중복 제작 방지 - 데이터베이스간 공유·연계 활용 등 유통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및 유통 정보화 촉진에 노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 수준, 연구 동향, 시장 동향, 사업자 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법	- 이러닝 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 콘텐츠로 제작·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 협조
산업디자인진흥법	-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소방산업 진흥법	-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보급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정보의 가공 및 유통,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말산업 육성법	- 말산업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체계 구축·운영
원양산업 발전법	- 원양산업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통산업 발전법	- 유통 정보화 촉진, 유통 부문 전자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유통 정보화 시책을 마련
음악산업 진흥법	- 음악산업의 기술수준·연구 및 시장동향,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
전시산업 발전법	- 전시산업 정보 및 통계의 기준 정립·수집 및 분석 - 전시산업 정보의 가공 및 유통,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5. 연구·개발 촉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의 28개 지원 법령에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지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연구·개발 사업들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사업에의 투자·출연, 기술 지원 등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기술 협력 및 이전 촉진,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연구비 지원,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추진, 기술 수준의 국내·외 사례 조사, 인력·시설·기자재·자금·정보 등의 공동 활용 기반 마련, 산·학·연 협동 연구 촉진, 연구·개발 결과의 권리 보호, 신기술·신소재·기초 기술 개발 지원,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지원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 5-6>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의 연구·개발 촉진 현황

지원 법령	연구·개발 촉진 사업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이 물류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 기술 수준 조사 및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평가, 기술 협력·기술 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등 수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연구비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국제 공동연구 촉진 방안 마련
기상산업 진흥법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 연구기관과 협약을 통해 관련 과제 선정 및 연구 추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 연구·개발, 기술 개발 과제 지정 및 연구·개발 사업 지원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 문화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
게임산업 진흥법	-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법	-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

지원 법령	연구·개발 촉진 사업
산업디자인 진흥법	-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소요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고령 친화산업 진흥법	-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 촉진
소방산업 진흥법	- 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법	-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김치산업 진흥법	- 전문연구기관 등에 김치의 품질 향상, 포장·저장·제조 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
말산업 육성법	- 말산업연구소 설치·운영 등 말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핵심 뿌리기술 지정 및 관련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
소금산업 진흥법	-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
식품산업 진흥법	- 식품산업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지원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 가공용 쌀의 용도별 품종 개발, 쌀 가공품의 품질 향상·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개발 - 쌀 가공품 포장 및 저장 등 기초기술 개발,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등 지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
외식산업 진흥법	- 외식상품 관련 연구·개발 기관, 단체 등이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연구·개발을 촉진
원양산업 발전법	- 해외 수산자원 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 및 과학기술 진흥 사업 수행
음악산업 진흥법	-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 및 연구를 촉진
인삼산업법	-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 개발·보급 지원 - 재배 적합 토지 조사, 인삼 제품류 개발 등의 사업 지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법	- 전문연구기관 등에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포장·저장·제조 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법	- 신약 개발 등 혁신형 제약기업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의 우선 참여 지원

6. 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 제도

지능형 로봇산업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의 32개 지원 법령에서 산업 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 제도와 관련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지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화 및 품질 보증 제도와 관련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산업 기술·제품·재료·서비스 등의 표준·규격 제정 및 보급, 표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품평회 개최, 표준 규격품 준수를 위한 시정명령, 성능·품질 검사 및 품질 표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품질 향상 관련 사업 지원 등의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품질 인증 및 지정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 지능형 로봇산업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관광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 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 유통산업 발전법,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5-7> 산업 부문별 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제도 현황

지원 법령	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 제도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 표준 보급 촉진을 위해 물류 표준에 맞는 장비를 제조·사용하게 하거나 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 - 종합물류 기업 및 우수 국제 물류 주선업체 인증제도 실시
지능형 로봇산업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지능형 로봇 제품에 관한 품질인증 실시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 콘텐츠 제작 및 품질 향상, 콘텐츠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콘텐츠 표준 제정 및 고시
관광 진흥법	- 우수 숙박시설 지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 기술·제품·통신망·서비스·정보의 공동 활용 등에 관한 표준화 관련 시책을 마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확인된 기술에 대해 신기술 인증제도 실시 - 우수환경 산업체 지정제도 실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 기준 등의 표준화 활동 지원

지원 법령	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 제도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 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 기준 등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 문화상품에 국제 표준 바코드 표시, 문화상품 품질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 우수문화 사업자 지정제도 실시
게임산업 진흥법	- 게임물 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 권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권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	- 이러닝 관련 한국 산업 표준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이러닝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국내 표준의 국제화 추진 - 이러닝 사업자 및 이러닝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
산업디자인 진흥법	- 우수 산업 디자인 상품 선정제도 실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고령친화 제품 등의 표준을 제정, 개정, 폐지 및 보급
소방산업 진흥법	- 소방 장비·기술 및 인력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 및 표준화를 증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법	- 천적 곤충, 화분 매개 곤충, 환경 정화 곤충, 식·약용 곤충 및 학습·애완 곤충 등으로 이용 가능한 곤충 종류, 사육 기준 및 규격 등을 마련
김치산업 진흥법	- 김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대표상품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김치 품평회 개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뿌리 기술 전문기업 지정, 뿌리 기업 명가 선정
소금산업 진흥법	- 염전 등의 표준 모델 개발, 천일염 포장·등급 규격 지정, 표준 규격품 준수를 위한 시정명령, 품질 검사·표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시행
식품산업 진흥법	- 식품산업 표준화 촉진, 식품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식품의 산업 표준 인증제도 운영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 쌀 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촉진, 쌀 가공품의 대표 브랜드 선정·육성을 위한 품평회 개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의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 표준화 추진
외식산업 진흥법	-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 및 국제 표준 확보를 위해 식재료 및 경영기법 등의 표준화 추진, 사업자의 표준 사용 권고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제도 실시
유통산업 발전법	- 물류설비 종류별 표준 인증 규격 및 인증 기준을 선정·고시 - 규격에 맞는 물류설비 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물류설비 인증사업 실시 - 우수 체인 사업자 지정제도 실시

지원 법령	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 제도
음악산업 진흥법	- 음반 등의 효율적인 개발, 품질 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 사항을 권고
인삼산업법	- 홍삼, 태극삼, 백삼 등의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 제품 및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인쇄물 품질 향상 관련 사업을 지원
전시산업발전법	- 전시산업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규정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법	-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실시
계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형 계약기업 인증제도 실시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	- 항공기, 우주 비행체, 기기류 등의 생산은 성능 및 품질 검사를 실시 - 특정사업자 지정제도 실시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실시

7. 금융, 예산 및 세제 지원

물류정책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의 33개 지원 법령에서 금융, 예산 및 세제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지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 예산 및 세제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면, 소요 자금의 융자 등 재정 지원, 금융 지원, 기타 행정상 필요 조치 지원 등의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특징적인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산업 진흥법과 계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세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은 장기 저리 자금 이외에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⁸⁾

<표 5-8> 산업 부문별 금융, 예산 및 세제 지원 현황

지원 법령	금융, 예산 및 세제 지원
물류정책 기본법	- 물류 기업, 물류 표준장비 사용자, 물류 표준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해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 재정을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28) 재정·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사업들은 대부분의 법령에서 예산 범위의 제한 혹은 재량 조항(지원 할 수 있다)으로 구성하고 있다.

지원 법령	금융, 예산 및 세제 지원
지능형 로봇 산업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지능형 로봇 인증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지원 혹은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
관광 진흥법	- 관광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조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 산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를 제공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방식으로 지원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 데이터베이스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우수 문화상품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제작자에게 자금을 지원
게임산업 진흥법	- 협동개발·연구, 해외시장 진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	- 금융 및 행정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산업디자인 진흥법	-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진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소요 자금을 지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
소방산업 진흥법	-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그 밖의 행정상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법	- 곤충 농가 및 곤충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자금을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 국제회의 유치 혹은 개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김치산업 진흥법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
말산업 육성법	-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승마시설에 대해 자금을 지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뿌리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재정 조치를 지원
소금산업 진흥법	- 소금산업 진흥과 소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
식품산업 진흥법	- 식품산업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 쌀 가공품 생산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쌀 가공업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협동 개발·연구를 추진하는 자,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고용을 촉진하는 자,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

지원 법령	금융, 예산 및 세제 지원
외식산업 진흥법	- 해외시장 진출 및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
원양산업 발전법	-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관련 사업 실시를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
유통산업 발전법	- 유통산업 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
음악산업진흥법	- 협동 개발·연구를 추진하는 자, 음악 공연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자,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
전시산업 발전법	- 전시 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
계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형 계약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 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실시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	- 항공우주산업 육성,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항공우주 과학기술 관련 전시회 개최·운영을 위한 장기 저리 자금과 연구 개발비 등을 지원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

8.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기상산업진흥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의 37개 지원 법령에서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지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수출 경쟁력 등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제 공동 제작 및 연구·개발 지원, 해외 마케팅·현지화 및 홍보 지원, 외국 자본 투자 유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촉진,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국제 학술대회·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지원, 국제 기술협력 지원, 국제 교류 진흥계획 수립·시행, 해외 우수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유치 추진, 해외진출 상담·지도 등의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표 5-9> 산업 부문별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현황

지원 법령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물류정책 기본법	- 국제 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 기업 유치 및 환적(換積)화물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

지원 법령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홍보 활동,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 지원
지능형 로봇 산업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전시회·학술대회 개최, 국제 표준화 활동, 해외 마케팅,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홍보 활동, 국제회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 유치 등 추진
콘텐츠산업 진흥법	-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 시상식·건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해외 현지화 지원, 해외 공동제작 지원,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콘텐츠 관련 국제 표준화 등 추진
관광 진흥법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 기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추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전시회·학술회의 개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추진
기상산업 진흥법	- 국내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도록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국제 전시회 참가,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 문화상품의 수출 경쟁력 촉진,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
게임산업 진흥법	-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 표준화, 국제 공동연구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	-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국제 표준화 활동, 국가간 이러닝 공동 연구·개발,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사업 지원
산업디자인 진흥법	-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출판 및 문화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지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
소방산업 진흥법	-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정보 제공, 해외 우수기술 인력의 활용 및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 촉진 등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법	-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등의 사업 실시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 지원

지원 법령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김치산업 진흥법	- 김치산업 육성, 김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
말산업 육성법	- 말사업자의 말과 관련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촉진,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시책을 강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뿌리 기술 및 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국제협력 추진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
소금산업 진흥법	-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제공,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해외시장 개척·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국제 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등 지원
식품산업 진흥법	-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 투자 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 품질 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쌀 가공품의 국제 규격화, 선정된 쌀 가공품의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해 지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행사에의 참가,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 등 지원
외식산업 진흥법	- 외식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외식산업 관련 해외 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원양산업 발전법	- 국제 수산 협력체계 구축,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 자원 확보 등 국제 수산 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
유통산업 발전법	- 유통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
음악산업 진흥법	- 음반 등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 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 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현지 사무소 설치·운영 등
인삼산업법	- 인삼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인삼산업 관련 국제 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 개최, 국제 인삼산업 시장 조사·분석 및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인삼산업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지원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전시산업 발전법	-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전시회 유치,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 협력활동 지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법	- 전통주 관련 해외시장 개척 사업 지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산업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 지원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9.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홍보 사업

지능형 로봇산업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11개 지원 법령에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홍보와 관련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 지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관의 전대 허용, 국·공유 재산의 매각·임대, 창업 지원계획 수립,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창업 촉진 및 안정적인 성장·발전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 조달 계약 등 수주 기회 확대, 국가 발주 사업에의 참여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활동 시행 요청, 전시회·홍보관·교육관·체험관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5-10> 산업 부문별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홍보사업 현황

지원 법령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홍보 사업
지능형 로봇산업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해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 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음
콘텐츠산업 진흥법	- (중소기업)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추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중소기업)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소 공간정보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창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성장·발전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	- (창업)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해 창업 지원계획을 수립 - (중소기업) 중소 사업자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중소 이러닝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
소방산업 진흥법	- (창업) 국유 및 공유재산을 소방 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지원 법령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홍보 사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창업)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하려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
소금산업 진흥법	-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금 전시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원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 (홍보) 쌀 이용 촉진 및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쌀 가공품 홍보 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외식산업 진흥법	- (창업)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창업을 지원
음악산업 진흥법	- (창업)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지원

제2절 산업 지원 법령 제정의 일반 요건

이상에서 살펴본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들은 국내에서 약 40종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정 법령들의 일반적인 틀은 ①산업의 정의, ②산업의 분류 체계, ③산업 진흥계획 수립, ④진흥 지원기관의 설립, ⑤전문 인력 양성 사업 및 자격 제도, ⑥정보 유통 및 활용 촉진, ⑦연구·개발 촉진, ⑧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 제도, ⑨금융·예산 및 세제 지원, ⑩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⑪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홍보 등의 11개 세부 영역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11개 세부 영역들은 기능적으로도 해당 법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산업 부문별 지원 법령들의 공통된 구조와 내용들은 산업 활성화 및 진흥법안 마련이 요청되는 개별 산업들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1개 세부 영역의 하위 단위 사업들 중 일반 산업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이 매년 연동계획 형식으로 보완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1> 산업 지원 법령 제정의 일반 요건

부문	일반 요건	
산업 정의	- 산업의 개념화 및 포괄 범위 선정	
산업 분류	- 세분 업종의 개념화 및 포괄 범위 설정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환경 변화 및 수급 전망 - 통계 등 정보화 구축 - 표준화, 효율화 방안 - 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 방안 -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흥 시설 설치 - 학술 진흥 - 공정 경쟁 촉진 - 제도 및 법령 개선 - 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 유통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방향, 목표, 전략 -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 국제교류 촉진 - 재원 확보 및 자금 지원 - 정부기관 역할 분담 -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익 보호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이용 촉진·홍보 - 산업간 연계 강화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기관	- 산업 진흥원 설립	
인력 양성, 자격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연수 제도 시행 - 교육·훈련 양성기관 지정 - 원격 대학 등 평생 교육시설 제공 - 학계 연구 기반 및 교육 역량 강화 - 취업/재취업/창업 지원 교육·연수 - 인력 교류 및 관련 업계 취업 확대 - 전문 자격제도 및 양성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 - 정규 교육기관 관련 교육 지원 - 인력 육성방안 마련 - 인력 수요 실태 파악 - 선진기법 개발·보급 - 중·장기 수급 균형 및 전망 수립
정보 유통,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망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공공정보 이용·제공 및 보급 - 기술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및 보급 - 정보 지원기관 지정 - 통계 기준 정립 및 수집·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정보센터 설치·운영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산업 정보 작성·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 - 유통 활성화 및 정보화 촉진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제공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사업 투자·출연 - 기술 협력 및 이전 촉진 -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촉진 - 인력/시설/기자재 등 공동활용 기반 마련 - 연구·개발 결과 권리 보호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지원 등 연구·개발 결과 실용화 - 연구과제/연구자/연구비 선정·지원 - 기술 수준의 국내·외 사례 조사 - 산/학/연 협동 연구 촉진 - 신기술/신소재/기초 기술 개발 지원

부문	일반 요건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발주 사업 참여 확대 - 창업 지원계획 수립 - 창업 촉진, 안정적인 성장·발전 지원 - 조달 계약 등 수주 기회 확대 - 전시회/홍보관/교육관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 재산 매각/임대/무상사용 허용 -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 행정 지원체계 마련 - 홍보 활동 시행
표준화, 품질보증·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 등 표준 규격 제정·보급 - 품질 향상 관련 사업 지원 - 성능·품질 검사 및 품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제·개정 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 - 표준 준수 시정명령 제도 도입 - 품질 인증 및 지정 제도
금융, 예산,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자금 융자 등 재정 지원 - 조세 감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지원 - 산업 진흥기금 설치·운영
국제 협력, 해외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경쟁력 등 해외 진출 지원 - 해외 마케팅·현지화 및 홍보 지원 - 국제 협력 관련 조사·연구 지원 - 해외 우수 인력·기관 유치 - 국제 기술협력 지원 -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공동제작 지원 - 외국 자본 투자 유치 - 인력·정보 국제교류 촉진 - 국제 학술대회/전시회 등 참여·국내 유치 - 국제 교류 진흥계획 수립·시행 - 해외 진출 상담·지도

한편, 상기한 산업 지원 법령 제정의 일반 요건들은 통계산업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진흥법안 제정과정에서도 유사한 구조 및 내용으로의 차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제2장에서 살펴본 통계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연구의 내용을 더한다면, 통계산업진흥법안의 기본적인 윤곽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법령 구성을 위한 세부 요건별 단위 사업들의 내용 설정에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살펴본 통계산업의 국내·외 현황들에 대한 특수성을 살린 보완도 요청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산업진흥법안 제정 작업은 통계법 및 정보공개법, 자료 제공 규정 등 관련 법령들의 개정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병행 작업을 통해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도 유지하면서, 신설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06

통계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제6장 통계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은 통계청 및 관련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산업 환경 및 제도 기반에 대한 정비·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민간 통계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각종 육성·지원 방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이들 중 산업 환경 및 제도 기반에 대한 정비·개선 방안은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체계의 효율적인 정비·개선, 통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통계 홍보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민간 통계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육성·지원 방안은 금융·세제 지원, 연구·개발 활동 촉진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들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추진 방안들은 법률 등의 형태로 법제화 과정을 거칠 것이 요청되는데, 이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와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 등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화 과정 중 통계법 및 관련 부속 법령,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부속 법령들의 제·개정 작업들에 대한 검토 사항은 제1절의 산업 환경 및 제도 기반의 정비·개선 방안에서 함께 다루었으며, 통계산업진흥법안 제정과 관련되는 내용은 별도로 제3절에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제1절 산업 환경 및 제도 기반의 정비·개선

1.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통계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제·개정 대상이 되는 법령은 통계청 소관으로 통계법, 통계산업진흥법, 통계산업진흥기금설치법, 공인통계사법, 통계자료 제공 규정 등이 예상되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및 부속하는 행정 규칙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현행 통계법과 통계자료 제공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이 요청된다. 즉, 이들 법령들은 통계작성기관에만 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료 이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통계산업 경영 기업들의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EU와 OECD의 공공정보 재활용 및 상업적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침 및 권고안 사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및 주요 부처들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화 정책 방향, 기상정보·공간정보·교육정보 등과 관련된 진흥법에서 민간 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 보유 기관의 관련 자료에 대한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 등을 참고한다면,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은 통계법 2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보급·이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통계법과 자료제공 규정 및 향후 제정이 예상되는 통계산업진흥법은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통계 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조항에 대한 검토작업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6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만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 등의 권리, 정보처리자의 입증책임이 부과된 손해배상청구,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한 내용들과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및 자료제공 규정에서 별도 설명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응답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정보주체의 개별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조항 및 예외 처리 등에 대한 조항은 명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통계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

되므로 통계산업진흥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과의 관계 설정 및 합리적인 조정 방안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향후 제정이 예상되는 통계산업진흥법과의 관계에서도 통계법 개정작업은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계법이 통계와 관련되는 기본법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율 대상을 민간 통계산업 부문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전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통계법의 규율 대상을 계속적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더라도 통계산업진흥법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한 개정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통계산업진흥기금설치법, 공인통계사법은 후속하게 될 민간 통계산업 지원·육성 방안 중 금융·예산·세계 지원 부문과 통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부문의 단위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법으로써 신규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보공개법 및 관련 부속 법령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개별 국가들도 EU 및 OECD 지침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현행 정보공개법이 2004년에 제정된 이후 별다른 개정작업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통계자료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도 통계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도 정보목록 작성·비치 의무는 최소한의 기준 설정은 필요하고, 비공개 개인정보의 대상 요건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공개 대상 전환 요건 등은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수요자가 예측 가능하게 변경될 것이 요청된다. 또한, 앞서 통계법 개정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도 EU 및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및 자유로운 이용 보장,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법의 방향성 전환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세부 부문에서는 ①공공정보의 민간 및 정보산업에서의 자유로운 이용 허가 및 장려, ②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의 주기적인 내용 점검, ③민간 데이터베이스 공급자와의 공정 계약, ④공공정보 기반의 민간 정보서비스 개발 촉진 및 지원, ⑤정보서비스 제공의 민간 및 공공간의 경쟁 원칙, ⑥민간 이용 및 전자적 처리를 고려한 공공정보 생산방법, ⑦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⑧독립형 감독기구 설치, ⑨공공정보 공개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⑩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간의 협력관계, ⑪공공정보의 국제적 활용 촉진 등에 대한 내용들이 향후 개정작업에서 검토가 요청된다.

<표 6-1> 통계산업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필요 사항

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
통계법 및 자료제공 규정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 민간의 상업적 이용 등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는 자유로운 제공 및 이용을 보장 - (응답자 의무 및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정보주체의 개별 권리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및 예외 처리 등에 대한 조항을 명시 - (통계산업진흥법과 관계) 민간 통계산업 부문까지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혹은 상충 조항들에 대한 부분 개정
통계산업진흥기금 설치법, 공인통계사법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통계산업 지원·육성 방안 중 금융/예산/세제 지원 부문과 통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부문의 단위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법으로써 신규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통계법도 우선 적용을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정보목록 작성·비치 의무에 대한 기준 설정 - 비공개 개인정보의 대상 요건, 비공개 대상정보의 공개 대상 전환 요건 등의 구체적 범위 설정 -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및 자유로운 이용 보장,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법의 방향성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의 민간 및 정보산업에서의 자유로운 이용 허가 및 장려 ▶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보의 주기적인 내용 점검 ▶ 민간 데이터베이스 공급자와의 공정 계약 ▶ 공공정보 기반의 민간 정보서비스 개발 촉진 및 지원 ▶ 정보서비스 제공의 민간 및 공공간의 경쟁 원칙 ▶ 민간 이용 및 전자적 처리를 고려한 공공정보 생산방법 ▶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 독립형 감독기구 설치 ▶ 공공정보 공개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간의 협력관계 ▶ 공공정보의 국제적 활용 촉진 등

2.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통계산업 환경 및 제도 개선 작업과 민간 통계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이 요청된다. 중기 산업 전망 등을 기초로 성립하게 될 기본계획은 통계청장이 관계 중앙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형태가 예

상되는데, 일반적인 산업진흥계획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시행계획은 연차별 연동계획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포 및 시행은 민간 통계산업 수요자 및 공급자에게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통해 설비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육성 및 채용 규모 확대, 연구·개발 사업 촉진, 관련 학술 분야 장려 등의 기대 효과를 전망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부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11개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환경 및 수급 전망 부문은 대내·외 통계산업 환경 변화 양상 및 중·장기 수급 전망, ②정책 부문은 세부 진흥 영역별 정책 추진 방향·목표 설정 및 추진 전략 수립, 실태조사 실시, ③경쟁력 부문은 품질 표준화,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④인력 부문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촉진, 관련 학술 진흥, 기술 보급 및 실용화 촉진, ⑤국제 협력 부문은 국제교류 촉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⑥산업 기반 부문은 정보·자원·설비 기반 등 조성, 진흥시설 설치, ⑦자금 부문은 진흥기금 설치 등 재원 확보, 금융·재정·세제 지원,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⑧역할 체계 부문은 중앙 부처 및 지자체간 역할 분담 체계 구성, ⑨유통 부문은 공정 경쟁 및 소비자 이용 촉진, 유통 현대화·정보화 지원, ⑩법제 부문은 제도 개선 및 법령 제·개정, ⑪기업 부문은 창업 및 성장 지원, 산업간 연계 강화, ⑫홍보 부문은 홍보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세부 단위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6-2>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부문	부문별 구성 체계	
환경 및 전망	- 대내·외 환경 변화 양상	- 중·장기 수급 전망
정책	- 영역별 정책 방향·목표 설정 - 실태조사 실시	- 영역별 추진 전략 수립
경쟁력	- 품질 표준화	-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인력	- 전문인력 양성 - 관련 학술 진흥	- 연구·개발 촉진 - 기술 보급 및 실용화 촉진
국제 협력	- 국제교류 촉진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 기반	- 정보·자원·설비 기반 조성	- 진흥시설 설치

부문	부문별 구성 체계	
자금	- 진흥 기금 설치 등 재원 확보 -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 금융·재정·세제 지원
역할 체계	- 중앙 부처간 분담 체계 구성	- 중앙 및 지자체간 분담체계 구성
유통	- 공정 경쟁 촉진 - 유통 현대화 및 정보화 지원	- 소비자 이용 촉진 - 정보 제공 및 권익 보호
법제	- 제도 개선	- 법령 제·개정
기업	- 창업 및 성장 지원	- 산업간 연계 강화
홍보	- 홍보 지원	- 홍보 프로그램 운영

3. 지원 체계의 효율적인 정비·개선

통계산업 활성화 기반의 성공적인 조성과 민간 통계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인 조정체계 및 지원제도의 정비, 공공 이용 정보 제공과 관련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체계의 개선, 민간 통계생산업의 지역별 균형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통계 지원 및 역량강화, 민간 통계산업 진흥사업을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산업 진흥 지원기관의 설립, 시의성 있는 모집단 명부 및 가중치 산정자료의 제공 등이 요청된다. 또한, 통계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검토와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과 관련한 정부 부처와의 관계 설정 문제, 국가 정보자원 공개 및 개방 확대, 정보 유통 및 활용 환경 개선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 조정체계 및 지원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통계작성기관간의 조정 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분권형 통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책임관 제도 등의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통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들 조정기구의 주요 의결 사항들이 공공 부문 통계 제도 및 생산,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통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책임관 회의 등의 심의·의결 사항들과 관련하여, 민간 통계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통계위원회 분

과위원회 구성에서도 경제·사회·정책·정보·품질 분과위원회와 함께 (통계)산업 분과위원회의 별도 구성이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행 분권형 통계제도는 기관별 전문성에 따르는 통계 생산체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통계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전문성 수준 및 통계 생산·서비스 제공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통계청이 주관하는 통계 생산·서비스 시스템의 지원, 조정 및 통합 작업들은 보다 확대되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즉,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는 총리령, 부령, 조례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통계 대행제도는 지역통제도 사업 범위에 포함하며, 품질진단제도는 진단 결과와 개선작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병행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나라 통계시스템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과 관심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체계 개선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요청되는 부분은 해외 사례에서는 미국 센서스국의 기관 통합형 자료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 운영 및 공공 이용 파일(PUF: Public Use File)의 무상 제공 서비스, 호주 및 캐나다 통계청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정에 의한 공공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제도(Data Liberation Initiative 등), 호주 통계청의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CDS: Customised Data Services) 등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적으로는 행정자료 기반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과정에서 적용되는 비밀보호기법의¹²⁹⁾ 고도화 연구 등이 요청된다. 먼저, 자료이용센터 운영에 있어서, 캐나다, 호주 등의 집권형 통계제도 국가들은 다양한 부문의 공공 이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권형 통계제도인 미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형 공공 이용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생산하고 있는 한정된

129) 일반적인 통계적 비밀보호기법(Masking)은 노출제한기법과 자료변조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출제한기법은 익명화(Anonymity), 표본(Sampling), 모집단 크기 제한(Placing Restriction on Population), 세부 내용 축소(Reduction in detail), 구간 자료 제공(Recoding), 감추기(Data suppression) 등으로 세분되며, 자료변조기법은 노이즈 추가(Adding noise), 자료 교환(Data swapping), 보상에 의한 번조(Perturbation by compensation), 개체들의 집단화(Microaggregation), Data shuffling 등으로 세분된다.

자료들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사업의 진전에 따라 통계청 이외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통계 수요가 많은 주요 마이크로데이터는 조기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UF에 대한 미국 및 네덜란드의 전면적인 무상 제공 서비스, 영국의 학술연구 목적의 제한적인 무상 제공 서비스 사례 등을 고려하고,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인 작업 소요 없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PUF의 전면적인 무상 제공 서비스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 등의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PUF의 활용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관협정을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제도는 통계자료의 주된 고객층인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간 자료이용 협정을 체결하여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소속 학생 및 연구원이 비용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불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자료이용센터의 확대 개설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CDS: Customised Data Services)는 신청인의 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탁처리 방식이 비교적 단순 처리 형태인 것을 고려하면, 보다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형태인 CDS체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으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필요 자료가 공시된 자료제공 범위 및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①상세 정보, ②총조사 과거 시계열 자료, ③표준 형식을 벗어난 자료, ④특수 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가와 자문이 필요한 자료인 경우가 해당되며, 제공되는 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와 함께 공간지리정보 데이터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호주 통계청의 사례와 같이 이용자의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통계기법 훈련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는 세무자료, 4대 보험자료, 사회복지 관련 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이 장기적으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과정에서 적용되는 비밀보호기법의 고도화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자료 기반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에

서는 조사통계를 통한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관련 통계산업에서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개인 및 가계소득과 관련한 행정자료의 수집·제공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과정에서 비밀보호기법은 통계 활용과 노출 위험의 상충관계를 완화시켜 현실적인 자료제공 범위를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호한 비밀보호 조항에 근거한 자료제공의 제한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자료제공 규정 등에서의 비밀보호기법 적용 기준에 대한 일반 공시와 함께, 최신 비밀보호기법에 대해 관련 학회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도 요청된다.

다. 지역통계 지원 및 역량 강화

민간 통계생산업의 지역별 균형 발전과 작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제반 여건이 중앙 부처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상기한 바와 같이 각종 통계 지원제도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통계 인식과 개선 노력이 가장 필요하지만, 통계청 및 중앙 부처의 각종 지원제도 제공을 통한 통계 개선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면, 지방통계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적용, 지역통계 수요에 대한 통계 대행·품질진단·자문·개선 지원, 나라통계시스템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등이 요청되며, 통계산업진흥기금 등을 통한 통계 개발·개선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전문 인력 파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력 교류, 중앙 부처가 실시하는 표본조사의 지역통계를 고려한 표본설계 확대¹³⁰⁾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라. 산업 진흥 지원기관 설치

130) 일본 통계제도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해당 표본조사에 대한 수요가 있고 자원 분담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표본 규모의 확대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통계를 생산하게 된다.

민간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 설치에 관해서는 한국통계산업진흥원, 한국 통계품질관리원, 한국공인통계사협회 등의 설립이 기대되며, 한국조사협회·한국정치 조사협회 및 한국조사연구학회 등의 역할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이 요청된다. 이들 신설이 필요한 지원기관은 통계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진흥기금 등을 통한 예산 지원이 요청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계산업 관련 정책 수립, 지원 및 집행 체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높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한국통계산업진흥원과 한국 통계품질관리원은 통계청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지원기관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은 각종 정책지원 및 조사·연구, 통계정보 관리 및 제공, 기업지원, 자격제도 운영, 통계조사 모집단 명부 구축 및 제공, 홍보, 국제협력, 빅데이터 구축·분석 등의 세부 사업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지원 및 조사·연구 사업은 통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의 발굴 및 관련 연구사업의 추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 지원,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연구·분석, 산업 특수분류 제정, 관련 산업정보 제공을 위한 백서 및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등의 사업수행이 요청된다. 특히, 실태조사는 산업 특수분류를 새롭게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방법은 전수 및 표본 조사를 혼합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¹³¹⁾ 또한, 통계분석업, 통계정보 서비스업, 통계 지원서비스업 등의 부문에서 산출액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모 추정에 요청되는 가중치 자료로써 “통계요소” 항목의 조사도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정보 관리 및 제공 사업은 마이크로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 등을 포함한 국가 통계정보의 통합 관리 및 각종 민간 제공 사업의 수행이 요청된다. 또한, 기업지원 사업은 통계생산업, 통계분석업, 통계정보 서비스업, 통계 지원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세부 산업 부문별 지원사업의 수행이 요청되며, 통계기업인협의회 운영, 통계기업 등록제 및 수탁사업 지정제 운영, 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통계 패키지 국산화 및 통계기법 지원, 금융지원 보증 사업, 통계산업기술지원단 사업 관리 등의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요청된다. 자격제도 운영은 사회조사분석사, 공인통계사 등의 통계 관련 국가 공인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이 요청되며, 통계조사 모집단 명부 구축 및 제공은 민간 통계생산업의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 명부의

131) 통계생산업, 통계분석업, 통계데이터베이스서비스업, 통계 지리정보서비스업은 대상 기업체 수가 적음으로 전수조사하고, 통계 지원서비스업 등은 대상 기업체 수를 고려하여 표본조사로 구성할 수 있다.

구축 및 제공이 요청된다. 홍보사업은 각종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홍보관 및 교육관 운영, 통계 문화 확산을 위한 시상제도 등의 추진이 기대된다. 국제협력 사업은 선진 통계 기법 전수, 각종 통계정보 및 인력의 국제 교류, 국제 협력체계의 추진, ODA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가 통계 개발 및 선진화 사업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이 요청되며, 빅데이터 구축·분석 사업은 국가 빅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기술 연구·전문인력 양성 및 분석 등과 관련한 업무 수행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한국통계품질관리원은 민간 통계산업과 관련한 통계 품질 인증·검증 기준 제정, 통계 조사대행 용역사업 원가 기준 제정, 통계 생산·관리·제공 등에 대한 품질 인증·검증 등 평가 수행, 품질 표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표준 준수 이행 명령 제도, 품질관리 교육 및 연구개발 수행, 기타 품질 향상 관련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계 품질 인증·검증 기준 제정 및 평가 수행은 민간 통계기업의 품질 수준에 대한 인증제도와 개별 생산 통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 제정 및 이에 근거한 인증·검증 작업 등의 평가 수행이 요청되며, 통계 조사대행 용역사업 원가 기준 제정은 공공 부문 통계작성 기관을 포함한 통계 생산·관리·제공 과정을 민간 통계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주 처리 사업의 원가 산정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품질 표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표준 준수 이행 명령은 인증 및 검증을 통과한 기업과 통계에 대한 품질 표시 마크 등을 제공하며(KSS: Korea Statistical Standard)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표준 준수를 위한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의 운영이 요청된다. 품질관리 교육 및 연구개발 수행은 민간 및 공공 부문 통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보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최신 품질관리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공인통계사협회는 통계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하며, 공인통계사의 회원 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등록·심사·등록 취소, 사무소 개업·휴업·폐업의 신고·보고, 회칙 제정 및 지도·감독·징계, 각종 통계 생산·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감리준칙 및 통계감리보고서 작성 기준 제정 등의 공익사업 수행,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요청된다.

끝으로, 민간 통계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현재 활동 중인 한국조사협회(KORA), 한국정치조사협회(KOPRA), 한국조사연구학회(KASR) 등의 역할 증대가

요청되는데, 이들 협회 및 학회들은 오랜 설립 연혁에 비해 조직 규모가 영세한 상황이며, 주요 수행 활동들도 정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통계학회인 ASA, 영국 시장조사협회인 MRS 및 산업 표준화 기구인 IQCS, 일본 시장조사협회인 JMRA, 독일 조사협회인 ADM 등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통계산업 품질 수준 원칙 제정, 관련 기업의 권익 보호, 행동강령 제정, 불공정거래 규제, 산업 현황 조사 및 보고서 발간, 국제회의 유치 등의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진흥기금 등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시의성 있는 모집단 명부 및 가중치 산정자료 제공

통계생산업에서 표본조사는 모집단 명부 및 가중치 산정자료가 요청되며, 통계작성 기관이 조사하는 공공 부문 통계는 이들 자료를 통계청 등이 관리하는 국가통계시스템 내부에서 제공받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나라통계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에 통합시스템을 이용한 모집단의 공동 활용 및 통계 생산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모집단 명부 및 가중치 산정자료의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 통계생산업은 국가통계시스템 이용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 마땅한 대체 자료 확보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기업 내부에서 자체 구축하거나 신뢰성이 증명되지 않은 외부 자료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민간 통계생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품질 수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통계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성과 시의성이 확보되는 모집단 명부 및 가중치 산정자료의 구축 및 제공이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주요 국가의 민간 통계생산업 현황에서 대안을 찾아보면, 미국은 Claritas, Infogroup, ADVO 등의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하고 처리한 모집단 명부 및 가중치 산정자료를 관련 통계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을 모델로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이 민간 통계생산업에서 이용이 가능한 모집단 명부 및 가중치 산정자료의 구축 및 제공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공 부문 통계에서도 모집단 명부의 시의성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별 인구 이동이 많으며, 인구·가구 부문에서 모집단

명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어, 모집단 및 가중치 산정자료의 노후화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국지역사회조사(ACS: American Community Survey)와 같은 보완적인 조사를 국내에서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¹³²⁾

바. 공공 및 민간 부문 협력체계 조성

통계산업 지원체계 정비·개선 사업과 함께,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및 민간 부문간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다. 먼저, 민간 부문 통계산업 진흥의 영향으로 공공 부문 통계 작성체계가 축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공공 부문 통계생산업 중 민간으로 이전 가능성이 있는 부문은 통계생산업 중 각종 통계조사의 현장조사 관련 부문과 통계지원서비스업의 자료처리 관련 부문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와 같은 민간 이전 부문도 공익성이 요청되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요청되므로, 신청 기업들의 자격 및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한 통계 수탁사업 지정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며, 사업 관할은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통계 기획·분석·정보 서비스, 기준 설정 등의 공익성이 높은 나머지 부문들은 담당 기관이 정부 부처에서 관련 공공 법인으로 이전되는 형태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순수 민간 부문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국가통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등과 같은 새로운 통계 생산·분석 수요가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공 부문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예상은 국제적으로 민간 통계산업이 가장 발달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도 민간 부문 대비 공공 부문의 비중이 우리나라 보다 20%p 이상 높은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사. 빅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용

국가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부처간의 역할 관계는 주관 부처 선정

132) 미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10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데,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의 제공과 모집단 명부의 노후화에 따르는 가중치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별 인구 규모에 따라 1년, 3년, 5년 주기의 미국지역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와는 관계없이, 통계청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즉,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에서 통계청은 전체 정부 부처의 공동 주관인 빅데이터 공유 활용 인프라 구축 과제에만 해당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정비 과제 등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반해, 빅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사업은 민간 통계분석업, 통계정보서비스업 등의 주된 사업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의 직접 이용 혹은 연계 처리 등을 통한 간접 이용 등을 통해 통계 생산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통계청이 국가통계 통합형 마이크로데이터, 세무자료 등 행정자료, 공간지리정보자료 등의 대규모 행정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와의 연계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이용측면에서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연구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정비 등의 기반 조성 및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 국가 정보자원 공개 및 개방 확대

공공정보 재활용 및 상업적 이용 활성화에 대한 EU와 OECD 지침 및 권고안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국내법 적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과 함께, 공공정보 개방운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대표 데이터 제공 사이트(Data.gov)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공공정보 개방운동으로는 캐나다의 DLI(Data Liberation Initiative)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전개된 바 있으며, 국가 대표 데이터 제공 사이트로는 미국의 Data.gov, 영국의 Data.gov.uk, 싱가포르의 Data.gov.sg, 호주의 Data.gov.au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서비스하고 있는 공유자원포털(Data.go.kr)이 서비스 지향적 국가자원 개방 및 공동 활용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 작업을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정보자원의 공개 및 확대 제공은 민간 통계산업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통계분석업과 통계정보 서비스업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들 국가 정보자원의 활용 폭이 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유자원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자원의 질과 양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통계 정보 자원의 제공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통계청 등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한 개선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정보 유통 및 활용 환경 개선

2011년부터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라통계 시스템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ISP사업은 통계산업과 관련한 정보 유통 및 활용 환경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시킬 전망이며, 이를 통해 통계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일반 국민의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 통계 이용 촉진 등의 효과도 함께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사업은 2015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정보 유통 및 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 여건의 조성과 통계 수요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서 살펴본 한국통계품질관리원의 품질 수준 평가, 용역사업 원가 기준 제정, 품질 표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표준 준수 이행 명령,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의 통계 수탁사업 지정제도, 한국공인통계사협회의 통계감리준칙, 관련 조사협회의 행동강령 제정, 자율적인 불공정거래 규제 등이 효과적인 장치로써 기능할 전망이다.

<표 6-3>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정비·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부문	세부 추진 방안
조정체계 및 지원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책임관 회의 안건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의결 사항에 통계산업 관련 안건 채택을 명문화 ▶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산업 분과위원회 구성 -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확대 적용 - 통계대행제도의 사업범위에 지역통계 추가 - 통계 품질진단체도의 진단과 개선작업 연계 추진 - 나라통계시스템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관리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

부문	세부 추진 방안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부처 마이크로데이터의 확대 서비스 제공 - 온라인 마이크로데이터의 전면적인 무상 서비스 제공 - 대학, 연구소 등 기관협정을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제도 도입 -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CDS) 도입 - 행정자료 기반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제공 - 비밀보호기법 고도화, 비밀보호기법 적용 기준의 일반 공시 - 최신 비밀보호기법에 대한 협동 연구 추진
지역통계 지원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적용 - 지역통계 수요에 대한 통계 대행, 품질 진단, 자문·개선 지원 - 나라통계시스템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사업 참여 지원 - 통계산업진흥기금 등을 통한 개선·개발 자금 지원 - 전문 인력 파견제도 등 인력 교류 활성화 - 지역통계 수요를 반영한 중앙 부처 표본조사 실시
산업진흥 지원 기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계산업진흥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원 및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 수립 지원, 관련 연구 추진 ● 각종 정책 집행과정 지원 ●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산업특수분류 제정, 백서 및 보고서 발간 ▶ 통계정보 관리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통계정보의 통합 관리 및 민간 제공 ▶ 통계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생산업, 통계분석업 등 세부 산업별 지원사업 수행 ● 통계기업인협의회 운영 ● 통계기업 등록제 및 수탁사업 지정제 운영 ● 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 통계 패키지 국산화 및 통계기법 지원 ● 통계산업기술지원단 사업 관리 ● 금융 지원 보증사업 ▶ 자격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사분석사, 공인통계사 등 통계 관련 공인 자격제도 관리·운영 ▶ 통계조사 모집단 명부 구축 및 제공 ▶ 홍보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홍보관 및 교육관 운영 ● 표창 등 시상 제도 도입 ▶ 국제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통계 기법 전수 ● 통계정보 및 인력 교류 ● ODA 등 개도국 통계 선진화 지원 등 국제 협력체계 마련

부문	세부 추진 방안
산업진흥 지원 기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계품질관리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품질 인증·검증 기준 제정 및 평가 수행 ▶ 통계 조사대행 용역사업 원가 기준 제정 ▶ 품질 표시(KSS: Korea Statistical Standard)제 도입 ▶ 품질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준수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 품질 관리 교육 및 연구개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관리 이론 및 실무 교육, 보수 교육 실시 • 최신 품질관리 기법 연구 ▶ 품질 향상 관련 지원 사업 수행 - 한국공인통계사협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등록/심사/등록 취소 ▶ 사무소 개업/휴업/폐업 신고, 보고 ▶ 회칙 제정 및 지도/감독/징계 ▶ 통계감리준칙, 통계감리보고서 작성 기준 제정 ▶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 조사협회, 학회 등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수준 원칙 제정, 행동강령 제정 ▶ 관련 기업 권익 보호 ▶ 불공정 거래 자율 규제 ▶ 산업 현황조사 및 보고서 발간 ▶ 국제회의 유치
모집단 명부 및 가중치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통계생산업 모집단 명부자료 구축·제공 - 공공 부문 모집단 명부자료의 시의성 제고(ex. 미국 지역사회조사)
공공 및 민간 부문 협력체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부문) 공공 부문의 이전 사업에 대한 통계 수탁사업 지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부문) 통계생산업 중 현장조사, 통계지원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 (공공 부문) 빅데이터 등 신규 통계수요에 대처
빅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통계분석업, 통계정보서비스업의 미래 사업 영역으로 개척 - 마이크로데이터, 행정자료, 공간지리정보자료 등과 연계하여 기반 구축 - 기술·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정비 등 추진
국가 정보자원 공개 및 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대표 데이터 제공 사이트(Data.gov) 구축 - 통계청 등 공공정보 보유 기관의 협조체계 마련
정보 유통 및 활용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통계시스템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사업 추진 지원 -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및 수요자 권익 보장 장치 마련

4.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

통계산업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이므로, 산업에서 창출되는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교육·훈련 받은 전문 통계인을 통해 산출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통계산업에서 전문 통계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 인력 양성에는 높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인력 수급 실태 파악과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통한 구체적인 인력 육성계획의 마련이 요청된다. 또한,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제도로서, 민간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문 인력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 정규 교육기관의 통계 교육 지원, 국가 통계교육원 분원 설치 등도 병행하여 마련될 것이 요청된다.

세부적인 교육·훈련 및 통계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통계인력 육성계획은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이 실시하게 될 통계산업실태조사에서 인력 수급 현황을 연도별로 파악하며, 대내·외 환경변화 및 통계산업의 중장기 성장 전망, 국내·외 통계 교육기관의 재학생·졸업생 등 배출 추이, 국가공인 통계 자격증 응시자·보유자 변동 추이 등을 참조하여 중장기 통계인력 수급 전망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통계인력 육성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공표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통계인력 육성계획의 주요 사항들은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 반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요청되는 대내·외 환경변화 및 통계산업의 중장기 성장 전망 등도 기본계획과 공유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요청되는 기반제도들을 살펴보면,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은 직장 및 학원 수강생이 대상인 민간 교육·훈련 기관을 교수요원 자격, 시설·설비, 교육 프로그램 수준 등에 대한 역량 평가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은 통계 교육·훈련을 위한 이론 및 실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정받은 민간 교육·훈련 기관과 공공기관의 통계교육원 등에 보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교육생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인터넷 수강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작·보급도 요청된다. 또한, 전문 인력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은 사회조사분석사, 공인통계사 등의 통계 관련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규 교육기관의 통계 교육 지원은 이론 통

계 및 응용 통계 등을 교과 과정으로 지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정규 고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및 교수 요원 지원, 공공 기관 시설물 사용 지원, 인턴 채용 및 특별 채용 등 취업 지원 등이 요청된다.

끝으로, 국가 통계교육원 분원의 설치에 통계교육에 대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수요 급증, 전체 인구에 대한 수도권 및 동남권 인구의 높은 비중과 이에 따르는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등의 이유를 반영하여, 현재,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통계교육원의 서울 등의 분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실태조사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이후 통계인력 육성계획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4>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 방안

부문	세부 추진 방안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참고하여 5년 주기 계획 수립 ▶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전문 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기반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및 학원 교육·훈련 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요원 자격·시설·설비, 교육 프로그램 수준 등 역량 평가 실시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인터넷 수강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 전문 인력 국가 공인 자격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사분석사, 공인통계사 자격제도 실시 - 정규 교육기관 통계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이론통계, 응용통계를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기관 ▶ 예산 및 교수요원 지원 ▶ 공공기관 시설물 사용 지원 ▶ 인턴 채용 및 특별 채용 등 취업 지원

5. 국제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국제 통계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통계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15위를 기록하였으나, 점유율 수준에서는 1.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내 통계생산업 시장에서는 5개 대형 외국계 통계기업의 비중이 35%를 상회할 정도로 자생력이 약하며, 영세기업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시장구조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통계산업이 아직까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생산 및 분석 기법, 통계 상품 및 서비스 산업화 방안 등의 많은 부분에서 국제 교류를 통한 기술 습득 및 우수 인력 유치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 상황에서의 필요성 이외에,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 국격에 맞춰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해외 지원사업의 수행도 요구받고 있으며, 통일 한국을 대비한 북한통계에 대한 대응도 요청된다. 해외 지원사업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ICT 기반의 통계조사시스템, 정보서비스시스템, 공간지리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요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르는 국제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으로써, 국제 교류 진흥계획 수립·시행, 국제 교류 사업 시행 조직 확충, 국제 통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 국제 협력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 지원, 국제 학술대회·전시회 등의 참여 및 국내 유치,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교류 진흥계획은 국내 통계 작성 수준의 선진화, 국내 통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부문과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 통계 협력체계 지원 등을 위한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립될 필요성이 있으며,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주요 사업 내용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제 교류사업 시행 조직의 확충은 현행, 통계청의 단일 실·과 수준의 조직 규모를 총괄 기획 및 국제기구·선진국 협력, 개발도상국 등 국제 통계 지원, 국제 통계 수집 및 동향 분석, 북한 통계 수집 및 지원, 통계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컨설팅 전문가 양성은 개발도상국 지원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말하며, 통계 이론·실무 및 ICT 기반의 통계시스템 개발·운영 등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되, 개인 단위 선발과 함께 팀 단위 전문가 조직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협력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 지원은 상기한 국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말하며, 국제 및 북한 통계 자료들에 대한 수집·분석, 동향 파악 등을 위한 기초 조사사업과 국제기구 및 통계 선진국가의 조사 지침서·권고안, 통계 기법·연구 성과 등에 대한 기초 연구 및 국내 적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사업이 요청된다.

국제 학술대회·전시회 등의 참여 및 국내 유치는 국제 통계 관련 각종 정기·비정기 학술대회, 전시회 등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국내 유치 사업을 추진하며, 아·태 지역 및 개발도상국 등을 중심으로 통계 교육·훈련, 기술 전수 등을 위한 교육·연구센터의 설치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은 산업·직업 등 통계 분류 체계, 각종 조사 지침서·권고안, 자료 제공 방법 및 데이터 관리 체계 등의 부문에서 국제 표준 기준의 국내 적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요청된다.

<표 6-5> 국제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부문	세부 추진 방안
국제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교류 진흥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통계 작성 수준의 선진화 방안 ● 국내 통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 통계 협력체계 지원 방안 - 국제 교류사업 시행 조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조직 기능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총괄, 국제기구·선진국 협력 ● 개발도상국 등 국제 통계 지원 ● 국제 통계 수집 및 동향 분석 ● 북한 통계 수집·분석 및 지원 ● 통계산업 중사 기업 해외진출 지원 - 국제 통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이론·실무, ICT 기반 통계시스템 개발·운영 경력자 양성 ▶ 개인 단위 선발, 팀 단위 전문가 조직 선발을 병행 - 국제 협력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 지원 - 국제 학술대회·전시회 등의 참여 및 국내 유치 -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직업 등 통계 분류 체계 ▶ 각종 조사 지침서·권고안 ▶ 자료 제공 방법 및 데이터 관리 체계

6. 통계 홍보사업 강화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초석은 품질 향상을 통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통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통계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들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선진화 수준이 기대만큼 높게 평가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산업 활성화 과정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더라도 통계 이용자, 산업 수요자, 관련 정책 감시자로서 역할하는 국민의 지지 없이는 성공적인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 사업에는 통계 홍보사업의 병행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 홍보사업으로는 사회 계층별 특화된 홍보, 통계 대사 위촉·통계의 날 행사·통계 유공자 시상·통계 활용대회 개최 등의 일반 홍보, 통계 관련 세미나·포럼 개최 및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홍보사업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 계층별 특화된 홍보 활동은 통계 이용자 및 수요자 계층을 초·중·고등 학생, 대학생, 교사, 일반 국민, 민간 기업, 공공기관, 정당·단체 등으로 세분하고 유형에 맞춘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통계정보 보급, 계층 맞춤형 통계 교육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규 교육기관의 통계 교과목 이수 시간 확보,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¹³³⁾ 산업 관련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제공, 통계 인력 전망·계획 수립 공표 및 통계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지원 등이 계층별 유효한 홍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현재 운영 중인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은 최신 제·개정 법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법령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낮고, 법령 명칭, 정책 명칭, 통계지표 명칭, 관련 통계 출처 순의 정렬표로만 제공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책 및 통계지표 개요, 출처 통계의 주요 조사 사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33)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narastat.kr>)은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품질진단, 통계승인 현황, 통계 개선 및 개발 사업 수행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계 대사 위촉, 통계의 날 행사, 통계 유공자 시상, 통계 활용대회 등의 일반 홍보는 통계청과 관련 학회 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사항인데, 통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친근감을 유도하며, 통계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계 관련 세미나·포럼 개최 및 관련 국제회의 유치는 정부기관·관련 산업체·연구기관·학회 등을 중심으로 주제 부문별 정기·비정기의 각종 통계 관련 세미나, 포럼,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 및 사업 진단·평가, 연구 성과 공유·최신 동향 파악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통계 홍보 효과도 병행하여 얻는 사업을 말한다.

<표 6-6> 통계 홍보사업 강화 방안

부문	세부 추진 방안
통계 홍보사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계층별 특화된 홍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통계정보 보급 ▶ 계층 맞춤형 통계 교육 실시 ▶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정규 교육기관의 통계 교과목 이수 시간 확보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법령으로 확대 운영 • 신·구 제·개정 법령 연계 자료 제공 • 정책·통계지표 개요자료 및 출처 통계의 주요 조사 사항 제공 ▶ 산업 관련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제공 ▶ 통계 인력 전망·계획 수립 공표,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지원 - 통계 대사 위촉, 통계의 날 행사, 통계 유공자 시상, 통계 활용대회 등의 일반 홍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친근감 유도 ▶ 통계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이해·인식을 제고 - 통계 관련 세미나·포럼 개최 및 관련 국제회의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학회 등을 중심으로 개최 ▶ 정기·비정기 통계 관련 세미나, 포럼, 국제회의 등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정책 및 사업 진단·평가 • 연구 성과 공유·최신 동향 파악 • 통계 홍보

제2절 민간 통계산업의 육성·지원

1. 금융·세계 지원

국내 민간 통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세계 지원 방안은 한국통계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통계산업진흥기금,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관련 지원 법령¹³⁴⁾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화자금 등의 자금 지원과 정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연을 통한 신용 보증,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한 세계 지원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통계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기금 조성과 기금 활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기금 조성은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 통계 수탁사업 지정기업 및 품질 인증 기업 등의 부담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기금 활용은 통계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경영 안정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역통계 지원 및 역량 강화, 산업 기반조성, 연구·개발, 정보 유통 및 활용 환경 개선, 국제 협력 지원, 각종 산업 지원기관 설립 등의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중진기금에 의한 자금 지원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과 연계하고,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통계산업 종사 기업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 통계산업 종사 기업의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생산업의 10대 상위기업과 통계 패키지 개발업 중 외국계 투자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은 대분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통계산업과 관련되는 대분류 중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N) 대분류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업(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134)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 관련 지원 법령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계산업 분류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통계산업 업종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준은 통계정보 서비스업, 통계자료 입력업,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업, 통계생산업, 통계분석업, 통계 연구 개발업, 기타 통계 지원 서비스업, 조사인력 공급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가 해당되며, 통계교육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표 6-7> 통계산업 분류 및 중소기업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통계산업 분류	중소기업 기준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J)	- 통계정보 서비스업 - 통계자료 입력업 - 통계 패키지 개발·공급업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통계생산업 - 통계분석업 - 통계 연구 개발업 - 기타 통계 지원 서비스업	
-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N)	- 조사인력 공급업	-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 -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P)	- 통계교육업	

주 : 통계생산업 중 산업 및 전문가 단체(S)는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통계교육업 중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M)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매출액 300억 이하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화자금 지원사업은 공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산업, 뿌리산업, 뿌리기술, 부품·소재 산업,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 산업,¹³⁵⁾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등의 8대 선정된 전략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통계산업은 조사인력 공급업(KSIC, 7512)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략산업 우선 지원자금의 용자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전략산업 우선 지원

135)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은 부산, 대구, 대전 등 13개 광역시 및 도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제외되고 있다. 부산 지역의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예시하면, 전략산업은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연고산업은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을 선정하고 있다.

자금 융자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조사인력 공급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금융지원협약보증제도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는데,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단체, 기술보증기금, 은행이 연계하여 보증 및 대출상의 우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지원단체는 신청 기업에 대한 검토 및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상산업에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금융지원협약보증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통계산업의 경우에도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보증 및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8> 전략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현황

부호	한국표준산업분류 명칭	부호	한국표준산업분류 명칭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71531	경영컨설팅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32	전문디자인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612	전기통신업	7390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등 인터넷 매개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713	광고업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한 세제 지원 부문 중 중소기업과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투자세액 공제,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특별세액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특별세액 감면은 대상 업종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데, 통계생산업 중 산업 및 전문가 단체(KSIC, 941)를 제외하면 모두 세액 감면 및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선정되

고 있다. 또한,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 비율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기업 및 소기업과¹³⁶⁾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로 구분하여 감면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

<표 6-9> 통계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비율

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 지식기반산업 해당 경우: 10% 감면	- 20% 감면
수도권 이외	- 15% 감면	- 30% 감면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 감면은 기간이 제한되거나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향후에 통계산업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법령 개정작업에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4년간으로 제한되고 있고, 특별세액 감면은 2014년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표 6-10> 금융·세제 지원 사업 추진 방안

부문	세부 추진 방안
금융 및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산업진흥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 • 통계 수탁사업 지정 기업 및 품질 인증 기업 등 부담금 •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차입금 ▶ 진흥기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경영 안정자금 지원 •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 지역통계 지원 및 역량 강화사업 지원 • 각종 산업 기반 조성사업 지원 • 통계기법, 산업 활성화 등 연구·개발사업 지원 • 정보 유통 및 활용 환경 개선사업 지원 • 국제 협력사업 지원 • 각종 산업 지원기관 설립사업 지원

136)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은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며, 소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계산업에 해당되는 대분류 부문은 소기업 기준에서 10인 미만으로 통일되게 규정하고 있다.

부문	세부 추진 방안
금융 및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과 함께 시중 은행을 통해 용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화자금에 의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산업 우선 용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직접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사인력 공급업 이외 모든 통계산업 업종이 대상 가능 • (개선) 사업 지속 수행 및 조사인력 공급업의 대상 포함을 협의 - 금융지원협약보증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계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은행이 연계하여 기술 기반 통계기업에 대한 보증 및 용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은 신청 기업 검토 및 추천, 사업 관리 등 수행 -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관련 세액 공제 및 과세 특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세액 공제 •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 특례 ▶ 중소기업 관련 특례 조항 시행 연장 및 포괄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포괄대상에 산업 및 전문가 단체의 통계생산 사업 포괄 • 2014년까지 시행되는 특별세액 감면 제도의 연장 협의

2. 연구·개발 활동 촉진 지원

통계산업 중사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과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먼저 기반 조성사업은 통계작성기관 등이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게 하거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하며, 통계청 등의 정부기관이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은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 국가 통계 작성체계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처리·온라인 조사·정성조사·비밀보호 기법 등과 같은 신소재, 신기술 및 기초 기술 등을 주체 부문으로 선정하여 미래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산업기술지원단을 설립하여 인력·시설·기자재 등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실용화·권리 보

호 등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마련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통계산업기술지원단은 한국통계산업진흥원에서 사업 관리를 수행하되, 경상 조직으로 구성하지 않고, 통계 관련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유연적인 조직 풀(Pool) 체계로 구성하고, 해당 연도별 신청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금융 및 세제를 통한 지원과, 민간 통계기업과의 협약에 의한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금융 및 보증지원 사업은 앞서, 금융·세제 지원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산업진흥기금 및 중진기금을 통한 민간 통계기업 연구·개발 사업 투자비 지원,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협약보증 등의 사업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¹³⁷⁾, 연구·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 취득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연도 소득금액에서 출연금을 제외하는 제도를 말하며, 통계산업에 해당되는 세부 산업 중 산업 및 전문가 단체(KSIC, 941), 통계 연구개발업(KSIC, 701, 702), 조사인력 공급업(KSIC, 7512)을 나머지 업종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제 지원 제도들 중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2013년까지, 연구·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술 취득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5년까지 등으로 한시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의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서 사업 지속 및 포괄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금융·세제 지원 부문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식서비스산업과 연구·개발 지원 부문에서 살펴본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137)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100분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포괄범위가 부분적으로 불일치하고 있어, 정책의 혼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법령 및 정책들의 개정 및 후속 시행사업 진행과정에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1>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분류

지식서비스 선정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고
소매	4711, 4731, 4781, 4791	
정보서비스	6311 ~ 6399	통계정보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7153	통계생산업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7211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7212 ~ 7292	
기타 사업서비스	7310 ~ 7410, 7430, 7521 ~ 7599	통계분석업, 기타 통계서비스업
위생서비스(산업)	3701 ~ 3900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5821 ~ 5822, 6201 ~ 6209	통계 패키지 개발·공급업
의료 및 보건(산업)	8610 ~ 8690	
교육기관(산업)	8550, 8561 ~ 8569, 8570	통계교육업
문화서비스(기타)	9021 ~ 9029	

민간 통계기업과의 협약에 의한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원은 통계청 등 통계작성기관에서 선정한 전략산업 부문의 연구과제에 대해, 전문성이 보증되는 민간 기업을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통계산업진흥기금 등에서 관련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요청된다.

<표 6-12> 연구·개발 지원 사업 추진 방안

부문	세부 추진 방안
연구·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기반 조성 지원사업 ▶ 통계작성기관 등의 연구·개발 사업 투자 및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출연을 권고 ▶ 통계청 등 정부기관이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민간 기업의 참여를 지원

부문	세부 추진 방안
연구·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 • 국가 통계 작성체계 표준화 • 신소재, 신기술 및 기초 기술 등을 주제 부문으로 선정 ▶ 통계산업기술지원단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이 사업 관리 수행 • 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조직 풀(Pool)로 운영 • 인력·시설·기자재 등 공동 활용 지원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실용화/권리 보호 제도 및 절차 마련 - 연구·개발 활동 직접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산업진흥기금 및 중진기금을 통한 민간 통계기업 연구·개발 사업 투자비 지원 • 기술 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협약보증 지원 ▶ 세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 연구·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 •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 취득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민간 통계기업과의 협약에 의한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원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2010년 기준으로 국내 통계산업의 세부 업종별 현황은 통계생산업의 비중이 82.8%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의 90.5%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정보서비스업 및 통계 지원서비스업은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2010년 기준으로 통계산업에서 차지하는 외국계 기업의 비중은 통계생산업의 35.5%를 비롯하여 통계 패키지 개발업의 100.0%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약 2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 통계산업은 지식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 및 지원이 요청된 바 있다. 한편, 이런 상황을 달리 해석하면, 국내에서 성공한 대형 통계

생산업 및 서비스업 관련 기업들이 품질 및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을 확보하게 되면, 해외 시장을 통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도 말할 수 있다. 결국, 통계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또 다른 한 축은 국내 통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주력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3> 통계산업 부문별 구성비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

구분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00년	2006년	2008년	2010년	
통계생산업	90.5	86.1	83.4	82.8	14.3
통계정보서비스업	1.7	3.8	4.3	3.9	25.5
통계지원서비스업	7.8	10.2	12.3	13.3	21.6

이와 같은 국내 통계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국제 경영이 가능한 대형 통계기업의 육성,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국제 기술협력 및 공동제작 지원, 해외 마케팅·현지화·홍보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먼저, 대형 국내 통계기업의 육성은 통계산업 등록기업 중 기술 수준이 뛰어나고, 수탁사업 지정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국내 통계기업을 중점 성장 육성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들 성장 육성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자본 투자 유치,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규모화를 이룩하고, 국내 기업이 상대적인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는 ICT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지원과 함께 시장 영역을 개척하며, 점차적으로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여 세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성장 육성기업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업 종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통계학 등 기초 과학에 대한 육성과 함께, 응용 통계 부문에 특화된 패키지 및 솔루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범용 패키지 및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국제 기술 협력은 선진 기술 전수 및 이전 등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 전수 및 이전도 포함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사업은 무상 원조 등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민간 통계산업의 해당 국가 진출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으며, 민간 외교 등을 통한 국격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공동 제작은 현지 통계기업 및 선진국 통계기업과의 공동 제작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형태이며, 진출 초기의 비용 및 위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기술 전수 및 이전 효과도 병행하여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마케팅·현지화·홍보 지원은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의 해외 통계산업진흥사무소 설치, 통계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 지원, 현지 통계산업 시장 등에서의 기업 홍보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14>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추진 방안

부문	세부 추진 방안
해외시장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경영이 가능한 대형 통계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업 중 기술 기반이 뛰어난 수탁사업 지정기업을 육성 ▶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업 기업 육성 ▶ 해외 자본 투자 유치,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규모화 추진 ▶ ICT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시장 개척 이후, 선진국 시장 개척으로 단계적 진출을 추진 - 국제 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기술 전수·이전 등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강화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전수·이전 등으로 미래 시장 개척 - 해외 공동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통계기업 및 선진국 통계기업과의 공동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진출 비용 및 위험 부담 경감 ● 선진 기술 전수 및 이전 효과 발생 - 마케팅·현지화·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통계산업진흥사무소 설치(한국통계산업진흥원 주관) ▶ 통계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 지원 ▶ 현지 통계산업 시장 등에서의 기업 홍보 지원

제3절 통계산업진흥법 제정 방향

국내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정책연구 과정에서, 지금까지 통계산업의 개념화 작업, 세부 업종에 대한 분류체계 구성, 국내·외 통계산업 현황 및 국내 산업 부문별 진흥법 제정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이와 같은 연구 진행을 통해 산업 환경 및 제도 기반의 정비·개선 방향과 민간 통계산업의 육성·지원 방향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상기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편의상 통계산업진흥법으로 명명한 법제화 작업은 통계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적인 합의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설립, 관련 법령 제·개정, 자원 확보 및 배분 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의 일환이다.

통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 틀은 제5장의 제3절에서 약 40종의 세부 산업별 진흥법을 검토하여 도출된 산업 지원 법령 제정의 일반 요건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일반 요건의 창업 및 중소기업에 관한 부문은 금융·예산·세계 부문에서 함께 포함하였으며, 국가통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부문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통계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으로 제안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 체계는 ①산업 정의, ②산업 분류 체계, ③산업 진흥계획 수립, ④진흥 지원 기관 설립, ⑤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 제도, ⑥정보 유통 및 활용 촉진, ⑦연구·개발 촉진, ⑧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 제도, ⑨금융·예산 및 세계 지원, ⑩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⑪홍보 지원, ⑫지역통계 강화 등의 12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부문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통계산업은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통계자료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며, 다른 자료들과 연계·가공·분석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계산업 분류 체계 부문은 통계생산업, 통계분석업, 통계정보 서비스업, 통계지원서비스업의 4개 대분류로 구분하며, 산업 특수분류체계의 신설이 요청된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부문은 환경 및 수급 전망, 정책, 경쟁력, 인력, 국제

협력, 산업 기반, 자금, 역할 체계, 유통, 법제, 기업, 홍보 등의 12개 부문을 포괄하는 형태가 요청된다.

지원기관 설립 부문은 한국통계산업진흥원, 한국통계품질관리원, 한국공인통계사협회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조사협회 및 학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도 언급하였다.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 제도는 통계 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전문 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기반제도 정비, 전문 인력 국가 공인 자격제도 도입, 정규 교육기관 통계 교육 지원 등이 요청된다.

정보 유통 및 활용 촉진 부문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추진, 비밀보호기법 고도화·적용 기준의 일반 공시,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및 수요자 권익 보장 장치 마련, 통계청 등 공공정보 보유 기관의 협조체계 마련, 빅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용 등이 요청된다.

연구·개발 촉진 부문은 연구·개발 기반 조성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활동 직접 지원사업의 구성이 요청된다.

표준화 및 품질 보증·인증 제도 부문은 한국통계품질관리원의 주요 업무로써 통계 품질 인증·검증 기준 제정 및 평가 수행, 통계 조사대행 용역사업 원가 기준 제정, 품질 표시제 도입, 품질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준수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질 관리 교육 및 연구개발 수행, 품질 향상 관련 지원 사업 수행 등이 요청된다.

금융·예산 및 세계 지원 부문은 통계산업진흥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 금융지원 협약보증제도 도입이 요청된다.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부문은 국제 통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 국제 협력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 지원, 국제 학술대회·전시회 등의 참여 및 국내 유치 촉진,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국제 기술협력 및 해외 공동 제작 지원, 해외 마케팅·현지화·홍보 지원 등이 요청된다.

홍보 지원 부문은 사회 계층별 특화된 홍보 수행, 통계 유공자 시상, 통계 관련 세미나·포럼 개최 및 관련 국제회의 유치 지원 등이 요청된다.

지역통계 강화 부문은 지역통계 수요에 대한 통계 대행, 품질 진단, 자문·개선 지원, 나라통계시스템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사업 참여 지원, 통계산업진흥기금 등을 통한 개선·개발 자금 지원, 전문 인력 파견제도 등 인력 교류 활성화, 지역통계 수요를 반영한 중앙 부처 표본조사 실시 등이 요청된다.

<표 6-15> 통계산업진흥법 제정의 주요 내용

부문	주요 내용
산업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통계자료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며, 다른 자료들과 연계·가공·분석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산업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분류 부문) 통계생산업, 통계분석업, 통계정보서비스업, 통계지원서비스업 ▶ (통계생산업) 현장조사, 자료 가공, 개인 및 단체의 신청, 신고, 등록 등의 방법으로 기초 자료를 수집, 입력, 저장하고, 통계적 처리기법을 적용하여 조사통계, 가공통계, 보고통계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 ▶ (통계분석업) 수집하거나 제공 받은 기초 자료에 통계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 ▶ (통계정보서비스업) 통계자료를 수집, 조합하고 일정 양식으로 가공한 통계정보를 주문에 따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 ▶ (통계지원서비스업) 통계자료 입력, 통계 패키지 및 솔루션 개발·공급, 각종 통계 관련 연구·개발·교육, 조사인력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대분류 부문을 세분한 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작성
진흥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전망) 대내·외 환경 변화 양상, 중·장기 수급 전망 - (정책) 영역별 정책 방향·목표 설정, 영역별 추진 전략 수립, 실태조사 실시 - (경쟁력) 품질 표준화,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 (인력)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촉진, 관련 학술 진흥, 기술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국제 협력) 국제교류 촉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산업 기반) 정보·자원·설비 기반 조성, 진흥시설 설치 - (자금) 진흥 기금 설치 등 재원 확보, 금융·재정·세제 지원,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 (역할 체계) 중앙 부처간 분담 체계 구성, 중앙 및 지자체간 분담체계 구성 - (유통) 공정경쟁 촉진, 소비자 이용 촉진, 유통 현대화·정보화 지원, 정보 제공 및 권익 보호 - (법제) 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산업간 연계 강화 - (홍보) 홍보 지원,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계산업진흥원·한국통계품질관리원 설치, 한국공인통계사협회 설립 - 조사협회, 학회 등 활동 지원

부문	주요 내용
인력양성 · 자격제도	- 통계 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기반제도 정비 - 전문인력 국가 공인 자격제도 도입 - 정규 교육기관 통계교육 지원
정보유통 · 활용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활성화 추진 지원 - 비밀보호기법 고도화 및 적용 기준의 일반 공시 -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및 수요자 권익 보장 장치 마련 - 통계청 등 공공정보 보유 기관의 협조체계 마련 - 빅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용
연구·개발	- 연구·개발 기반 조성 지원사업 - 연구·개발 활동 직접 지원사업
표준화 · 품질보증 · 인증	- 통계 품질 인증·검증 기준 제정 및 평가 수행 - 통계 조사대행 용역사업 원가 기준 제정 - 품질 표시제 도입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준수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 품질 관리 교육 및 연구개발 수행 - 품질 향상 관련 지원 사업 수행
금융· 예산·세제	- 통계산업진흥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 - 금융지원협약보증제도 도입
국제 협력 · 해외 진출	- 국제 통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 - 국제 협력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 지원,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 국제 학술대회·전시회 등의 참여 및 국내 유치 - 국제 기술협력 및 해외 공동 제작 지원, 해외 마케팅·현지화·홍보 지원
홍보	- 사회 계층별 특화된 홍보 수행 및 통계 유공자 시상 - 통계 관련 세미나·포럼 개최 및 관련 국제회의 유치
지역통계	- 지역통계 수요에 대한 통계 대행, 품질 진단, 자문·개선 지원 - 나라통계시스템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 사업 참여 지원 - 통계산업진흥기금 등을 통한 개선·개발 자금 지원 - 전문인력 파견제도 등 인력 교류 활성화 - 지역통계 수요를 반영한 중앙 부처 표본조사 실시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2006-2010)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 2006.3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통계사업평가, 2010.9
- 기상청,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2010.11
- 김경미 이의규 정미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현황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통계개발원, 2011
- 김동식, 기상정보서비스산업발전방안, 2011.3
- 김동식, 한국의 기상산업실태와 육성방안, 2006.10
- 김준모 이기식,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기상기술정책, 2008.6
- 김학진 이승우,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방향, 기초과학연구 제21집, 강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10.12
- 김혜련, 새로운 국가통계의 개발과 통계작성방법의 개선, 통계개발원, 2008
- 김효석,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2005.9
- 류근찬, 기상산업 발전전략, 2005.10
- 박성현, 박희진, 국가 통계의 발전방향과 사용자 서비스 기능강화 방안, 경영정보논총 제17권 2호, 2007.12
- 박승열, 한국여론조사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한국조사협회, 2011. 7
- 박인호,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과 통계청 노출조절기법, 한국통계학회논문집 16권 1호, 2009
- 신도식, 기상산업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2011.3
- 심규호,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통계자료의 비밀보호, 통계개발원, 2008
- 육동일, 지방화시대의 지역통계 수요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5.10
- 이강진 최경호,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수요분석-전북지역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0, No. 3(b) June 2008

- 이재형,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원, 2004.12
- 임경은,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기법의 개선, 통계개발원, 2007
- 정동명, 김경미, 승법잡음모형을 이용한 가계조사 자료의 비밀보호, 통계개발원, 2008
- 정동명(외),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통계개발원, 2008
- 정미옥, 사업체모집단 보안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방안 연구, 통계개발원, 2008
- 정지원, 인천시 지역통계 발전전략, 인천발전연구원, 2011
- 토머스H, 잔느G, 로버트 모리슨 공저, 분석의 기술, 21세기북스, 2011. 6
- 통계개발원, 국가통계제도의 발전: 국제공동연구보고서, 2008
- 통계개발원,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연구용역(최종 보고서), 2009
- 통계청, 국가통계발전전략, 2009.10.14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해외의 공공정보 상용화제도·현황연구, 2002.11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년도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 시장분석 결과보고서, 2010.12
-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시대 공공부문 빅데이터 추진 방향, 2012. 6
-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시대:효과적인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 2012. 9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3대 요소:자원,기술,인력,2012. 4
- 황주성, 공공정보 재활용정책의 필요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3.14
- ESOMAR, Industry Report 2011, 2012
- ESOMAR, Industry Report 2010, 2011
- European Commission, Commercial exploitation of Europe's public sector information-Executive summary, 20 September 2000
- IQCS Council of Management, Interviewer Quality Control Scheme: Minimum service standards for market research data collection, 2009
- RSM, UK Market Research State of the Industry, 2010
- RSM, Research Professionals' Survey - Wave Nine Results Summary
- Market Research Society, "The UK market Research industry in review Research," November, 2011

Market Research Society, “The top 100 UK agencies- and how they stack up,”
Research, January, 2012

Marx Dekkers, Fernke Polman, Robbin te Velde, Marc de Vries, Measuring
European Public Sector Information Resources, June 2006

Statistics Bureau of Japan (SBJ), Fiscal 2012 Budget for the Statistics Bureau
and the Director- General for Policy Planning (Statistical Standards)
Approved, News Bulletin April 26, 2012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 2003.12.31

TNS Research International, <http://www.tnsglobal.com/ns-worldwide-office>

UK Statistical Authority, Annual Report, 각호

UK statistics authority 웹사이트, <http://www.statisticsauthority.gov.uk/日本マーケティング・リサーチ協會, 經營業務實態調查, 各호,>
<http://www.jmra-net.or.jp/aboutus/index.html>

統計省, 國の統計事業予算(平成24年度統計事業に係る歳出予算の概要),
<http://www.stat.go.jp/index/seido/3.htm>